

2016 군사법원 연감

[2016. 1. ~ 2016. 12.]



고등군사법원
육·해·공군 군사법원



머 리 말

우리 군사법원은 해방이후 미군정청 법령 제86호에 의하여 제정된 조선경비대법(1946년)과 국방경비법(1948년) 등에 의하여 미국의 군법회의 제도를 계수하여 존치하던 중 1954년 헌법 개정 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87년 헌법 개정 시 그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변경되었고, 이후에도 군사법원은 군형사 재판을 통하여 군사법 정의 구현과 군기질서 확립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법제도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개선 요구를 받아 그결과물로서 2017년 7월 7일부로 대폭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게 되고, 이제 개선된 군사법제도가 새로운 제도의 취지에 맞으면서도 군사법 제도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적정히 운영되는지에 대해 군내·외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며, 새로운 개정 군사법 제도의 시행이 전체 군사법 제도와 군법무 조직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대한민국 헌법과 군사법원법에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법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바, 군사법원이 군사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군사법원에 부여된 권한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사법원의 재판 결과와 절차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동시에 군법을 통한 군기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에 맞도록 엄정한 군사법권의 행사를 통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군의 특수성 또한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모든 군판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판결, 군사법 제도의 목적과 본질에 충실한 판결을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는 물론 일반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준장 홍 창 식
11대 고등군사법원장
(2017.01.01 ~ 현재)



특히,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에 따라 고등군사법원과 각군 군사법원을 일관하여 적용될 원칙과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각군 군사법원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하여 새 제도가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군사법원도 대법원 행정처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사법연감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된 군사법원 연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 병과 창설이래 최초로 발간되는 ‘군사법원 연감’에는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고등군사법원 및 각군 군사법원의 인원 현황, 군사법행정의 운영 내역, 각종 통계자료 및 군사법원 주요 판례 등을 수록하여 매년 군사법원 연감의 내용과 체계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군사법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군사법원에 대한 정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군사법원 내부적으로는 군사법행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외부적으로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군사법원 연감이 나오기까지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주신 국방부 법무관리관님 이하 각군 군사법원장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자료수집, 발간 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군사법원 연감이 한 해 동안 군사법원이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데 도움이 되고,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는 군사법원으로서의 발전을 지향함과 더불어 군사법원이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7년 11월
고등군사법원장 육군준장 홍 창 식

목 차

▣ 군사법원 청사 전경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3
▶ 육군 군사법원	4
▶ 해군 군사법원	5
▶ 공군 군사법원	7

▣ 법원장 및 주요 직위자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1
▶ 육군 군사법원	12
▶ 해군 군사법원	13
▶ 공군 군사법원	14

▣ 군사법원 부대기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7
▶ 육군 군사법원	18
▶ 해군 군사법원	19
▶ 공군 군사법원	20

▣ 연간 발자취[화보]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3
▶ 육군 군사법원	32
▶ 해군 군사법원	38
▶ 공군 군사법원	42

■ 군사법원 월간 주요 행사표	49
■ 연간 군사법원 운영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53
▶ 육군 군사법원	62
▶ 해군 군사법원	70
▶ 공군 군사법원	74
■ 연간 군사법원 운영	
▶ 고등군사법원	81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06
▶ 육군 군사법원	129
▶ 해군 군사법원	152
▶ 공군 군사법원	175
■ 2016년 주요 판례	
▶ 고등군사법원	199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20
▶ 육군 군사법원	225
▶ 해군 군사법원	233
▶ 공군 군사법원	239
■ 군사법 관련 법령 현황	243
■ 2016년 주요 개정 형사 관계법령	249

군사법원 청사 전경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군사법원
해군 군사법원
공군 군사법원

군사법원 청사 전경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청사 전면]



[대법정 내부]



[소법정 내부]

□ 육군 군사법원



[청사 전면]



[법정 내부]

□ 해군 군사법원



[청사 전면]



[법정 내부]

○ 해병대



[청사 전면]



[법정 내부]

□ 공군 군사법원



[청사 전면]



[법정 내부]

법원장 및 주요 직위자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군사법원
해군 군사법원
공군 군사법원

법원장 및 주요 직위자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장



10대 법원장 준장 김 흥 석
(2015. 1. 1. ~ 2016. 12. 31.)

○ 주요 직위자



고등1부장

(前)육군대령 김현수 (現)육군대령 이태휘



고등2부장

해군대령 김영수



보통부장

(前)육군대령(전) 김동혁 (現)육군중령 최정윤



재판연구부장

공군중령 윤대해



국선번호부장

육군소령 김희진



행정처장

3호 양의찬

□ 육군 군사법원

○ 육군군사법원장



16대 법원장 대령 김진기
(2016. 1. 4.~ 2016. 12. 29.)

○ 주요 직위자



재판1부장
중령 유용오



재판2부장
소령 노영주



재판3부장
중령 박지근



재판4부장
중령 김종일



재판연구부장
대위 최광진



국선번호부장
소령 노연우



행정과장
4급 김명순

□ 해군 군사법원

○ 해군본부 군사법원장



13대 법원장 대령 옥도진
(2016. 2. 4.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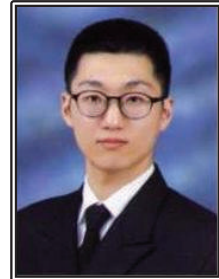
○ 주요 직위자



선임군판사
중령(진) 김성준



군판사
소령 박소은



국선변호부장
대위 김경중



국선변호담당
대위 김성만



행정과장
대위 이윤령



(前)준위 기영석



(現)상사 김찬형

주임원사

(前)준위 기영석

(現)상사 김찬형

□ 공군 군사법원

○ 공군군사법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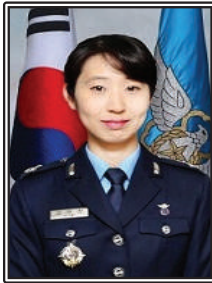


12대 법원장 중령 권 상 진
(2016. 1. 18. ~)

○ 주요 직위자



심판부장
공군소령 한옥희



수석군판사
공군소령 김민정



국선변호부장
공군대위(진) 이영석



행정과장
공군준위 안홍주



합의재판사무담당
5급 김종만

군사법원 부대기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군사법원
해군 군사법원
공군 군사법원

군사법원 부대기

□ 고등군사법원



○ 제정일자: 2000. 6. 29.

○ 규 격: 163cm × 88cm

○ 표식설명

- 단순·명료한 디자인: 공명정대한 고등군사법원을 의미
- 자주빛 바탕: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고결함을 상징
- '법원' 붉은색 글씨: 엄정한 재판권의 행사를 표상(생명, 힘, 정열, 사랑)

□ 육군 군사법원



○ 제정일자: 2000. 7. 1.

○ 표식설명

- 자주색 바탕: 법무병과 상징
- 흰색 도안: 청렴
- 원: 21세기 통일 한국 염원
- 칼: 군사법 엄정함, 정의
- 저울: 군사법원의 공정성, 형평성
- 2000: 군사법원 창설년도

□ 해군 군사법원



- 제 정 일 자: 2008. 11.
- 창 안 자: 군판사 대위 박 성 완
- 부 대 기 설 명
 - 의의: 대한민국 해군의 법치주의 실현기관으로서 엄정한 법적용과 집행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해군의 군법질서 유지와 지휘권 확립에 기여함을 의미함
 - 앵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해군조직의 안정을 도모
 - 앵카내의 동그라미와 훗줄: 군내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해군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
 - 테두리 무궁화: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켜나가자는 의미
 - 테두리 무궁화 색깔(청색): 차가운 이성을 상징
 - 테두리 무궁화내의 칼: 정의를 실현하는 힘을 상징
 - 앵카 동그라미 안의 저울: 엄정한 정의의 기준

□ 공군 군사법원



○ 도안 의의

- 높아진 공군의 위상에 발맞추어 법무병과로서 더욱 진보할 수 있는 건전한 기반이 되고자 군사법원의 신념을 새긴 도안

○ 부분별 의의 및 설명

- 저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
- 하단의 법전: 법에 근거한 공명정대한 재판
- 횃불: 시시비비를 가려내어 정의의 등불을 밝히는 법원을 상징
- 칼: 범죄를 엄단하고 부정을 척결하여 군내 기강 확립의 의지
- 테두리의 월계수: 법질서 확립에 기반하여 공군의 영공수호에 일조하고자 하는 신념

○ 부대 임무

- 공명정대한 재판을 통한 법질서 확립
- 군내 준법의식 고취 및 각종 범죄 엄단·예방

연간 발자취[화보]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군사법원
해군 군사법원
공군 군사법원

연간 발자취[화보]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장 군복무 30주년 기념행사 (2016. 1. 25.)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2016. 1. 25. ~ 2. 5.)



'16년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심판관 임명장 수여식 (2016. 2. 5.)



법원&검찰단 친선 축구대회 (2016. 2. 17.)



고등군사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업무 협약식 (2016. 3. 23.)



'16년도 식목일 행사 (2016. 4. 6.)



2016년 전반기 공무 해외출장[페루] (2016. 4. 17. ~ 26.)



2016년 전반기 직원 워크숍[제주도] (2016. 5. 16. ~ 19.)



2016년 전군 군판사 직무교육[사법연수원] (2016. 5. 23. ~ 27.)



2016년 전반기 성과분석 회의 (2016. 6. 29.)



고등군사법원 창설 제16주년 기념행사 (2016. 7. 1.)



2016년 전군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법원공무원교육원] (2016. 7. 11. ~ 16.)



제5회 고교생 모의군사재판 경연대회 (2016. 9. 2.)



2016년 지역별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간담회[해군1함대] (2016. 10. 19. ~ 20.)



2016년 하반기 공무 해외출장[베트남] (2016. 11. 22. ~ 25.)



2016년 역대 법원장 초청행사 (2016. 12. 5.)



제10·11대 고등군사법원장 이·취임식 (2016. 12. 23.)

□ 육군 군사법원



심판관 임명장 수여식 (2016. 3. 17.)



심판관 교육 (2016. 4. 21.)



군판사 임명장 수여식 (2016. 4. 25.)



대전지방변호사회 방문 (2016. 5. 20.)



군사법원 전반기 워크샵 (2016. 5. 20.)



전반기 전자법정운영원 간담회 (2016. 6. 7.)



대전 보호관찰소 방문 (2016. 6. 16.)



국선변호장교 직무교육 (2016. 9. 9.)



군사법원서기 세미나 (2016. 11. 29.)



전자법정운영원 특허법원 방문 (2016. 11. 29.)



군사법원 하반기 워크샵 (2016. 12. 9.)



육군군사법원장 취임식 (2016. 12. 29.)

□ 해군 군사법원



12 · 13대 군사법원장 이 · 취임식 (2016. 2. 5.)



12 · 13대 군사법원장 이 · 취임식 (2016. 2. 5.)



해군 법무병과 홍보사진 촬영 (2016. 4.19.)



해군 법무병과 홍보사진 촬영 (2016. 4.19.)



해군 군사법원 창설 16주년 기념 행사 (2016. 7. 1.)



2016년 군사법원 서기 직무교육 및 성과분석회의 (2016. 12. 15. ~ 12. 16.)



2016년 군사법원 서기 직무교육 및 성과분석회의 (2016. 12. 15. ~ 12. 16.)

'16년 군사법원 서기 직무교육 및 성과분석 회의
 2016. 12. 15.(목) ~ 16.(금) / 주관 : 해군본부 군사법원



2016년 군사법원 서기 직무교육 및 성과분석회의 (2016. 12. 15. ~ 12. 16.)

□ 공군 군사법원



공군 군사법원장 이임식 (2016. 1. 15.)



공군 군사법원장 취임 (2016. 1. 18.)



군판사 임명식 (2016. 2. 17.)



KR연습 사전 교육 (2016. 2. 19)



심판관 소양 교육 (2016. 3. 22.)



군사법원 서기교육 (2016. 5. 17.)



제16주년 군사법원 부대창설행사 (2016. 6. 29.)



속기사 임용신고 (2016. 7. 1.)



제13회 항공작전법 세미나 (2016. 11. 3.)



공군 군사법원 워크숍 (2016. 12. 6.)

군사법원 월간 주요 행사표



군사법원 월간 주요 행사표

1월	4일 [육군] 대령 김진기 군사법원장 취임 18일 [공군] 제12대 공군군사법원장 중령 권상진 취임 / 신판부 토론회 25일 [고등] 고등군사법원장 준장 김흥석 근속 30주년 기념식 28일 [육군] 법원서기업무 지도방문(1. 28. ~ 29.)(2작사 지역)
2월	5일 [고등] 2016년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심판관 임명장 수여식(차관 주관) 15일 [공군] 군판사 업무 매뉴얼 개정 발간 17일 [공군] 2016년도 군판사 임명장 수여식 22일 [육군] 1군사 지도방문 및 재판부장 회의 22일 [육군] 군사법원서기 실무수습(2. 22. ~ 3. 11.)(하사 사혜진) 29일 [육군] 판결문 용지 개선
3월	7~11일 [육군] 군판사 임명예정자 교육(중행교) 7~11일 [해군] KR연습 훈련참가 10일 [육군] 국선변호인 모범사례집 발간 16일 [육군] 상설재판부(법무관 3인) 시범 운영 17일 [육군] 심판관 임명장 수여식 22일 [공군] 2016년도 심판관 임명장 수여식 및 소양교육 23일 [고등] 고등군사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간 MOU체결 협약식
4월	4일 [해군] 초대 해군 군사법원 주임원사 취임 4~22일 [육군] 군사법원서기 실무수습(하사 위보라) 12일 [육군] 세종시 법원 교류 방문 17~26일 [고등] 고등군사법원장 페루 공무 국외출장 19일 [해군] 해군 법무병과 홍보사진 촬영 20일 [육군] 대전고등법원 교류 방문 21일 [육군] 심판관 교육 25일 [육군] 군판사 임명장 수여식 29일 [육군] 대전지법 양형조사관 방문 - 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 29일 [해군] 2016년 해군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지침 시달
5월	3일 [해군] 해군 군사법원 양형기준 토의 10일 [육군] 대전지방변호사회 교류 방문 10~12일 [육군] 예하 법정시설 중기계획 반영을 위한 실태 점검 17일 [육군] 육·해·공군 군사법원장 회의 17일 [공군] 전반기 법원서기 전문화 교육 15~19일 [고등] 고등군사법원 전 직원 제주도 워크숍 23~27일 [고등] 2016년 전군 군판사 직무교육(사법연수원)
6월	7일 [육군] 전반기 전자법정운용원 간담회 16일 [육군] 대전 보호관찰소 교류 방문 17일 [육군] 국선변호장교 직무교육(17명) 23일 [육군] 군사법원 전반기 성과분석 23~24일 [육군] 군판사 워크숍 29일 [고등] 고등군사법원 전반기 성과분석회의 30일 [공군] 제16주년 부대창설행사 및 전반기 업무분석회의

<p style="text-align: center;">7월</p>	<p>1일 [고등] 고등군사법원 창설 제16주년 기념행사(철원 안보현장 견학) 1일 [육군] 공판조서작성 매뉴얼 발간 1일 [해군] 해군 군사법원 창설 제16주년 기념행사 1일 [공군] 속기사(군무원) 임용 신고 6일 [고등] 합참 워게임센터(JWSC) 견학 11~12일 [육군] 군판사 양형토론 및 재판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연구발표회 11~16일 [고등] 2016년 전군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법원공무원교육원) 18일 [육군]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준비를 위한 토의(1차) 26~27일 [해군] 해군 군판사 및 송무관계관 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8월</p>	<p>1~3일 [육군] 각군 속기사 속기실무과정 위탁교육(법원공무원교육원) 2일 [육군] 피고인 의견서 양식 개정 시행 5일 [공군] 전시 군사법원 업무해설서 개정 발간 9일 [육군]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준비를 위한 토의(2차) 22~25일 [고등] 2016년 을지연습 훈련참가 22~31일 [해군] 2016년 을지연습 훈련참가</p>
<p style="text-align: center;">9월</p>	<p>2일 [고등] 제5회 고교생 모의군사재판 경연대회 8일 [육군] 성범죄 전담 재판부 직무교육 9일 [육군] 초임국선변호장교 직무교육(9명) 19~21일 [육군] 1군 지역 지도방문</p>
<p style="text-align: center;">10월</p>	<p>11일 [육군] 국선변호 매뉴얼 발간 18일 [육군] 대전교도소 방문(화상접견제도 검토) 19~20일 [고등] 지역별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간담회 21일 [육군] 한국법률가 대회 주제 발표(군사법원장) 25일 [육군] 국군교도소 방문 31일 [육군] 육·해·공군 심판부장 회의 개최</p>
<p style="text-align: center;">11월</p>	<p>3일 [공군] 제13회 항공작전법 세미나 개최 11~18일 [육군] 2016년 군사법원 분야 지도방문 실시 20일 [육군] 군사법원서기 세미나 22일 [육군]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준비를 위한 토의(3차) 22~25일 [고등] 고등군사법원장 베트남 공무 국외출장 29일 [육군] 전자법정운영원 특허법원 방문</p>
<p style="text-align: center;">12월</p>	<p>5일 [고등] 2016년 역대 법원장 초청행사 5일 [육군] 2016년 육·해·공군 군사법원 판결집 발간 13일 [공군] 2016년도 법원 워크숍 및 하반기 업무분석회의 15~16일 [해군] 해군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 및 성과분석회의 23일 [고등] 제10·11대 고등군사법원장 이·취임식 23일 [육군] 군판사 세미나(수방사) 29일 [육군] 대령 김상환 육군군사법원장 취임</p>

연간 군사법원 운영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군사법원
해군 군사법원
공군 군사법원

연간 군사법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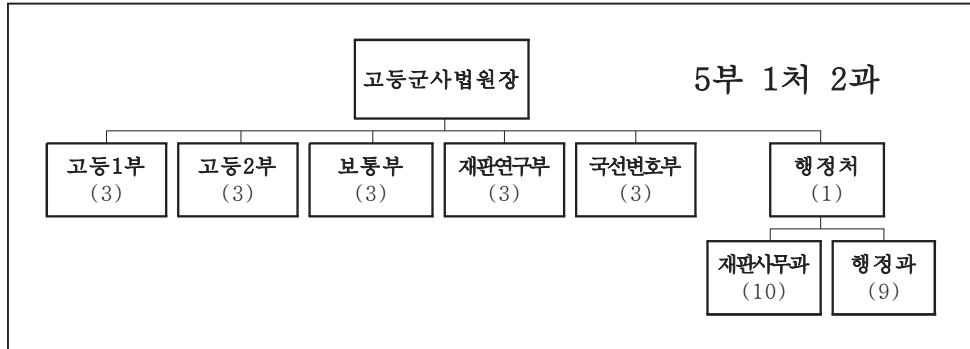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연혁

<p>1948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군 과정 미 군법회의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특별/약식 군법회의(단심제 + 판결심사제도) ○ 국군조직법상 군법회의 설치 근거 마련
<p>1950.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경비법(미 군법회의 제도) 체제하 군법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 - 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
<p>1954.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법회의 헌법적 근거 마련(제2차 헌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에 관한 상고사건 대법원 관할 - 군법회의 구성과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함
<p>1962.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법회의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심제도(보통군법회의 - 고등군법회의 - 대법원) - 군 특수성 반영을 위한 제도(관할관, 심판관)준치 - 소송절차는 일반 형사소송절차 반영 : 사법기관성 강화
<p>1987.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개칭(제9차 헌법 개정) ○ 군사법원법 제정(법무사 → 군판사)
<p>1994.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군사법원 통합(육, 해, 공, 국방부 → 국방부) - 재판부 구성(심판관, 군판사)상 군판사 비율 상향 - 구속영장발부권 : 지휘권 → 군판사
<p>2000.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군사법원 창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분리
<p>2008.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중심주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형사소송법제도에 따른 인신구속제도, 증거조사방식 등
<p>2016. 1. 6. (2017. 7. 7.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 - 간통죄에 대한 배우자의 고소조항 삭제

○ 일반현황

● 기구도



● 정원

구 분	총 계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전 시	39	19	0	8	12
평 시	36	16	0	8	12

● 주요 보직자

직 책	계 급	성 명	임관기수	비고
법 원 장	육군준장	김 홍 석	육사#46	
고등1부장	육군대령	이 태 휘	법무#64	군법13
고등2부장	해군대령	김 영 수	법무#20	군법13
보통부장	육군중령	최 정 윤	법무#70	군법18
재판연구부장	공군중령	윤 대 해	법무#20	군법13
국선번호부장	육군소령	김 희 진	법무#81	사시53
행정처장	계약3호	양 의 찬	'13년 임용	3사#19
재판사무과장	군무5급	이 도 선	'97년 임용	
행정과장	군무6급	김 진 영	'03년 임용	

○ 직원 보직현황

부서	직책	보 직 자		비 고
		계 급	성 명	
지휘부	법원장	육군준장	김홍석	
고등1부	부 장	육군대령	김현수	전출
		육군대령	이태휘	
	고등군판사	육군중령	안지영	
	고등군판사	해군중령	구영우	
고등2부	부 장	해군대령	김영수	
	고등군판사	육군중령	권도형	
	고등군판사	공군소령	박현숙	
보통부	부 장	육군대령(진)	김동혁	전출
		육군중령	최정윤	
	보통군판사	육군소령	김화경	
	영장전담군판사	육군소령	정초아	
재판연구부	부 장	공군중령	윤대해	
	재판연구관	해군대위	이재민	
	외국법령연구관	육군대위	이원준	
국선연구부	부 장	육군대위	김희진	
	국선변호장교	해군대위	김선역	
	국선변호장교	공군대위	윤상일	
행정처	재판사무과	행정처장	계약3호	양의찬
		재판사무과장	사무관	이도선
		재판사무담당	주사보	양홍승
		군사법원서기	육군상사	한영식
		군사법원서기	해군상사	서상우
		군사법원서기	육군상사	강은정
		군사법원서기	공군중사	박승훈
		군사법원서기	주사보	김교성
		사건접수담당	육군중사	김화연
		영장담당서기	해군중사	조현우
	속기사	계약8호	이영하	
	행정과	행정과장	주 사	김진영
		법무행정담당	서기보	홍선미
		인사담당	주사보	백숙현
		재정담당	육군상사	한제환
		군수/보급담당	공군중사	김미지
		법령자료담당	주사보	안은영
지휘부행정담당		주사보	김유라	
전산정보담당		서기보	허은혜	
법무통합체계담당	서기보	이윤희	임용예정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고등부

-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재판의 전문성 확립

2016년 고등부에서는 전군 군판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재판의 전문성 확립을 위하여 향상심 판결 중 새로운 사례나 법리가 포함되어 있거나 1심 판결의 법리상·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파기한 판결문을 전군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공유하는 사업을 진행함.

판결문 공유 후 전군 군판사들의 설문을 받아본 결과, 위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86%(34.45/40)였으며, 판결문 공유로 고등군사법원과 전군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들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공감대가 형성되고, 균형법상 주요 범죄에 대한 고등군사법원 판례의 태도를 알게 되었으며, 성범죄 또는 뇌물 사건 등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전군 군판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재판의 전문성 확립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 주요 재판현황

2016년 고등부는 군인등강제추행, 영내 폭행·가혹행위, 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를 대폭 처리하였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윤일병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처리하면서 2016. 6. 3. 주범인 병장에게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살인죄를 인정하여 징역 40년을 선고함으로써(2016. 8. 25. 대법원 상고기각) 병영문화 선진화를 위한 군사법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군인등강간미수죄 등을 저지른 중령에 대하여는 2016. 5. 12.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2016. 8. 18. 대법원 상고기각) 군내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업무상횡령 등을 저지른 원사에 대하여는 2016. 2. 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2016. 9. 28. 대법원 상고기각) 영내 폭행·가혹행위와 업무상횡령 등이 결합된 범죄는 횡령액 내지 범행 정도의 다소를 불문하고 제적되게 하여 병영문화의 선진화 내지 국가재산의 보호를 도모함. 또한, 청해부대 파병간장병 급량비를 전용하여 양주를 구매한 준장에 대하여는 2016. 10. 17. 징역 1년을 선고하여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등 방위사업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함

● 보통부

- 군사재판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재판의 공정성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모든 심리가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공판중심주의의 필수적 요구사항인 집중심리주의 실현과 신속한 사건처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공판준비절차와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유도

① 집중심리제 및 약식사건 신속처리

-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공판기일이 2회 이상인 경우 연일 또는 14일 이내에 다음 공판기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바, 공판기일간의 간격이 짧을 경우 증인의 증언 등이 군판사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있게 되어 실제적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변론기일간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 前기일에 형성된 심증이 유지되도록 하여 기록에 의한 재판보다는 공판에서 직접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통해 결정이 이뤄지도록 함
- 약식사건은 접수 시로부터 14일 이내 신속한 처리를 통해 피고인을 불안정한 지위에서 신속하게 해방되도록 함
- 구공판 사건 21건 중 16건 집중심리 실시, 약식사건 37건 중 31건 기간내 처리

② 공판준비절차 실시

-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의견서를 기준으로 다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인사건의 경우 수명군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 통해 공판절차 진행 전에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정리 및 증인신청, 증거결정 등 기타 재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함으로써 재판지연 방지 및 공판기일 충실을 기하였음
- 자백사건의 경우 바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재판기간 단축
- 2016년 공판준비절차는 부인사건 17건 모두 공판준비절차 진행하였고, 자백 사건 중 쟁점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2건을 추가적으로 공판준비절차 실시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집중심리를 유도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상 지위 확정이 빨라져 피고인 및 그 가족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

③ 공판준비기일 충실도 설문조사

- 단순한 실적을 위한 형식적인 공판준비절차 방지 및 동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공판준비절차 진행 위해 법적·사실적 쟁점 정리, 증거신청 및 채택 등에 관한 공판준비절차 진행에 대해 검찰관, 변호인, 군판사 간의 상호 충실도 평가 실시함
- 공판준비절차 실질화로 공판기일의 집중화·효율화 통해 피고인, 증인, 심판관 등의 재판 참석 부담 경감
- 충실도는 검찰관 평가서(총점 40점), 변호인 평가서(총점 40점), 군판사 평가서(총점 20점)를 합산한 점수에 따름

- 심판관 전문성 강화 / 현실여건에 부합된 임명

- 심판관 장관 임명장 수여, 자긍심 고취
- 심판관 전문성 교육 / 교재 발간 제작 배포
- 대령 10명 편성 → 대령 19명, 중·소령 10명 편성, 심판관 운영의 융통성 보장

● 재판연구부

-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재판의 전문성 확립

- ① 양형기준 연구를 통한, 불합리한 양형편차 예방 및 각군 재판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군사법 제도 신뢰제고
 - 의견수렴과정 거쳐 주요 군사범죄유형 7개 기준정립
 - 주요 군사범죄 3개(성범죄, 가혹행위, 군사기밀)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하여 각군 군사법원 시범운영 실시
 - 2016년 12월 전군군사법원장 회의에서 신설 양형기준 활용가치 확인
- ② 정기적인 판례세미나를 통해 다루어질 수 있는 법리나 절차 등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 및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군사법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보장
 - 군판사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무상 도움이 되는 주제로 판례세미나 14.5회 개최 및 인트라넷 공유 통한 군사법 역량제고
 - 높은 수준의 업무 기여도 및 만족도 달성, 피드백을 통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주제 발견 및 연구
- ③ 전군군판사 교육을 통해 전군 군사법원의 직무역량 강화
 - 군판사로서의 실무능력 배양, 전문교육과 인문지식 함양
 - 실무에 직접 관련 있는 고등군판사의 사례위주 교육으로 교육효과 증대

- 군사법원 소통강화

- ① 서부지법 간 업무협약
민간법원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형사법분야 정보공유로 민군/사법발전 기회마련
 - 형사법 분야 법리 및 양형관련 정보 공유
 - 형사법 분야 주요 쟁점 관련 세미나 개최 등 공동 연구
 - 양 기관 주최 행사 참여 및 안보현장 견학 등 상호 이해증진 활동
- ② 전군 군사법원장 회의
 - 2017년 고등군사법원 사업계획, 각군 업무중점 소개
 - 균형법상 주요 범죄유형 양형기준 검토
 - 각군 보통군사법원 주요 판결 및 하자 사례 검토
- ③ 지역별 군사법원 간담회
지역별 보통군사법원 통합 간담회를 통하여 최신 형사판례 및 하자 사례 교육, 군사법원 운영 관련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 ④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동계/하계)
 -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교육 자체 수립, 군사법 실무능력 배양에 기여
 - 공소장 및 변론요지서 작성, 판결서 작성 등 체계적인 실무수습 실시
 - 안보현장 견학(제3땅굴, 판문점 등)을 통하여 애국심, 국가관 제고
- ⑤ 공무 해외출장
외국 군사법당국 법무병과 지휘관들과 친선 및 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법체계 이해도 제고와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페루 최고군사법원 간 MOU 체결로 양국간 군사법 교육 및 우호 증진
 - 페루 최고군사법원 등 주요 군사법기관 방문을 통해 양국 군사법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및 의견 교환 및 운영실태 파악
 - 군사법, 전쟁법 및 작전법에 관한 최신 자료 수집 및 연구
 - 베트남 군사법제도 및 운영실태 파악
 - 베트남과 구체적인 비교법적 군사법연구의 계기 마련

● 국선변호부

- 고객감동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사재판의 신뢰성 제고

국선변호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군판사와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선변호인의 재판충실도 평가결과를 국선변호POOL 갱신 및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시 활용하고 군사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함

① 분야별 국선변호인 POOL 운영 및 충실도 평가

- 2016. 3. 8. 서울 지방변호사회에 국선변호인 희망자 의뢰 협조
- 기존의 국선변호인 POOL 명단이 300명이 넘게 됨에 따라 피고인 변호인 지정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지원자 중 국선변호인 평가 만족도 조사, 전문영역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국선변호인 중심으로 60명을 선정하였는 바, 피고인의 권익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경력 등을 인터넷,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군법무관 출신 18명, 사법시험 출신 32명, 변호사시험 출신 10명, 국선변호부 군법무관 3명에 대하여 출신별로 소개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함
- 군판사 평가서(50점), 피고인 평가서(50점)의 반영률을 1:1로 하여 평가한 결과 점수 합산

② 법률상담

- 2016년 총 335건으로 2015년 264건에 비교하여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으며, 법률상담을 통하여 장병의 인권 향상 및 생활법률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
- 군 교도소 수용자 법률상담 및 장병 법률상담 강화
국군교도소와 고등군사법원내 국선변호장교 사무실에 화상상담전용 단말기를 설치하여 상담소요가 있을 시 즉시 상담 가능하고, 국군교도소에 매월 1회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통하여 화상상담으로 부족한 상담부분 해결하려 노력하여 재소자 상담 건수가 전년대비 51건 증가함
- 고등군사법원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상담 건수 매년 증가
상담자가 상대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상담을 더 선호하고, 빠른 피드백을 통하여 인트라넷 법률상담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전년대비 20건 증가

● 행정처

- 조직역량 및 전문성 강화

서기 직무교육 및 다양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역량을 제고함

①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 (1일 → 2박 3일)

- 법원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 및 소송기록 하자사례 교육을 통한 실무교육의 내실화 및 참여도 증가
 - 교육우수자 선발, 법원장 표창/부상수여로 교육효과 증대
 - 고등군판사와의 대화를 통한 증거관련 서류 작성 등 교육효과 증대
- #### ② 직원 교양강좌 및 성폭력 예방교육소집교육
- 직원 소양교육을 위한 외부 초빙 강연으로 품격 있는 직장문화를 선도하고, 문제해결 능력과 시대흐름 읽는 능력 배양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예방으로 행복한 직장문화 제고
 - 주기적 정신교육을 통하여 윤리의식 고양 및 공직관 확립

- 법원 교류활동 강화

①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

- 청소년의 준법정신 함양,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 제고
- 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고 친밀감 제고
- 군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와 엄정한 군의 법 집행절차 실감
- 대본 및 본선 심사 간 민감 범조계/학계와의 교류 증진

② 법정견학 및 재판방청

국민과 장병들의 군사법제도 이해증진을 통한 군의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군사법정 견학프로그램 운영

③ 법정 그림전시회

지속적인 법정 그림전시회를 통하여 피고인 및 방청인에게 마음의 위안과 평정심 진작 계기

- 위기조치 수행능력 강화

위기상황 시 단계별 개인임무,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함

①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견학: 전쟁수행능력 및 위게임 체계도 이해

② 화생방 및 방독면 착용훈련

- 화생방전 세부내용, 전쟁형태별 개인방호 행동요령 교육 실시
- 2차에 걸친 실제 방독면 착용훈련으로 행동요령 숙지

③ 전시전환절차 교육 및 훈련

- UFG 연습 병행 전시임무수행 절차 숙달 자체 훈련 실시
- 비문지출 및 파기, 총기탄약수불, 물자분류 및 적재 후송훈련 등
- 실질적 훈련으로 교육효과 증대

④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 훈련

재난위험경보 발령에 따라 대피, 행동요령 숙지

- 업무 프로세스 개선

판결문 공개서비스 및 휴일 및 야간 서류접수로 소송관계 중심의 열린 군사법원 실현하였고, 업무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함

① 전군 법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각군 법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판결문 등 공유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문 인터넷 공개서비스 제공
- 재판사무시스템, 판결문열람공개시스템 통합 구현 가능

② 휴일 및 야간에 재판관련 서류접수 실시

- 당직근무자의 임무 변경 및 당직근무자의 문서접수 신설
- 소송관계인(민원인)에게 업무편의를 제공하여 불이익 해소
- 소송관계 중심의 열린 군사법원 실현 및 군사법 업무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 발생

③ 지휘관 실무가 간담회를 통한 소통문화 정착

법원장 주관 실무자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복한 직장 문화를 가꾸는 계기 마련

- 2017년 연도부대계획 결과

① 고등군판사 부서조정

- 고등1부 육군중령 → 해군중령
- 고등2부 해군중령 → 육군중령

② 군무원 직렬조정

- 행정처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수사 → 행정
- 행정처 행정과 정보체계담당 행정 → 수사

③ 군무원 직책명 변경

- 행정처 행정과 법원장보좌 → 지휘부 행정담당
- 행정처 행정과 정보체계담당 → 법무통합체계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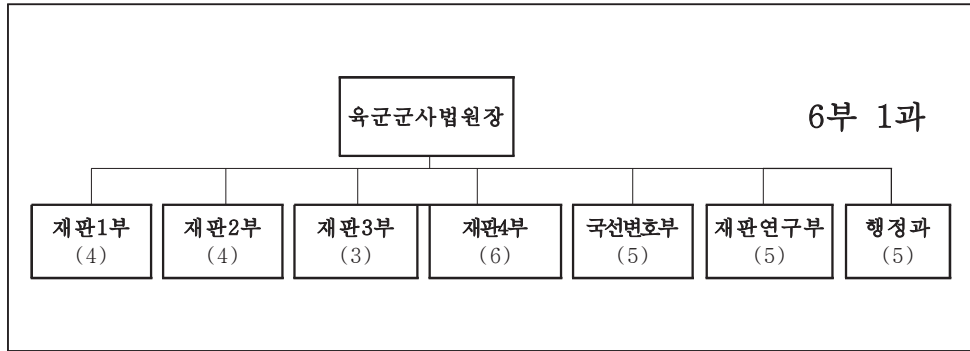
□ 육군 군사법원

○ 연혁

<p>1994. 1.</p>	<p>○ 군사법원법 개정 - 사단급이상 50개소 보통군사법원을 군단급으로 통합 · 18개 군단급이상 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영</p>
<p>2000. 6.</p>	<p>○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확대 설치 : 육일명 제27호(법법37157-106, '00.5.29.) - 설치보류해제 : 34개소(1군: 10개, 2군: 7개, 3군: 15개, 육직: 2개)</p>
<p>2000. 7.</p>	<p>○ 육군군사법원 창설: 육일명 제68호(작편37326-162, '00.6.13.) - 5부 1과로 편성</p>
<p>2004. 12.</p>	<p>○ 항작사 보통군사법원 해체</p>
<p>2007. 3.</p>	<p>○ 군수사 보통군사법원 이전(부산→대전)</p>
<p>2007. 10.</p>	<p>○ 9, 11군단 보통군사법원 해체 - 육일명 07-21호('07.4.21.)</p>
<p>2017. 7. 예정</p>	<p>○ 군사법원법 개정 -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로 군단급이상 군사법원으로 개편 (49개 → 16개) - 법원서기, 전자법정운용원 육군본부로 소속 변경 - 실질적인 심판관 제도 폐지</p>

○ 일반현황

● 기구도



● 정원

구 분	총 계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전 시	88	82	1	1	4
평 시	53	48	1	0	4

● 주요 보직자

직 책	계 급	성 명	임관기수	비고
법 원 장	대령	김 진 기	법무#61	군법10
재판1부장	중령	유 용 오	법무#64	군법13
재판2부장	소령	노 영 주	법무#78	사시50
재판3부장	중령	박 지 근	법무#66	군법15
재판4부장	중령	김 중 일	법무#68	군법17
국선변호부장	소령	노 연 우	법무#78	사시50
재판연구부장	대위	최 광 진	법무#82	사시54
행정과장	군무4급	김 명 순	'86년 임용	공채

○ 직원 보직현황

부서	직 책	보 직 자		비고
		계 급	성 명	
지휘부	법원장	대령	김진기	
재판1부	부 장	중령	유용오	
	군판사	소령	이지민	
	군판사	소령	김선경	
	군판사	소령	배정신	
재판2부	부 장	소령	노영주	
	군판사	소령	조유리	
	군판사	소령	김영환	
	군판사	소령(진)	김태준	
재판3부	부 장	중령	박지근	
	군판사	소령(진)	최종욱	
	군판사	소령(진)	강미림	
재판4부	부 장	중령	김종일	
	군판사	소령	강동욱	
	군판사	소령	오상열	
	군판사	중령	이자연	
	군판사	소령	최재형	
	군판사	소령	양연실	
국선변호부	부 장	소령	노연우	
	국선변호장교	대위	황지환	
	국선변호장교	대위	소준섭	
	국선변호장교	중위	정의진	
	국선변호장교	중위	김법윤	
재판연구부	부 장	대위	최광진	
	재판연구장교	소령(진)	석용식	
	재판연구장교	소령(진)	유진호	
	재판연구장교	대위	정신영	
	재판연구장교	중위	박 명	
행정과	행정과장	4 급	김명순	
	재정장교	대위	정찬동	
	법원서기	준위	오은화	
	기획자료관리원	9 급	이정은	
	전자법정운용원	계약8호	이라리	

○ 연간 주요 추진실적

가. 군판사 임명 및 성범죄 전담재판부의 구성

군판사 임명식은 2016년 4월 25일 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되었다. 2015년에 임명된 군판사 4명을 제외하고 총 14명의 군판사가 새롭게 임명되었음. 2015년과 동일하게 육군본부 보통 군사법원을 비롯하여 1군사·2작전사·3군사의 재판부장들은 중령급으로 임명하였으며, 특히 군사법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군판사 전원을 장기법무관으로 임명하였고, 각 재판부 마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여 군판사 포함)를 운영하여 성범죄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였음

나. 재판 관련 법원 구성원 직무교육

1) 군판사 임명 전 종합교 교육

2016년 육·해·공군 군판사 보직 예정자 및 보직자를 대상으로 육군 주관 하에 종합행정 학교에서 군사재판실무반 교육을 실시하였고, 육군군사법원 재판부장 및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등 재판실무 경험이 풍부한 군사법 실무 전문가의 초빙강의를 통하여 재판업무 수행능력이 강화되었으며, 군판사로서의 투철한 소명의식과 공정한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

2) 성범죄 전담재판부 직무교육

성범죄 전담재판부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9월 8일 성범죄 전담재판부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성범죄 전담재판부 부장판사(윤도근 판사)를 초청하여 '양형기준과 양형심리-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하에 심도 있는 교육을 받았으며, 대전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음

3) 군판사 세미나

2016년 12월 23일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법정에서 육군군사법원장 주관 하 군판사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세미나에서는 상반기 군사법원의 성과분석을 예하 군판사와 공유하고 군판사들의 재판 진행 노하우 및 양형감각의 공유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음

4) 국선변호인 직무교육

2016년 6월 17일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전반기 육군 국선변호장교(총 17명)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년 9월 9일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하반기 육군 초임 국선변호장교(총 9명)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선변호활동 간의 애로사항 및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사명감 및 만족도에 관하여 토의하였고, 초임 국선변호장교들을 대상으로 국선변호 업무 매뉴얼 교육 및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준비사항, 국선변호 업무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하였음

5)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 교육

2016년 11월 29일 육본 소법정에서 군사법원서기 등 총 41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육본 재판부장과 선임법원서기가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군판사 및 법원서기의 편제 및 배치/시기, 2작사 서부 축선 및 일부 사단의 7군단 배속으로 변경된 부대의 관할 문제, 재판 장소 등)과 함께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도방문 시 확인한 하자사례 등을 교육하였음. 군사법원서기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실무수습 교육은 법원서기 공석등을 고려하여 3주간씩 1사단 하사 위보라(2.22.~3.11.), 25사단 하사 사혜진(4.4.~4.22.)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6) 속기사 간담회 및 속기실무과정 위탁교육

2016년 6월 7일 군사법원장 주관으로 육본 및 각 군사령부 속기사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향후 업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11월 29일 간담회에서는 특허법원을 방문하여 속기실무관 간 대화 시간을 가졌으며 전자법정을 견학하여 영상녹화시스템 체험 및 군사법원 도입 필요성에 대해 토의하였음. 각 군사령부 속기사는 2016년 8월 1~3일까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속기실무과정 위탁교육을 수료하였음

다. 군사법원 소통강화

1) 공보군판사 제도 운용

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보군판사 제도를 운용하였고, 공보군판사는 각 상황 별로 공보자료를 작성해 정훈공보실에 제공해 군사법원의 각종 재판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2016년 4월 27일부터 총 7회(육본 5회, 예하대 2회)의 자료를 제공하였음

2) 유관기관 교류협력 및 민간 학술행사 참여

가) 대전 고등·지방법원 교류 방문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우호를 증진하고 민간법원의 축적된 업무 노하우를 학습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20일 대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을 방문하였음

나) 세종시법원 교류 방문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대비해 판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군법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12일 세종시법원을 방문하였고, 설립근거, 대상사건, 인력운용 등을 파악한 후 사단군사법원 폐지 상황의 시사점을 정리하였음

다) 대전변호사협회 교류 방문

국선변호인 협력방안 및 학술세미나 등 공적교류 확대 방안과 군사법 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10일에 대전지방변호사회를 군사법원장 및 국선변호부장이 방문하였음

라) 대전보호관찰소 교류방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명령 후 집행단계를 이해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전역 이후 전자장치 부착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16일 대전보호관찰소에 군사법원장 및 국선변호부장, 군판사들이 방문하였고, 실제로 성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절차 및 부착자에 대한 실시간 감시 상황을 직접 모니터 체험해보았고 담당자들의 애로사항 및 군인의 전역 이후 전자장치 부착 문제 등에 관하여 심도 깊은 토의를 하였음

마) 대전교도소 및 국군교도소 방문

피고인과 가족 및 변호인간의 화상 접견시스템 실태를 파악하고 육군 예하부대 영창 시설(미결수용시설)에의 도입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18일 대전 교도소를, 10월 25일 국군교도소를 국선변호부장, 재판연구부장이 방문하였고, 화상접견제도의 취지, 운영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직접 화상접견실을 참관하여 이용하였음

바) 한국법률가 대회 주제 발표

김진기 군사법원장은 2016년 10월 21일 웨라톤서울팔라스호텔에서 열린 제10회 한국 법률가대회에 참가해 '동아시아 정부조달법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군사법원의 축적된 연구역량을 타 지역의 법조인 및 법학교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음

라. 군사법원 관련 제도 개선

1) 약식사건의 공판절차 회부 시 피고인의 현부심 회부를 불회부로 개선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와 달리 약식명령청구가 공판절차에 회부된 경우 정식재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현부심')에 회부되는 육군의 업무관행이 해군 및 공군과 달라, 3군 군사법원장 회의 및 법무실 월간회의 토의를 거쳐 공판절차 회부의 경우에도 현부심 불회부하는 것으로 정리한 후 이를 인사 측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음

2) 피고인 의견서 정비

대법원 예규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하던 의견서 양식을 피고인이 좀 더 충실하게 답변 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정하였고, 약식사건에도 피고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 하였으며, 이는 약식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피고인들이 직접 재판부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 것임

3) 군사법원 영장 양식 개선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사법원 영장 양식에서 영장의 발부사유 중 소년범과 주거 부정 항목을 삭제하였음

4) 개정 육규 181 「재판사무규정」 발령(전면개정)

2015년부터 시작된 육군규정 181 재판사무규정을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체계가 부조화 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할 규정을 명시했으며, 군판사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 군판사 자격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추가하였음

5) 선임 군판사 재판진행 제도 시범 운영

초임군판사들의 재판진행에 관한 부담을 줄이고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4~6월까지 선임 군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였고, 초임은 선임의 재판진행을 직접 보며 선임의 재판진행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간이 되었음

6) 구속영장 재청구 및 구속적부심 절차 개선

군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재청구한 경우, 차상급 부대 군판사가 재청구 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도록 해당 절차를 개선하였는데, 예를 들면 각 재판부 재판부장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재청구 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육군본부 군판사가 하는 방식으로써 구속영장 재청구 및 구속적부심 절차 개선으로 보다 공정한 영장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음

7) 성범죄 전담재판부 활성화 추진

성범죄전담재판부 활성화를 위해 군사법원은 검찰관의 성범죄전담재판부 대상 사건임을 이유로 한 관할이전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고, 각 군사령부에 성범죄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및 성범죄전담재판부의 대상범죄,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공소제기 시 법원서기를 통해 검찰부에 제공하도록 하였음

마.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준비

1) 각종 업무매뉴얼 정비

군사법원 국선변호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초임 국선변호장교들의 업무 참고자료로서 2016년 6월 15일 ‘국선변호 매뉴얼’을 발간하여(50부) 예하 국선장교들에게 배포하였고,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제도의 의미, 수사단계의 변호활동, 공소제기 후 공판개시 전의 변호활동, 공판 단계의 변호활동, 증거조사 등에 각 단계별로 국선변호인이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서식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2) 공판조서 작성 매뉴얼 발간

군사법원에는 지금까지 공판조서 작성에 관한 매뉴얼이 없어 공판조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를 참고하고, 이에 군사법원법을 접목하여 완성함으로써 군사법원서기들이 공판조서 작성 시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져 군사법원 서기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음

3)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대비 다양한 상황 시뮬레이션 및 평가토의

가)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대비 재판부장 및 법원서기 간담회(11. 22./육본)

육군본부의 재판부는 2016년 11월 22일 육군본부 김완룡 장군실에서 각 군사 재판부장 및 법원서기와 함께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군판사의 배치, 거점군사법원의 운영, 재판의 장소, 2작전사령부 및 7군단 군사법원의 운영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나) 군법무관 3인으로 구성된 군사법원 상설재판부 시범 운영 등

심판관이 축소되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법무관 3인으로 구성된 상설재판부를 시범운영하였는데, 군판사가 아닌 법무관 1인을 심판관으로 임명하여 계급 저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병사사건을 재판하였고, 2016년 4월부터 3건을 시범 운영한 결과 심판관 협의의 효율성 제고, 합의재판의 실질화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4) 법원(정) 신·증축 예산 '18~'22년 중기계획 반영 및 법원차량 편제 조정

개정 군사법원법이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으로서의 실질적·외형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2작사 법원 신축 예산 24억 원을 반영하여 2018년까지 완공하기로 하였으며, 각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법정 노후정도와 필요한 신·증축 규모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18~'22국방중기계획」(5개년, 4개소 116.7억원)에 반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1개소씩 법원 신·증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군판사 3인에 의한 군사 재판이 실시됨으로써 높아지는 군판사들의 장거리 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거점법원용 승합차(12인승)를 장비 편성심의에 통과시켜 2017년 7월 1일 일부 편제에 반영하였고, 점차적으로 차량을 확보 및 배정할 계획임

바. 연구 및 발간 활동

1) 국선변호인 모범사례집 발간

2015년 국선변호장교들의 1년간 변호 업무 수행성과를 묶어 2016년 3월 국선변호 모범사례집을 발간·배포(50부)하였고, 충실한 변론요지서 및 피고인 신문사항, 증인 신문사항 등을 수록하여 신입 국선변호장교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줄이고 질 높은 변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군사법원 판결집 발간

2015년에 이어 육·해·공군 군사법원이 협력하여 주요사건에 관한 판결을 선정하고 이를 엮어서 '16년 육·해·공군 군사법원 판결문 모음집을 발간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결과 다수의 쟁점들이 포함된 판결문을 선정하였으며, 육·해·공군 군사법원이 협력하여 군사법 발전의 토대를 쌓게 된 의미 있는 작업일 뿐 아니라 예하부대 군판사들 및 군사법 종사자, 법무 병과원들에게도 이를 배부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되도록 하였음

3) UFG 관련 전시군사법원 연구

2016년 8월 실시된 UFG와 관련하여 전시군사법원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특히 전시 군사법원의 사건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예비군 동원, 계엄법 시행, 이라크 전쟁 사례라는 3가지 변수로 모델을 세워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 전시 군판사 편제가 늘어나야 함을 보여주었고, 또한 3군사령부의 동원 지정 사례를 통해 동원훈련의 개선의 필요함을 보여주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으며, 위와 같은 연구는 군사법원이 군조직으로 존재할 때 그 특수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4) 군사법원 통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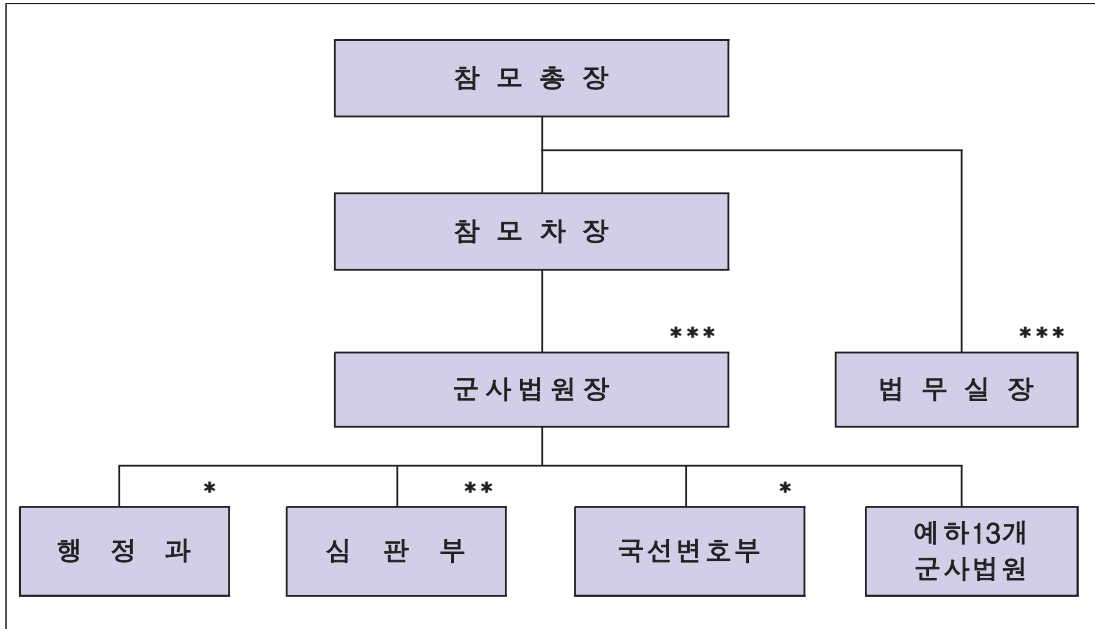
2016년 4월부터 군사법원의 각종 통계를 정리, 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하였고, 4월에는 2015년 군사법원 통계를 정리, 분석하였으며, 2016년 7월에는 전반기 군사법원 통계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6년 10월에는 국회요구자료와 관련된 각종 통계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11월에는 군사법원 3/4분기 통계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군사법원 통계분석은 민간법원의 사법연감 수준의 통계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군사법원의 특수한 통계들을 추가하였고,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통해 정형화된 틀을 정착시켰음

□ 해군 군사법원

○ 일반현황

• 기구도



• 정원

구 분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병	계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편 성	1	1	2	10	5	-	17	1	37
현재원	0	1	2	11	2	-	13	1	30
과부족	-1	0	0	+1	-3	-	-4	0	-7

• 주요 보직자

직 책	계 급	성 명	임관기수	비고
법 원 장	해군대령(진)	옥 도 진	법무#21	군법14
심판부장	해군소령	김 성 준	법무#30	사시48

○ 직원 보직현황

부 대 명		직 책	보 직 자		비 고
			계 급	성 명	
해 본	군사법원 (심판부)	군사법원장	대령(진)	옥도진	
		심판부장	소령	김성준	
		행정과장	대위	최은성	
		법원서기	원사	기영석	
		법원서기	하사	김 준	
	(행정과)	행정담당	하사	유호재	
	(국선번호부)	국선번호담당법무관	대위	김다미	
작전사		작전사 보통군판사	소령	박소은	
		법원서기	원사	정원덕	
교육사, 군수사, 진기사		군수사 보통군판사	대위(진)	김종우	
		법원서기	상사	백대훈	
1함대		법원서기	하사	김현동	
2함대, 인방사		2함대 보통군판사	대위(진)	장민수	
		인방사 보통군판사	중위	배인영	
		법원서기	상사	김인천	
3함대		법원서기	하사	김동현	
해병대사		해병대사 보통군판사	대위	이거량	
		국선번호부장	대위	박성욱	
		법원서기	하사	박현준	
1사단		1사단 보통군판사	대위	송현섭	
		법원서기	중사	정영미	
2사단		2사단 보통군판사	대위	황용남	
		법원서기	하사	양승진	
6여단		법원서기	하사	민경진	
9여단		9여단 보통군판사	대위	김경중	
		법원서기	중사	이신우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군기강 확립

- 성폭력범죄 사건 엄중 처리
 - 계획적 범행의 경우 엄중 처벌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절차 엄격 준수
- 폭행·가혹행위 사건 엄중 처리
 - 의도적·계속적 범행의 경우 작량감경 배제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의사 확인
- 부패행위 관련 사건 엄중 처리
 - 뇌물, 횡령 등 대군 신뢰도 저하 범죄 엄격한 양형기준 적용
 - 계획적·조직적·지능적 범행의 경우 엄격한 양형기준 적용

● 장병 권익 보호

- 판결서 등 공개제도 시행에 적극 대응
 - 본부 및 예하부대 군사법원 판결서 등 전자파일 저장
 - 예하 보통군사법원 서기 전자파일화 작업 감독 및 점검 강화
 - 판결서 열람제도 시행을 위한 판결문 비실명화 작업 지속 수행
- 성범죄 피해자 재판절차 참여 보장
 -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 통지 절차 준수
 -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 통지 등 관련제도 교육
 - 피해자 변호사 의견진술 등 관련 절차 준수
 - 의견진술기일·의견진술예정·의견진술 서면제출의 통지
 - 법정에서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진술 공판조서 기재
 - 피해자 법정진술의 경우 차폐시설이나 피고인 퇴정 등 조치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사법원 구현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해군 군사법원 개편
- 군사법원 시설 보강
 - 군사법원 전자법정 시설 확보
 - '16년 중 증거현출장비 및 증인 영상증계장치 등 설치
 - '16년 상반기 집행잔액 예산으로 사업추진 예정(관련부서 협조 필요)

○ 군사법원 양형기준 정립

-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개정 군사법원법)
- 해군 양형토론회 개최(연 4회)
- 구체적 양형요소 분석을 통한 각군 의견 제시('16. 4. 22.)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주관 군사법원 양형기준 토의('16. 5. 3.)
- 군판사간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한 군판사 직무교육 강화
- 주요범죄 양형기준 공개

○ 군사법원 업무 전문성 강화

- '2016년 해군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지침' 시달('16. 4. 29.)
- 군판사 회의 자료집 개정 및 발간('16. 10. 발간 예정)
- '해군 군사법원 업무규정' 개정('17. 1분기 예정)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해군 군사법원 사무분장 사항 등 개정
- '해군 군사법원 실무제요' 개정 및 발간('17. 1분기 예정)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사법원 실무제요' 개정 소요 반영
- '해군 군사재판 실무' 초판 발행('17. 1분기 예정)
 - 약식명령, 영장발부, 절차진행, 판결서작성 등 업무 주요 하자사례 반영

○ 군사법원 사법행정사무 감독 강화

- 군사법원 지도방문 활동 강화
 - 예하 보통군사법원 서기 직무감찰 및 현장지도 강화
- 군판사 및 법원서기 직무교육 강화
 - 군사법원 업무 주요 하자사례 수집 및 분석
 - 군판사 회의 및 직무교육
 - 법원서기 직무교육
 - 성과분석회의 시('16. 12.) 문제점 토의 및 '17년 업무 반영

□ 공군 군사법원

부서	직책	보 직 자		비 고
		계 급	성 명	
지휘부	군사법원장	공군중령	권상진	
심판부	심판부장	소령	한옥희	
	보통법원판사	소령	김민정	수석군판사
		소령(진)	이용찬	
		대위	박진수	
		대위(진)	이진규	
		대위(진)	이준영	
		중위	김준호	법제과 연구지원
		중위	박성태	
		중위	정성화	
		대위(진)	김민순	항공작전법세미나담당
		중위	김준효	항공작전법세미나담당
	합의재판사무담당	5급	김종만	
	단독재판사무담당	원사	정대기	
국선변호부	국선변호부장	대위(진)	이영석	
	국선변호장교	중위	송영욱	
		중위	이학영	
		중위	정중원	
국선변호사무담당	상사	전용진		
행정과	행정과장	준위	안홍주	
	행정담당	상사	김일환	
	속기사	계약8호	엄혜정	

○ 연간 주요 추진실적

가. 군판사 임명장 수여식과 심판관 풀 구성 및 임명장 수여

공군 군사법원(법원장 중령 권상진)은 2016년 2월 17일 법무실장 주관으로 군판사 임명식이 거행되었음. 이날 8명의 군판사에게 참모총장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되었고, 특히 군사법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군판사 간의 재판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음.

또한, 2016년 3월 23일에는 군사법원장 주관으로 심판관에 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심판관이 단순한 군사재판의 관찰자의 지위가 아니라 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로 거듭나도록 하였음

나. 재판 관련 법원 구성원 실무교육

1) 종합행정학교 군판사 직무교육

2016년 육·해·공군 군판사 보직 예정자 및 보직자를 대상으로 육군 주관 하에 종합행정 학교에서 군사재판 실무반 교육을 실시하였음. 육군군사법원 재판부장 및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등 재판실무 경험이 풍부한 군사법 실무 전문가의 초빙강의를 통하여 재판업무 수행능력이 강화되었고, 군판사로서의 투철한 소명의식과 공정한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

2) 심판부 토론회

공군 군사법원 심판부에서는 양형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 양형기준안을 만들고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양형의 형평성을 연구하였음. 주로 국방부에서 추진을 하는 가혹 행위 범죄, 성범죄, 군사기밀보호범죄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공군자체의 기준을 성안하기도 하였음

3) 사법연수원 군판사 직무교육

2016년 5월 사법연수원에서 고등군사법원장 주관으로 국방부, 육, 해, 공 군판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음. 직무교육에서는 실제 부장판사급 이상의 사법연수원 교수 및 현직 판사들이 중심이 되어 성범죄 재판실무, 뇌물범죄 재판실무, 증거조사, 증거법강의, 법조원로와의 대화 등을 통해 군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4) 증인지원관 교육 및 보완

법원공무원교육원과의 협의로 공군 전 부대 군사법원 재판사무담당은 증인지원관 교육을 수료하는 한편, 심판부는 각 부대 법원별 증인지원관 임명과 함께 증인지원 업무를 위한 운영 안을 마련하였음. 이로써 증인신문 시 성범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등 증인신문의 효율성과 2차 피해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음

5) 전반기 군사법원 재판사무담당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 교육

2016년 5월 17일 공군 군사법원 법정에서 군사법원 재판사무담당(13명)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음. 재판준비부터 재판 이후의 과정, 공판조서의 작성 교육, 기일 전후의 법원 재판사무담당의 역할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재판이 이뤄지도록 교육함

다. 군사법원 전문성 강화 - 속기사 충원 등

공군 군사법원(법원장 중령 권상진)은 2016년 7월 1일자로 속기록에 관한 예규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속기사(8급 임해정)를 충원하였고, 이로써 성범죄 사건 및 주요사건에 대한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속기록을 이용하게 되었음. 또한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영장전담 판사(법무관 김성준)을 파견함으로써,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대비 영장운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준비 TF에도 참여하여 개정 군사법원 대비 관할 등 공군의 입장을 전달하였음

라. 군사법원 예규 개정사항 및 대내외 유관기관 간 활동

1) 군사법원 예규 개정

예하부대 업무보고 및 점검에 관한 예규, 재판서 정본 및 간인에 관한 예규, 확정판결서 열람 복사에 관한 예규를 신설하여 개정 시행하였음

2) 대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및 민간 학술행사 참여

가) 대전 지방검찰청 교류 방문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우호를 증진하고 민간검찰의 축적된 업무 노하우를 학습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였음

나) 대전 해바라기 센터 방문

공군 군사법원 전 직원은 2016년 12월 21일 대전 해바라기센터(충남대학교 병원내 소재)를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상황을 확인하였음.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해바라기 센터 방문으로 심리지원(심리평가, 심리치료)과 함께 법적, 행정적 및 의료적 지원을 확인하였으며, 성범죄 피해자 화상 접견시스템 실태를 파악하고, 화상접견제도의 취지, 운영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직접 화상접견실을 참관하여 이용하였음

다) 군 자녀 군사법원 방청 및 모의재판참여

2016년 7월 16일 공군 군사법원 법정에서 군 자녀를 초대하여 법원 방청을 허가하는 한편 모의재판을 주관하여 재판에 대한 홍보 및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라) 공군 군사법원 창설 16주년 행사 주관

공군 군사법원(법원장 중령 권상진)은 2016년 6월 29일 공군 군사법원 법정에서 창설 16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여, 법원 창설을 축하하였음

마) 법무실 전쟁법 사례연구 조사

공군 군사법원 심판부에서는 전쟁법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법무실과 함께 연구하는 활동을 하였음

바) 공군군사법원 구성원 전체 워크숍

공군 군사법원(법원장 중령 권상진)은 2016년 12월 13일 공군 군사법원 법정에서 법원 워크숍을 주관하여, 2016년 업무실적과 향후추진과제를 확인하며 법원구성원간의 소통을 강화하였음

라. 제13회 항공작전법 세미나 개최(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공동주관)

1)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과제 발표

2016년 11월 3일 제13회 항공작전법세미나에서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과제”를 발표하였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금융, 교육, 방송 등 여러 분야에서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더불어 위협 또한 함께 증대되었고, 실제 이러한 기술발달과 함께 해킹, 디도스 공격 등의 사이버 안보관련 문제가 산적하게 되었음. 이날 발표에서는 김용홍 고문, 이상진 교수 등이 참석하여 국내외 사이버 공격의 동향 및 그 대응사례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2) 공군법률논집 발간

제13회 항공작전법세미나 발표과제를 통권 47호 공군법률논집으로 발간하여, 연구논의와 토론논의를 논집으로 발간하여 후속과제 수행 시 참고하도록 하였음

마.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준비 간 업무 추진 사항

1) 군판사 업무 매뉴얼 작성

군사법원 초임 군판사들의 업무 참고자료로서 2016년 2월 15일 ‘군판사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음. 이번 개정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간과할 수 있는 부분 및 공판 진행 유의사항을 담아 재판진행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를 추가하였고, 또한 공판진행 시나리오를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여 후임 군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사법원에서의 즉결심판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연구하여 반영하였음

2) 판결문 비실명화 작업

군사법원에는 비실명화 예규에 따라서 원본이외의 판결문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실명화 작업을 시행하였음

3)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대비 다양한 상황 평가토의

가)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대비 법원장 및 심판부 간담회

매주 수요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대비 토론회를 심판부장 주관으로 개최하여 관할 및 운영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음. 1부, 2부의 사건현황을 근거로 하여, 영장업무, 신청 사건, 약식명령사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였고, 군사법원 재판사무담당 지원 과제 및 속기사 지원 현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나) 재판 연구 강화

위관 장교에서 영관 장교로 군판사의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내실 있는 재판을 기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재판연구를 강화하였음. 2016년에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을 비교하는 비교법연구, 공무원범죄 몰수에 관한 특례법 연구, 진술거부권 불고지시의 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음주운전에 대한 연구, 범죄피해자 배상신청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였음

4) 시설공사에 따른 예산소요 검토 및 스타렉스 1대 확보

개정 군사법원법이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으로서의 실질적·외형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1부, 2부의 재판현황을 검토하여 관할 조정을 하였으며, 법정의 노후 정도에 따라 2부 재판부 시설공사에 따른 예산소요를 검토하였고, 군판사들의 장거리 출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장비 편성심의에 통과시켜 스타렉스(12인승) 1대를 확보하였음

5) 전시 군사법원법 해설서 개정 등 발간작업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을 준비하여 2016년 8월에는 전시군사법원법 해설을 개정하였음. 또한, 12월에는 공군양형자료집, 공군군사법원 연구집을 발간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였고, 이번 양형자료집에서는 성범죄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방부 양형위원회 토론회 자료 준비를 하였고, 연구집에서는 영장기각사례 등을 분석하여 영장업무에서도 전문성을 마련하였음

6) 기타 업무개선 사항

충실한 재판진행을 위해 재판카드를 도입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공판조서, 재판기록에 대한 철저한 감수로 재판업무 수행 간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음

바. 연구 및 기타 활동

1) 계룡시청 법률상담 및 '하늘LAW 우주LAW'발간 작업

공군 군사법원 국선번호부 및 재판연구 법무관은 계룡시청에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법률상담을 통해 지역적 기반이 되는 계룡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고, 주요 법률상담은 민사, 조세, 가사 등이며 계룡시청 민원실에 2시~4시까지 방문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법률쟁점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홈페이지 등에 '법률산책'을 게시하고, 생활법률 등 사례를 모아서 책자(법률산책 SEASON4)를 발간해오고 있음

2) 법률상담센터의 운영

공군 군사법원 국선번호부에서는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군 구성원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2016년 2월 법률상담 FAQ 게시판을 신설하여 부동산 임대차, 가사, 행정 등의 인터넷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군사법원 판결집 발간

2015년에 이어 육·해·공군 군사법원이 협력하여 주요사건에 관한 판결을 선정하고, 이를 엮어서 '16년 육·해·공군 군사법원 판결문 모음집'을 발간하였음.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결과 다수의 쟁점들이 포함된 판결문을 선정하였고, 공군에서는 5가지의 주요 사건(군인등준강간치상, 상해, 공문서위조등, 군인등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을 선정하였고 육·해·공군 군사법원이 주요 판결을 공유함으로써 재판업무의 역량강화와 협력에 기여하도록 하였음

4) 군사법원 사건 현황통계 연구

2016년 1월에는 김종만 사무관이 군사법원의 각종 통계를 정리, 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했고, 국회 요구 자료를 전담하여 공군군사법원의 사건현황을 근거하여 현황보고를 하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죄명별 현황, 신분별 현황 등을 분석하였음.

이외에도 군사법원 각 사건 진행 및 운영에 대한 요구 자료의 충실한 작성 및 보고로 군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군 군사법원이 되기 위해 매주 2회의 일일 재판 현황부를 작성, 배포해오고 있음

5) 증인여비지침 마련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을 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2016년 8월 군사법원 증인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음

2016년 사건 통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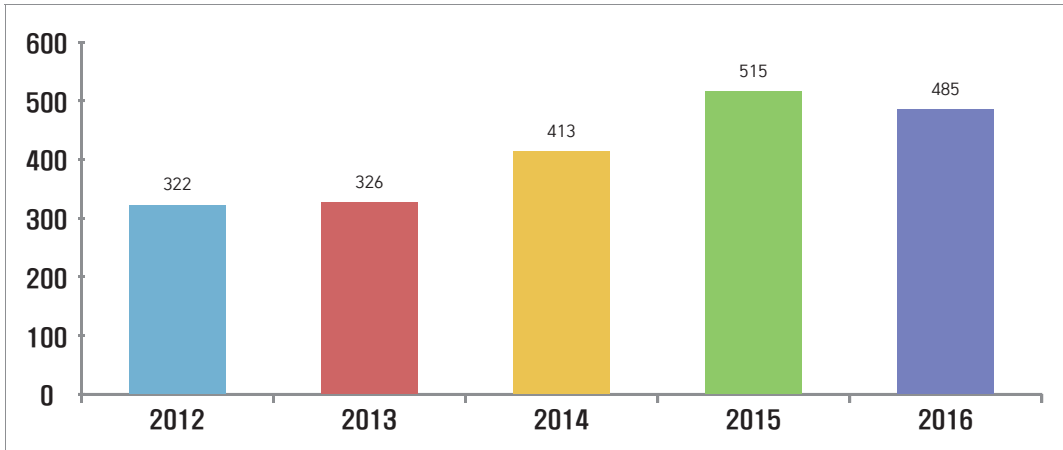


고등군사법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군사법원
해군 군사법원
공군 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접수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322	326	413	515	485

○ 분석

- 2012년 이후 항소사건 접수 증가 추세(2014년: 27%, 2015년: 25%)
- 2016년 전년 대비 항소사건 접수 6% 감소

2. 2016년 항소사건 군별 접수 현황

구분	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계	485	31	369	47	38
비율	100	6.4	76.1	9.7	7.8

2-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군별 접수 현황

구분		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5년 평균	합계	2,061	114	1659	171	117
	비율	100	5.5	80.5	8.3	5.7
2012년	계	322	22	254	25	21
	비율	100	6.8	78.9	7.8	6.5
2013년	계	326	16	263	32	15
	비율	100	4.9	80.7	9.8	4.6
2014년	계	413	11	358	27	17
	비율	100	2.7	86.7	6.5	4.1
2015년	계	515	34	415	40	26
	비율	100	6.6	80.6	7.8	5
2016년	계	485	31	369	47	38
	비율	100	6.4	76.1	9.7	7.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항소사건 접수 중 육군 81%, 해군 8%, 공군 및 국방부 각 6% 차지
- 연도별 군별 접수 비율 유사, 2014년 이후 육군 사건 감소, 공군 사건 증가 추세
- 2016년 육군 76%, 해군 10%, 공군 8%, 국방부 6%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해군 및 공군 사건 증가, 육군 사건 감소, 국방부 사건 유사

3. 2016년 항소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485	87	132	238	17	11
비율	100	17.9	27.2	49.1	3.5	2.3

3-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	합계	2,061	321	452	1,196	63	29
	비율	100	15.6	21.9	58	3.1	1.4
2012년	계	322	47	61	197	13	4
	비율	100	14.6	18.9	61.2	4	1.2
2013년	계	326	48	60	209	8	1
	비율	100	14.7	18.4	64.1	2.5	0.3
2014년	계	413	51	86	263	13	0
	비율	100	12.3	20.8	63.7	3.1	0
2015년	계	515	88	113	289	12	13
	비율	100	17.1	21.9	56.1	2.3	2.5
2016년	계	485	87	132	238	17	11
	비율	100	17.9	27.2	49.1	3.5	2.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58%, 준·부사관 22%, 장교 16%, 군무원 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장교 및 준·부사관 사건 증가, 병 사건 감소 추세
- 2016년 접수 중 병 49%, 준·부사관 27%, 장교 18%, 군무원 4%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준·부사관 사건 증가, 병 사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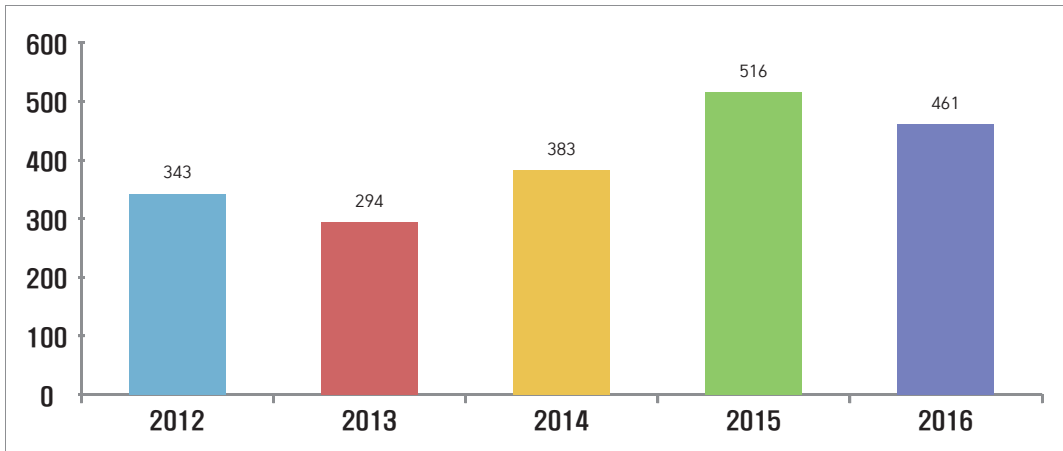
4. 2016년 항소사건 신분별·죄명별 접수 현황

구분	총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총계	485	87	132	238	17	11
균형법범	간접이적					
	군무이탈	19		3	16	
	상관에관한죄	12	2	4	6	
	군용물관련죄	10		1	3	2
	초병에관한죄	7		1	4	2
	성범죄(추행)	60	14	27	17	1
	기타	13	3	1	8	1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2	2			
	문서인장죄	17	11	3	1	2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의죄	14	1	2	11	
	사기횡령배임죄	44	6	12	20	6
풍속에관한죄						
교통법범	교통법위반	18	5	8	4	1
	도교법위반	11	2	6	1	2
	특가법(도주)	6	1	2	3	
성범죄	형법위반	58	7	12	39	
	성폭법위반	41	6	9	25	1
	아청법위반	20	1	5	14	
	성매매특별법					
폭력범죄	상해, 폭행	48	5	13	29	1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16		2	14	
군사기밀보호법	7	7				
국가보안법						
기타	62	14	21	23	3	1

○ 분석

- 2016년 접수 중 균형법범 및 성범죄 각 25%, 주요형법범 16%, 폭력범죄 13% 차지
- 신분별 주요 범죄 비율
 - 장교: 균형법범 및 주요형법범 각 23%
 - 준·부사관: 균형법범 28%, 성범죄 20%
 - 병: 성범죄 33%, 균형법범 23%
 - 군무원: 주요형법범 47%, 균형법범 24%
 - 민간인: 균형법범 64%

5.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처리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343	294	383	516	461

○ 분석

- 2013년 이후 항소사건 처리 증가 추세(2014년: 30%, 2015년: 35%)
- 2016년 전년 대비 항소사건 처리 11% 감소

6. 2016년 항소사건 군별 처리 현황

구분	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계	461	28	367	29	37
비율	100	6.1	79.6	6.3	8

6-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군별 처리 현황

구분		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5년 평균	합계	1,997	114	1,609	162	112
	비율	100	5.7	80.6	8.1	5.6
2012년	계	343	34	252	33	24
	비율	100	9.9	73.5	9.6	7
2013년	계	294	13	239	27	15
	비율	100	4.4	81.3	9.2	5.1
2014년	계	383	17	328	28	10
	비율	100	4.4	85.6	7.3	2.6
2015년	계	516	22	423	45	26
	비율	100	4.3	82	8.7	5
2016년	계	461	28	367	29	37
	비율	100	6.1	79.6	6.3	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항소사건 처리 중 육군 81%, 해군 8%, 공군 및 국방부 각 6% 차지
- 연도별 군별 처리 비율 유사, 2014년 이후 육군 사건 감소, 공군 사건 증가 추세
- 2016년 육군 80%, 공군 8%, 해군 및 국방부 각 6%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국방부 및 공군 사건 증가, 육군 및 해군 사건 감소

7. 2016년 항소사건 항소인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계	461	208	110	143
비율	100	45.1	23.9	31

7-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항소인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	합계	1,997	991	425	581
	비율	100	49.6	21.3	29.1
2012년	계	343	181	63	99
	비율	100	52.8	18.4	28.9
2013년	계	294	160	59	75
	비율	100	54.4	20.1	25.5
2014년	계	383	186	82	115
	비율	100	48.6	21.4	30
2015년	계	516	256	111	149
	비율	100	49.6	21.5	28.9
2016년	계	461	208	110	143
	비율	100	45.1	23.9	3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피고인 항소 79%, 군검사 항소 50%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군검사의 항소율 증가 추세
- 2016년 항소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76%, 군검사의 항소율 55%
- 2016년 전년 대비 피고인의 항소율 감소, 군검사의 항소율 증가

8. 2016년 항소사건 구속 / 불구속 처리 현황

구 분	계	구속	불구속
계	461	148	313
비율	100	32.1	67.9

8-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구속 / 불구속 처리 현황

구 분		계	구속	불구속
5년 평균	합계	1,997	768	1,229
	비율	100	38.4	61.6
2012년	계	343	133	210
	비율	100	38.8	61.2
2013년	계	294	134	160
	비율	100	45.6	54.4
2014년	계	383	161	222
	비율	100	42.0	58
2015년	계	516	192	324
	비율	100	37.2	62.8
2016년	계	461	148	313
	비율	100	32.1	67.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구속 사건 38%, 불구속 사건 62%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구속 사건 감소, 불구속 사건 증가 추세
- 2016년 항소사건 중 구속 사건 32%, 불구속 사건 68%

9. 2016년 항소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파기자판				항소기각	항소취하	이송 등
		소계	법리오해 ·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중	감경			
계	461	175	40	17	118	183	35	68
비율	100	38.0	8.7	3.7	25.6	39.7	7.6	14.8

9-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재판결과

구 분		합계	파기자판				항소기각	항소취하	이송 등
			소계	법리오해 ·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중	감경			
5년 평균	합계	1997	987	182	139	666	699	105	206
	비율	100	49.4	9.1	7	33.4	35	5.3	10.3
2012년	계	343	196	28	36	132	117	10	20
	비율	100	57.1	8.2	10.5	38.5	34.1	2.9	5.8
2013년	계	294	165	25	21	119	99	8	22
	비율	100	56.1	8.5	7.1	40.5	33.7	2.7	7.5
2014년	계	383	213	45	37	131	125	10	35
	비율	100	55.6	11.7	9.7	34.2	32.6	2.6	9.1
2015년	계	516	238	44	28	166	175	42	61
	비율	100	46.1	8.5	5.4	32.2	33.9	8.1	11.8
2016년	계	461	175	40	17	118	183	35	68
	비율	100	38	8.7	3.7	25.6	39.7	7.6	14.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1심파기율 50%, 항소기각률 35%, 항소취하 5%, 이송 등 10%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기각률 및 이송 등 증가, 1심파기율 감소 추세
1심파기 중 양형 감경 감소, 양형 가중도 2014년 이후 감소 추세
- 2016년 항소사건 1심파기율 38%, 항소기각률 40% 차지

10. 2016년 항소사건 신분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461	99	99	249	8	6
비율	100	21.5	21.5	54	1.7	1.3

10-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신분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	합계	1997	307	411	1,203	54	22
	비율	100	15.4	20.6	60.2	2.7	1.1
2012년	계	343	50	63	209	13	8
	비율	100	14.6	18.4	60.9	3.8	2.3
2013년	계	294	40	58	187	7	2
	비율	100	13.6	19.7	63.6	2.4	0.7
2014년	계	383	55	71	244	11	2
	비율	100	14.4	18.5	63.7	2.9	0.5
2015년	계	516	63	120	314	15	4
	비율	100	12.2	23.3	60.9	2.9	0.8
2016년	계	461	99	99	249	8	6
	비율	100	21.5	21.5	54	1.7	1.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병 60%, 준·부사관 20%, 장교 15%, 군무원 3%, 민간인 1%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병 사건만 감소, 타 신분은 계속 변동
- 2016년 병 사건 54%, 장교 및 준·부사관 사건 각 21%, 민간인 사건 1%, 군무원 2%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장교 사건 사건 대폭 증가

11. 2016년 항소사건 죄명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균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타
계	461	55	72	36	163	84	9	42
비율	100	11.9	15.6	7.8	35.4	18.2	2	9.1

11-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죄명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균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타
5년 평균	합계	1,997	379	308	148	618	360	36	148
	비율	100	19	15.4	7.4	30.9	18	1.8	7.4
2012년	계	343	100	53	23	78	52	10	27
	비율	100	29.2	15.5	6.7	22.7	15.2	2.9	7.9
2013년	계	294	74	53	25	71	47	6	18
	비율	100	25.2	18	8.5	24.1	16	2	6.1
2014년	계	383	90	51	27	124	69	7	15
	비율	100	23.5	13.3	7	32.4	18	1.8	3.9
2015년	계	516	60	79	37	182	108	4	46
	비율	100	11.6	15.3	7.2	35.3	20.9	0.8	8.9
2016년	계	461	55	72	36	163	84	9	42
	비율	100	11.9	15.6	7.8	35.4	18.2	2	9.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포함) 31%, 균형법범 19%, 폭력범죄 18%, 주요형법범 1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균형법범 감소, 타 범죄 증가 추세
- 2016년 항소사건 중 성범죄 35%, 폭력범죄 18%, 주요형법범 16%, 균형법범 12%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죄명별 비율 유사

12. 2016년 항소사건 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계	461	0	102	122	74	20	40	103
비율	100	0	22.1	26.5	16.1	4.3	8.7	22.3

12-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	합계	1997	2	498	626	319	105	136	311
	비율	100	0.1	24.9	31.3	16.0	5.3	6.8	15.6
2012년	계	343	1	101	112	59	24	16	30
	비율	100	0.3	29.4	32.7	17.2	7.0	4.7	8.7
2013년	계	294	0	72	109	50	11	22	30
	비율	100	0	24.5	37.1	17	3.7	7.5	10.2
2014년	계	383	0	102	128	56	32	20	45
	비율	100	0	26.6	33.4	14.6	8.4	5.2	11.7
2015년	계	516	1	121	155	80	18	38	103
	비율	100	0.2	23.4	30.0	15.5	3.5	7.4	20
2016년	계	461	0	102	122	74	20	40	103
	비율	100	0	22.1	26.5	16.1	4.3	8.7	22.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집행유예 31%, 자유형 25%, 재산형 16%, 무죄 7%, 선고유예 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자유형 및 집행유예 감소, 무죄 증가 추세
- 2016년 항소사건 중 집행유예 26%, 자유형 22%, 재산형 16%, 무죄 9%, 선고유예 4%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집행유예 감소

13. 2016년 항소사건 죄명별·형기별 처리 현황

구분	총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총계	461	0	102	122	74	20	40	103	
양면 양면	간첩이적								
	군무이탈	25		8	7	2		8	
	상관에관한죄	10		4	3	2		1	
	군용물관련죄	9		2	4		1	2	
	초병에관한죄	11		1	7	1	1	1	
	성범죄(군인대상)	58		9	28		5	4	12
	기타								
주요 양면 양면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7		2	3		2		
	문서인장죄	15		2	4	1	3	3	2
	살인의죄	5		5					
	과실치사상죄	2			1	1			
	절도강도의죄	14		4	3	3	1		3
	사기횡령배임죄	36		13	7	7		1	8
	풍속에관한죄								
교특 양면 양면	교특법위반	17		3	4	1		1	8
	도교법위반	10			1	5		1	3
	특가법(도주)	7		2	1	2		1	1
성 양면 양면	형법위반	43		5	13	4		7	14
	성폭법위반	42		20	6	8		3	5
	아청법위반	19		6	1	5		4	3
	성매매특별법	1			1				
복 양면 양면	상해,폭행	55		7	11	18	1	2	16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24		5	7	4	1	1	6
군사기밀보호법	9		2	7					
국가보안법									
기타	42		2	3	15	4	8	10	

○ 분석

- 군형법범 24%,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 23%, 폭력범죄 및 주요형법범 각 17% 차지
- 군형법범의 경우 집행유예 43%, 자유형 21%, 선고유예 9% 차지
- 성범죄의 경우 자유형 29%, 집행유예 20%, 재산형 17%, 무죄 14% 차지

14. 2016년 항소사건 신분별·형기별 처리 현황

구분	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계	461	0	102	122	74	20	40	103
장교	장성	2	0	1	0	0	0	1
	영관	46	0	7	13	8	3	13
	위관	51	0	3	17	14	4	5
준·부사관	99	0	13	29	23	10	10	14
병	249	0	73	56	28	3	11	78
군무원	8	0	4	2	1	0	1	0
민간인	6	0	1	5	0	0	0	0

○ 분석

- 장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30%, 재산형 22%, 무죄 18%, 자유형 11% 차지
- 준·부사관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29%, 재산형 23%, 자유형 13%, 무죄 10% 차지
- 병 사건의 경우 자유형 29%, 집행유예 22%, 재산형 11%, 무죄 4% 차지
- 군무원 사건의 경우 자유형 50%, 집행유예 25%, 재산형 및 무죄 각 12% 차지
- 민간인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83%, 자유형 17% 차지

15. 2016년 항소사건 자유형 처리 현황

구 분	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계	102	0	3	18	12	44	25
비율	100	0	2.9	17.6	11.8	43.1	24.5

15-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자유형 처리 현황

구 분		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	합계	498	0	14	44	66	256	118
	비율	100	0	2.8	8.8	13.3	51.4	23.7
2012년	계	101	0	2	4	10	61	24
	비율	100	0	2	4	9.9	60.4	23.8
2013년	계	72	0	0	3	16	34	19
	비율	100	0	0	4.2	22.2	47.2	26.4
2014년	계	102	0	2	9	15	56	20
	비율	100	0	2.0	8.8	14.7	54.9	19.6
2015년	계	121	0	7	10	13	61	30
	비율	100	0	5.8	8.3	10.7	50.4	24.8
2016년	계	102	0	3	18	12	44	25
	비율	100	0	2.9	17.6	11.8	43.1	24.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1년 이상 3년 미만 51%, 3년 이상 25%, 1년 미만 24%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3년 이상 증가, 3년 미만 감소 추세
- 2016년 1년 이상 3년 미만 43%, 3년 이상 32%, 1년 미만 24% 차지

16. 2016년 항소사건 처리일수 현황

구 분	계	사건처리 일수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계	461	60	38	49	81	85	82	29	13	14	10
비율	100	13	8.2	10.6	17.6	18.4	17.8	6.3	2.8	3	2.2

16-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처리일수 현황

구 분	계	사건처리 일수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5년 평균	합계	1,997	308	284	313	333	287	214	119	61	32	46
	비율	100	15.4	14.2	15.7	16.7	14.4	10.7	6	3.1	1.6	2.3
2012년	계	343	55	93	59	47	35	16	16	11	4	7
	비율	100	16	27.1	17.2	13.7	10.2	4.7	4.7	3.2	1.2	2
2013년	계	294	39	46	77	48	37	19	17	2	4	5
	비율	100	13.3	15.6	26.2	16.3	12.6	6.5	5.8	0.7	1.4	1.7
2014년	계	383	59	42	57	65	55	42	27	14	5	17
	비율	100	15.4	11	14.9	17	14.4	11	7	3.7	1.3	4.4
2015년	계	516	95	65	71	92	75	55	30	21	5	7
	비율	100	18.4	12.6	13.8	17.8	14.5	10.7	5.8	4.1	1	1.4
2016년	계	461	60	38	49	81	85	82	29	13	14	10
	비율	100	13	8.2	10.6	17.6	18.4	17.8	6.3	2.8	3	2.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처리 중 120일 이내 45%, 121일 이상 210일 이내 42%, 211일 이상 1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120일 이내 감소, 121일 이상 증가 추세
- 2016년 처리 중 120일 이내 32%, 121일 이상 210일 이내 54%, 211일 이상 14% 차지

17. 2016년 항소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민간변호사	군법무관	
계	358	174	126	48	184
비율	100	48.6	35.2	13.4	51.4

※ 이송 등 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7-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민간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	합계	1686	867	670	197	819
	비율	100	51.4	39.7	11.7	48.6
2012년	계	313	143	118	25	170
	비율	100	45.7	37.7	8	54.3
2013년	계	264	136	116	20	128
	비율	100	51.5	43.9	7.6	48.5
2014년	계	338	195	147	48	143
	비율	100	57.7	43.5	14.2	42.3
2015년	계	413	219	163	56	194
	비율	100	53	39.5	13.6	47
2016년	계	358	174	126	48	184
	비율	100	48.6	35.2	13.4	51.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49%,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77%
- 연도별 분석결과 2012년 이후 사선변호인 선임률 감소하다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감소 추세
- 2016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51%
- 2016년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72%

19. 2016년 항소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구 분	계	재판결과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무죄	이송 등
계	6	1	5	0	0	0	0
비율	100	16.7	83.3	0	0	0	0

19-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구 분		계	재판결과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	합계	22	2	16	0	0	2	2
	비율	100	9.1	72.7	0	0	9.1	9.1
2012년	계	8	0	7	0	0	1	0
	비율	100	0	87.5	0	0	12.5	0
2013년	계	2	1	0	0	0	1	0
	비율	100	50	0	0	0	50	0
2014년	계	2	0	2	0	0	0	0
	비율	100	0	100	0	0	0	0
2015년	계	4	0	2	0	0	0	2
	비율	100	0	50	0	0	0	50
2016년	계	6	1	5	0	0	0	0
	비율	100	16.7	83.3	0	0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집행유예 73%, 자유형 및 무죄 각 9% 차지
- 2016년 집행유예 83%, 자유형 17%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집행유예 및 자유형 증가

20. 2016년 항소사건 무죄 선고 현황(11명)

사건번호	계급	죄명	무죄 선고 사유	비고 (상고결과)
2015노116	중사	폭처법위반(상습강요)	피해자들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항소심 확정
2015노172	상사	강제추행	피해자와 참고인 등의 진술 일관성 없고, 고소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이 왜곡 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항소심 확정
2015노279	상사	성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로서 범죄 불성립	항소심 확정
2015노354-1	중령	뇌물수수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상고심 계류 중
2015노354-3	중령	뇌물수수	피고인이 받은 봉투에 돈이 들어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상고심 계류 중
2015노393	상사	강제추행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이고, 술에 취해 지인으로 착각하여 어깨동무하듯이 약 2초간 접촉 후 피해자가 저항 없이 벗어난 점 및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	2016. 12. 15. 상고기각
2016노4	대위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과 구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나 '투표권유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음	2016. 12. 15. 상고기각
2016노100	상병	아청법위반(강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쉽게 수긍이 가지 않으며, 피해자의 행동도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임	2017. 1. 25. 상고기각
2016노117	중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교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가 아니어서 피해자를 구호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며, 사고가 경미하였고 비산물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함	항소심 확정
2016노167	소령(진)	직무유기	범행 당시의 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고유의 직무가 있다거나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상고심 계류 중
2016노169	중사	특수협박	협박죄의 범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2016. 12. 1. 상고기각

21. 2016년 상고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항소심 판결인원	상고인원	상고율
계	461	172	37.3

21-1. 최근 5년간 상고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항소심 판결인원	상고인원	상고율
5년 평균	1,997	709	35.5
2012년	343	140	40.8
2013년	294	101	34.4
2014년	383	128	33.4
2015년	516	168	32.6
2016년	461	172	37.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대법원 상고율 36%
- 연도별 분석결과 대법원 상고율 계속 감소하다가, 2016년 증가
- 2016년 대법원 상고율 37%, 전년 대비 상고율 증가

22. 2016년 상고사건 처리 현황

총계	판 결						상 고 파기율	상고취하	기타
	소계	상고기각	파 기						
			파기환송	파기이송	공소기각 (파기자판)				
158	138	134	4	0	0	2.9	20	0	

※ 파기율 = 파기인원 / 판결인원 × 100 (상고취하, 기타 제외)

22-1. 최근 5년간 상고사건 처리 현황

구분	총계	판 결						상 고 파기율	상고취하	기타
		소계	상고기각	파 기						
				파기환송	파기이송	공소기각 (파기자판)				
5년 평균	691	581	538	39	1	3	7.4	110	0	
2012년	130	108	98	9	0	1	9.3	22	0	
2013년	111	94	89	5	0	0	5.3	17	0	
2014년	124	100	87	10	1	2	13	24	0	
2015년	168	141	130	11	0	0	7.8	27	0	
2016년	158	138	134	4	0	0	2.9	2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상고기각률 93%, 상고사건 파기율 7% 차지, 선고 전 상고취하율 16%
- 연도별 분석결과 대법원 상고율 계속 5% 이상 되다가, 2016년 2.9%로 대폭 감소,
대법원 선고 전 상고취하율 감소 추세
- 2016년 대법원 선고 전 상고취하율 13%, 전년 대비 감소

23. 2016년 상고심 파기 환송 현황(4건)

사건번호	죄명	파기사유
2014노70	강요 등	'16. 1. 6. 형법 개정으로 '강요죄'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 추가되어 신법 적용을 위함
2015노298	강요, 초소침범 등	'16. 1. 6. 형법 개정으로 '강요죄'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 추가되어 신법 적용과 초소침범죄가 초병의 제지에 불응 시 성립함에 비추어 <u>출입증 요구만으로는 '제지행위'로 보기에 부족함</u>
2015노76	초병폭행 등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취지에 따라 민간법원과 재판권 분리
2016노30	군기누설 등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업무상 점유한 군사기밀'에 관한 법리오해 ,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적용

※ 법리오해: 1건, 재판권 분리: 1건, 신법 적용: 2건

24. 2016년 신청사건 접수 현황

구 분	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타
계	72	53	10	2	7
비율	100	73.7	13.9	2.7	9.7

24-1. 최근 3년간 신청사건 접수 현황

구 분		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타
3년 평균	합계	229	163	23	16	27
	비율	100	71.2	10	7	11.8
2014년	계	74	55	2	8	9
	비율	100	74.3	2.7	10.8	12.2
2015년	계	83	55	11	6	11
	비율	100	66.3	13.3	7.2	13.2
2016년	계	72	53	10	2	7
	비율	100	73.6	13.9	2.8	9.7

○ 분석

- 최근 3년 평균 재정신청 71%, 보석청구 10%, 형사보상청구 7%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보석청구 증가, 형사보상청구 감소 추세
- 2016년 재정신청 74%, 보석청구 14%, 형사보상청구 3% 차지
- 2016년 전년대비 재정신청 사건 증가, 형사보상청구 사건 대폭 감소

25. 2016년 신청사건 처리 현황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 타		
계	공소 제기	기각	계	허가	기각	계	인용	기각	계	인용	기각
61	1	60	10	2	8	4	4	0	6	0	6

25-1. 최근 3년간 신청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 타		
	계	공소 제기	기각	계	허가	기각	계	인용	기각	계	인용	기각
3년 평균	188	3	185	23	3	20	18	16	2	27	0	27
2014년	51	2	49	2	0	2	7	6	1	11	0	11
2015년	76	0	76	11	1	10	7	6	1	10	0	10
2016년	61	1	60	10	2	8	4	4	0	6	0	6

○ 분석

- 최근 3년 평균 재정신청 공소제기율 1.6%, 보석청구 허가율 13%,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88.9%
- 연도별 분석결과 재정신청 공소제기율 감소,
보석청구 허가율 및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증가 추세
- 2016년 재정신청 공소제기율 1.6%, 보석청구 허가율 20%,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100%
- 2016년 전년 대비 재정신청 공소제기율, 보석청구 허가율,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증가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 2016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계	97	54	43
비율	100	55.7	44.3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	합계	470	243	227
	비율	100	51.7	48.3
2012년	계	87	40	47
	비율	100	46	54
2013년	계	106	43	63
	비율	100	40.6	59.4
2014년	계	89	52	37
	비율	100	58.4	41.6
2015년	계	91	54	37
	비율	100	59.3	40.7
2016년	계	97	54	43
	비율	100	55.7	44.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52%, 약식 사건 48%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전체 형사사건 접수 및 공판 사건 비율 증가 추세
- 2016년 접수 중 공판 사건 56%, 전년 대비 공판 사건 비율 감소

2. 2016년 형사사건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총계		장교		준 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97		47		19		11		19		1	
총계	54	43	27	20	9	10	8	3	9	10	1	
군 형법범	간첩이적죄	1			1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1									1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 대상)	4		1				2		1		
	기타	1	1					1	1			
주요 형법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13		8		3			2			
	문서인장죄	3	1	1		1			1	1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의죄											
	사기공갈죄	3		2				1				
	횡령배임죄	4	3	4	2		1					
	풍속에관한죄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1	7	1	4		1		1			
	도교법위반		1				1					
	도교법위반(음주)	2	23	1	10		6		1	1	6	
	특가법위반(도주)											
성범죄	형법위반	2	1	1	1			1				
	성폭법위반	1								1		
	아청법위반	2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1	1	1	1							
폭력범죄	상해폭행의죄	2						1		1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7		5						2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6	5	2	2	3	1	1			2		

○ 분석

- 2016년 접수 중 교통범죄 35%, 주요형법범 28%,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포함) 12%, 군기법위반 7%, 군형법범(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 4%, 폭력범죄 2%
- 전체 사건 중 뇌물범죄 13%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91%

3. 2016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97	47	19	11	19	1
비율	100	48.4	19.5	11.3	19.5	1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	합계	470	206	87	86	85	6
	비율	100	43.8	18.5	18.3	18.1	1.3
2012년	계	87	43	12	17	11	4
	비율	100	49.4	13.7	19.5	12.6	4.5
2013년	계	106	38	28	21	19	
	비율	100	35.8	26.4	19.8	17.9	
2014년	계	89	30	15	20	23	1
	비율	100	33.7	16.8	22.4	25.8	1.1
2015년	계	91	48	13	17	13	
	비율	100	52.7	14.2	18.6	14.2	
2016년	계	97	47	19	11	19	1
	비율	100	48.4	19.5	11.3	19.5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장교 44%, 준·부사관, 병, 군무원 각 18%, 민간인 1%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병 사건 감소 추세, 그 외 신분 계속 변동
- 2016년 접수 중 장교 48%, 준·부사관 및 군무원 각 20%, 병 11%, 민간인 1%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준·부사관 및 군무원 사건 증가, 장교 및 병 사건 감소

4. 2016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54	27	9	8	9	1
비율	100	50	16.6	14.8	16.6	1.8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	합계	243	118	30	55	34	6
	비율	100	48.6	12.3	22.6	14	2.5
2012년	계	40	21	4	10	1	4
	비율	100	52.5	10	25	2.5	10
2013년	계	43	17	9	10	7	
	비율	100	39.5	20.9	23.2	16.2	
2014년	계	52	20	4	14	13	1
	비율	100	38.4	7.7	26.9	25	1.9
2015년	계	54	33	4	13	4	
	비율	100	61.1	7.4	24	7.4	
2016년	계	54	27	9	8	9	1
	비율	100	50	16.6	14.8	16.6	1.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장교 49%, 병 23%, 군무원 14%, 준·부사관 12%, 민간인 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병 사건 감소 추세, 그 외 신분 계속 변동
- 2016년 접수 중 장교 50%, 준·부사관 및 군무원 각 17%, 병 15%, 민간인 2%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준·부사관 및 군무원 사건 증가, 장교 및 병 사건 감소

5. 2016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92	46	28	3	9	5	1	46	21	11	3	11	
비율	100	50	30.4	3.2	9.7	5.4	1	50	22.8	11.9	3.2	11.9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평균	합계	457	230	110	27	55	32	6	227	88	56	31	52	
	비율	100	50.3	24	5.9	12	7	1.3	49.6	19.2	12.2	6.7	11.3	
2012년	계	87	43	15	9	11	5	3	44	19	8	7	10	
	비율	100	49.4	17.2	10.3	12.6	5.7	3.4	50.5	21.8	9.1	8	11.4	
2013년	계	100	40	23	7	6	3	1	60	22	18	10	10	
	비율	100	40	23	7	6	3	1	60	22	18	10	10	
2014년	계	94	50	16	5	16	13		44	12	12	7	13	
	비율	100	53.1	17	5.3	17	13.8		46.8	12.7	12.7	7.4	13.8	
2015년	계	84	51	28	3	13	6	1	33	14	7	4	8	
	비율	100	60.7	33.3	3.5	15.4	7.1	1.1	39.2	16.6	8.3	4.7	9.5	
2016년	계	92	46	28	3	9	5	1	46	21	11	3	11	
	비율	100	50	30.4	3.2	9.7	5.4	1	50	22.8	11.9	3.2	11.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접수 비율과 유사
- 연도별 분석결과 병 사건 공판 및 약식 모두 감소, 준·부사관 및 군무원 공판 사건 감소 추세
- 2016년 처리 중 장교 53%, 군무원 17%, 준·부사관 15%, 병 13%, 민간인 1%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장교, 준·부사관 사건 증가, 병 사건 감소, 군무원 및 민간인 사건 유사

6. 2016년 형사사건 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계	92	46		14	12	11	3	1	1	4		46	43	3
비율	100	50		15.3	13.1	11.9	3.3	1	1	4.4		50	46.8	3.2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평균	합계	457	230		37	79	59	18	12	4	21		227	210	17
	비율	100	50.3		8.1	17.3	12.9	3.9	2.6	0.9	4.6		49.7	46	3.7
2012년	계	87	43		3	17	18	2	1		2		44	42	2
	비율	100	49.4		3.4	19.5	20.6	2.2	1.1		2.2		50.6	48.2	2.2
2013년	계	100	40		1	14	8	4	3	3	7		60	57	3
	비율	100	40		1	14	8	4	3	3	7		60	57	3
2014년	계	94	50		3	19	13	8	1		6		44	38	6
	비율	100	53.2		3.1	20.2	13.8	8.5	1		6.3		46.8	40.4	6.3
2015년	계	84	51		16	17	9	1	6		2		33	30	3
	비율	100	60.7		19	20.2	10.7	1.1	7.1		2.3		39.3	35.7	3.5
2016년	계	92	46		14	12	11	3	1	1	4		46	43	3
	비율	100	50		15.3	13.1	11.9	3.3	1	1	4.4		50	46.8	3.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 처리 비율 각 50% 유사,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 34%, 자유형 16%, 재산형 26%, 무죄 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의 처리 비율 계속 변동,
공판 사건 중 자유형 증가, 재산형 감소 추세
- 2016년 공판 사건 중 자유형 15%, 집행유예 13%, 재산형 12%, 선고유예 3%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 중 선고유예 및 재산형 증가, 자유형, 집행유예, 무죄 감소

7. 2016년 형사사건 죄명별·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계	92	46	0	14	12	11	3	1	1	4	0	46	43	3
일반범죄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1	1	1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대상)	4	4		2					2				
	기타	3	2				1	1				1	1	
주요범죄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10	10	4	4		1			1				
	문서인장죄	3	3	2		1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의죄													
	사기공갈죄	3	3	2						1				
	횡령배임죄	8	5	2	1	2						3	3	
	중속에관한죄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10	2			1			1			8	7	1
	도교법위반	2	1			1						1	1	
	도교법위반(음주)	29	3		1	1		1				26	26	
	특가법위반(도주)													
상범죄	형법위반	3	2	1		1						1		1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2	2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1										1	1	
폭력범죄	상해폭행의죄	3	2		1		1					1	1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3	3		2	1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7	3			1	2					4	3	1	

○ 분석

- 교통범죄 45%, 주요형법범 26%, 균형법범 9%,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 6% 차지
- 균형법범의 경우 군인 대상 성범죄 50% 차지
- 교통범죄의 경우 약식 사건 85%
- 뇌물범죄의 경우 자유형 및 집행유예 각 40%, 선고유예 10% 차지
- 군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50%, 이송 50% 차지

8. 2016년 형사사건 신분별·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계	92	46	0	14	12	11	3	1	1	4	0	46	43	3
장교	장성	3	3		1	1				1				
	영관	33	18		9	3	4	1	1			15	15	
	위관	13	7		1	2	2			1	1	6	3	3
준·부사관	14	3			2	1						11	11	
병	12	9		1	1	3	2			2		3	3	
군무원	16	5		1	3	1						11	11	
민간인	1	1		1										

○ 분석

- 장교 공판 사건의 경우 자유형 39%, 집행유예 및 재산형 각 21%, 무죄 4% 차지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67%, 재산형 33% 차지
- 병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33%, 선고유예 22%, 자유형 및 집행유예 각 11% 차지
- 군무원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60%, 자유형 및 재산형 각 20% 차지
- 민간인 공판 사건의 경우 자유형 100%

9. 2016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현황

구 분	사건처리 일수										
	계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계	46	6	0	13	5	10	4	2	4	0	2
구 속	10	1		4	1	4					
불구속	36	5		9	4	6	4	2	4		2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22%, 불구속 사건 78% 차지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50%, 121일 이상 210일 이내 50% 차지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39%, 121일 이상 210일 이내 39%, 211일 이상 22% 처리

10. 2016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 분		총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접 수	계	46	28	3	9	5	1
	이월	18	11	2	3	2	
	금년	28	17	1	6	3	1
확 정	소계	11	5	1	4	1	
	유죄	9	3	1	4	1	
	무죄	1	1				
	면소						
	공소기각판결	1	1				
	공소기각결정						
상 소	소계	31	21	2	3	4	1
	쌍방향소		13	1		2	1
	피고인항소		5	1	3	2	
	군검사항소						
	즉시항고						
	비약상고						
이송		4	2		2		

○ 분석

- 공판 사건 재판결과 이월 사건 39%, 당해 사건 61%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24%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82%
- 유죄 확정 중 장교 33%, 준·부사관 11%, 병 45%, 군무원 11% 차지

11. 2016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처리 현황

구 분	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계	14			1	2	10	1
비율	100			7.1	14.3	71.5	7.1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처리 현황

구 분		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	합계	37			4	11	21	1
	비율	100			10.8	29.7	56.8	2.7
2012년	계	3				2	1	
	비율	100				66.7	33.3	
2013년	계	1					1	
	비율	100					100	
2014년	계	3			1	2		
	비율	100			33.3	66.7		
2015년	계	16			2	5	9	
	비율	100			12.5	31.3	56.2	
2016년	계	14			1	2	10	1
	비율	100			7.1	14.3	71.5	7.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40%, 1년 이상 3년 미만 57%, 1년 미만 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3년 이상 감소, 3년 미만 증가 추세
- 2016년 3년 이상 22%, 1년 이상 3년 미만 71%, 1년 미만 7% 차지

12. 2016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민간변호사	군법무관	
계	40	9		9	31
비율	100	22.5		22.5	77.5

※ 이송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민간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	합계	205	63	11	52	142
	비율	100	30.7	5.3	25.4	69.3
2012년	계	44	12	6	6	32
	비율	100	27.2	13.6	13.6	72.7
2013년	계	30	12	1	11	18
	비율	100	40	3.3	36.6	60
2014년	계	43	20		20	23
	비율	100	46.5		46.5	53.4
2015년	계	48	10	4	6	38
	비율	100	20.8	8.3	12.5	79.1
2016년	계	40	9		9	31
	비율	100	22.5		22.5	77.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69%,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17%
- 연도별 분석결과 2012년 이후 사선변호인 선임률 감소하다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감소 추세
- 2016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78%, 국선변호인의 군법무관 선정률 100%
- 2016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률 및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감소

13. 2016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현황

구분	계	장교						준·부서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계	8			1																									
균형법위반	4								1																				
형법위반	2			1																									
성폭법위반															1														
아청법위반	2								1								1												
기타																													

13-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현황

구분	계	장교						준·부서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5년 평균	합계	40	2	5	1	2	1	3	1	3	4					2	1	4	3		1		4	2	1	1				1	
	균형법위반	9	2							2								3	1												
	형법위반	14		3		1	1	1			1					1	1	1													1
	성폭법위반	14		2	1	1		2			3					1		1													
	아청법위반	3								1									1												
2012년	계	3		1					1	1																					
	균형법위반																														
	형법위반	1		1																											
	성폭법위반	2							1	1																					
	아청법위반																														
2013년	계	7		1	2		1	1			1																				
	균형법위반	1		1																											
	형법위반	3			2			1																							
	성폭법위반	3					1				1																				
	아청법위반																														
2014년	계	12			1	1					2				2			3								1				1	
	균형법위반	2																2													
	형법위반	5									1				1			1								1					1
	성폭법위반	5			1	1					1				1			1													
	아청법위반																														
2015년	계	9		1	1					1								2		1		2			1						
	균형법위반	2		1						1																					
	형법위반	2																1													
	성폭법위반	4			1													1							1						
	아청법위반	1																		1											
2016년	계	8			1					2					1	1	1					2									
	균형법위반	4								1						1	1					2									
	형법위반	2			1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2								1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균형법위반 23%, 아청법위반 8% 차지, 장교 35%, 병 33%, 준·부서관 25%, 군무원 7% 차지, 재산형 33%, 집행유예 25%, 자유형 5%, 무죄 7%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균형법위반 및 아청법위반 증가 추세
병 사건 증가, 장교 및 군무원 사건 감소 추세
집행유예 증가, 재산형 감소 추세
- 2016년 균형법위반 50%, 아청법위반 25% 차지, 전년 대비 균형법위반 및 아청법위반 증가
- 2016년 병 62%, 준·부서관 25%, 장교 13% 차지, 전년 대비 준·부서관 증가, 장교 및 군무원 감소
- 2016년 집행유예 37%, 재산형 25%, 자유형 13% 차지, 전년 대비 자유형 및 재산형 증가, 집행유예 및 무죄 감소

14. 2016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구분	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계	1	1					
비율	100	100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구분		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	합계	6	1	4				1
	비율	100	16.7	66.6				16.7
2012년	계	3		3				
	비율	100		100				
2013년	계	1						1
	비율	100						100
2014년	계							
	비율							
2015년	계	1		1				
	비율	100		100				
2016년	계	1	1					
	비율	100	10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처리 중 집행유예 66%, 자유형 17%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집행유예 감소, 자유형 증가
- 2016년 민간인 재판 1건(군용물절도로 징역 2년 6월 선고)

15. 2016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계	항소	확정	이송
계	46	31	10	5
비율	100	67.3	21.7	11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	합계	230	124	83	23
	비율	100	53.9	36.1	10
2012년	계	43	21	20	2
	비율	100	48.8	46.6	4.6
2013년	계	40	18	15	7
	비율	100	45	37.5	17.5
2014년	계	50	17	27	6
	비율	100	34	54	12
2015년	계	51	37	11	3
	비율	100	72.5	21.6	5.9
2016년	계	46	31	10	5
	비율	100	67.3	21.7	1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항소 54%, 확정 36%, 이송 10%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및 이송 증가
- 2016년 항소 67%, 확정 22%, 이송 11%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이송 증가, 항소 감소, 확정 유사

16. 2016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계	31	14		17
비율	100	45.2		54.8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	합계	125	50	9	66
	비율	100	40	7.2	52.8
2012년	계	21	5	1	15
	비율	100	23.8	4.8	71.4
2013년	계	19	9	1	9
	비율	100	47.4	5.2	47.4
2014년	계	17	5	1	11
	비율	100	29.4	5.9	64.7
2015년	계	37	17	6	14
	비율	100	46	16.2	37.8
2016년	계	31	14		17
	비율	100	45.2		54.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93%, 군검사의 항소율 60%
- 연도별 분석결과 피고인의 항소율 증가, 군검사의 항소율 감소
- 2016년 피고인의 항소율 100%, 군검사의 항소율 55%
- 2016년 전년 대비 피고인의 항소율 증가, 군검사의 항소율 유사

17. 2016년 약식사건 처리 현황

구 분	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계	43	41	1	1
비율	100	95.4	2.3	2.3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처리 현황

구 분		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5년 평균	합계	227	210	15	2
	비율	100	92.5	6.6	0.9
2012년	계	47	45	1	1
	비율	100	95.7	2.1	2.1
2013년	계	63	60	3	
	비율	100	95.2	4.7	
2014년	계	37	31	6	
	비율	100	83.7	16.2	
2015년	계	37	33	4	
	비율	100	89.1	10.8	
2016년	계	43	41	1	1
	비율	100	95.4	2.3	2.3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93%, 공판절차 회부 7%
- 연도별 분석결과 약식명령 증가, 공판절차 회부 감소 추세
- 2016년 약식명령 95%, 공판절차 회부 2%, 전년 대비 약식명령 증가, 공판절차 회부 감소

18. 2016년 영장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28	23	5	82
체포영장	9	9		100
압수·수색영장	184	180	4	97.8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	구속영장	113	89	24	78.8
	체포영장	41	41		100
	압수·수색영장	637	613	24	96.2
2012년	구속영장	23	16	7	69.5
	체포영장	3	3		100
	압수·수색영장	99	93	6	94
2013년	구속영장	11	8	3	72.7
	체포영장	3	3		100
	압수·수색영장	119	114	5	95.7
2014년	구속영장	23	16	7	69.5
	체포영장	5	5		100
	압수·수색영장	97	89	8	92
2015년	구속영장	28	26	2	92.8
	체포영장	21	21		100
	압수·수색영장	138	137	1	99.2
2016년	구속영장	28	23	5	82
	체포영장	9	9		100
	압수·수색영장	184	180	4	97.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79%, 체포영장 100%, 압수·수색영장 96%
- 연도별 분석결과 영장청구 건수 계속 증가,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증가 추세
- 2016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82%, 압수·수색영장 98%, 전년 대비 발부율 감소

19. 2016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계	28	9	16	3	21	7
장 교	12	4	7	1	10	2
부사관	4		4		4	
병	6	4	1	1	3	3
군무원	6	1	4	1	4	2
기 타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	합 계	113	35	75	3	87	26
	장 교	60	11	48	1	50	10
	준·부사관	12	5	7		10	2
	병	23	17	5	1	15	8
	군무원	13	2	10	1	10	3
	민간인	5		5		2	3
2012년	계	23	6	17		16	7
	장 교	11	2	9		7	4
	준·부사관	3	1	2		2	1
	병	7	3	4		6	1
	군무원						
2013년	민간인	2		2		1	1
	계	11	4	7		8	3
	장 교	5		5		3	2
	준·부사관	2	2			2	
	병	2	2			1	1
2014년	군무원	2		2		2	
	민간인						
	계	23	9	14		16	7
	장 교	10	2	8		10	
	준·부사관	1		1			1
	병	6	6			3	3
2015년	군무원	3	1	2		2	1
	민간인	3		3		1	2
	계	28	7	21		26	2
	장 교	22	3	19		20	2
	준·부사관	2	2			2	
2016년	병	2	2			2	
	군무원	2		2		2	
	민간인						
	계	28	9	16	3	21	7
	장 교	12	4	7	1	10	2
2016년	준·부사관	4		4		4	
	병	6	4	1	1	3	3
	군무원	6	1	4	1	4	2
	민간인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장교 53%, 준·부사관 11%, 병 20%, 군무원 12%, 민간인 4% 차지, 발부율 장교 83%, 준·부사관 83%, 병 65%, 군무원 77%, 민간인 40%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청구율 준·부사관 증가, 군무원 증가 추세, 발부율 준·부사관 증가, 그 외 신분 감소 추세

20. 2016년 신청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6	1	5	16.7
구속적부심	3		3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11	6	5	54.5

※ 기타 :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등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현황

구 분	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	보석청구	44	22	22	50
	구속적부심	11	2	9	18.1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2	2		100
	기 타	29	15	14	51.7
2012년	보석청구	5	3	2	60
	구속적부심	1		1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1		1	0	
2013년	보석청구	7	3	4	42.9
	구속적부심	1		1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기 타	4	2	2	50	
2014년	보석청구	8	6	2	75
	구속적부심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기 타	5	1	4	20	
2015년	보석청구	18	9	9	50
	구속적부심	6	2	4	33.3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기 타	8	6	2	75	
2016년	보석청구	6	1	5	16.7
	구속적부심	3		3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11	6	5	54.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50%, 구속적부심 인용률 18%,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100%
- 연도별 분석결과 보석청구 허가율 감소, 구속적부심 2015년 2건 인용, 그 외 기각
- 2016년 보석청구 허가율 17%, 전년 대비 보석청구 허가율 대폭 감소

21. 2016년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68	35	12	7	13	1
원판결확인	68	35	12	7	13	1
원판결 확인율	100	51.5	17.6	10.3	19.1	1.5
감경	1/2미만					
	1/2이상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	총계	306	129	69	43	64	1
	원판결확인	306	129	69	43	64	1
	원판결 확인율	100	42.2	22.5	14.1	20.9	0.3
	감경	1/2미만					
		1/2이상					
2012년	총계	63	26	15	9	13	
	원판결확인	63	26	15	9	13	
	원판결 확인율	100	41.2	23.8	14.2	20.6	
	감경	1/2미만					
		1/2이상					
2013년	총계	66	23	21	11	11	
	원판결확인	66	23	21	11	11	
	원판결 확인율	100	34.8	31.8	16.6	16.6	
	감경	1/2미만					
		1/2이상					
2014년	총계	54	16	13	8	17	
	원판결확인	54	16	13	8	17	
	원판결 확인율	100	29.6	24	14.8	31.4	
	감경	1/2미만					
		1/2이상					
2015년	총계	55	29	8	8	10	
	원판결확인	55	29	8	8	10	
	원판결 확인율	100	52.7	14.5	14.5	18.1	
	감경	1/2미만					
		1/2이상					
2016년	총계	68	35	12	7	13	1
	원판결확인	68	35	12	7	13	1
	원판결 확인율	100	51.5	17.6	10.3	19.1	1.5
	감경	1/2미만					
		1/2이상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22. 2016년 무죄 선고 현황

사건번호	죄 명	무죄 선고 사유
2016고3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운전 및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최종 음주 시로부터 90분 이내에 이루어져 상승기에 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23. 2016년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 명	결 과
		- 해당사항 없음 -	



□ 육군 군사법원

1. 2016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계	2,506	1,155	1,351
비율	100	46.1	53.9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	합계	12,297	5,722	6,575
	비율	100	46.5	53.5
2012년	계	2,029	891	1,138
	비율	100	43.9	56.1
2013년	계	2,377	1,004	1,373
	비율	100	42.2	57.8
2014년	계	2,741	1,402	1,339
	비율	100	51.1	48.9
2015년	계	2,644	1,270	1,374
	비율	100	48	52
2016년	계	2,506	1,155	1,351
	비율	100	46.1	53.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46.5%, 약식 사건 53.5% 차지
- 15년 대비 접수사건 수 감소. 14년 이후 접수사건 감소세
- 2016년 접수 중 공판 사건 46.1%, 전년 대비 공판 사건 비율 감소

2. 2016년 형사사건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총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2,506		252		664		1,528		54		8	
총계	1,155	1,351	100	152	200	464	833	695	15	39	7	1
간행법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71		4		4		63				
	상관에관한죄	35		1		10		23	1			
	군용물관련죄	14	1	2		3	1	5	1		4	
	초병에관한죄	31	3		2	3	1	27			1	
	성범죄(군인 대상)	143		18		31		94				
	기타	27	6	2	2	5	1	19	3	1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2		1		1						
	문서인장죄	13	5	1		4		7	5	1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9	1	3		1		5	1			
	절도강도의죄	56	46	2	1	8	4	46	40			1
	사기공갈죄	105	83	1	1	12	7	90	75	2		
	횡령배임죄	8	15		1	2	2	5	12	1		
중속에관한죄	4	2	1		1	1	2	1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34	110	8	25	10	47	15	34	1	4	
	도교법위반	14	63	1	5	6	22	6	34	1	2	
	도교법위반(음주)	30	477	2	76	8	248	18	127	2	26	
	특가법위반(도주)	29	8	4	2	9	3	15	2	1	1	
성범죄	형법위반	106	1	13		17		76	1			
	성폭법위반	85	11	7		8	3	70	8			
	아청법위반	30	2	2		5		23	2			
	성매매특별법위반	2	7	1		1	4		3			
폭력범죄	상해폭행의죄	121	125	9	5	20	28	91	91	1	1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42	45			1	1	41	44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국가보안법위반	1						1					
기타	142	340	17	32	29	92	91	211	3	5	2	

○ 분석

- 2016년 접수 중 교통범죄 31%, 주요형법범 14%,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포함) 10%, 군기법위반 0.03%, 군형법범(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 13%, 폭력범죄 13%
- 전체 사건 중 뇌물범죄 0.07%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88%

3. 2016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2,506	252	664	1,528	54	8
비율	100	10.1	26.5	61	2.2	0.3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	합계	12,297	1,185	3,213	7,642	235	22
	비율	100	9.6	26.1	62.1	1.9	0.2
2012년	계	2,029	218	529	1,243	35	4
	비율	100	10.7	26.1	61.3	1.7	0.2
2013년	계	2,377	225	652	1,460	39	1
	비율	100	9.5	27.4	61.4	1.6	0
2014년	계	2,741	250	688	1,746	57	
	비율	100	9.1	25.1	63.7	2.1	
2015년	계	2,644	240	680	1,665	50	9
	비율	100	9.1	25.7	63	1.9	0.3
2016년	계	2,506	252	664	1,528	54	8
	비율	100	10.1	26.5	61	2.2	0.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장교 9.6%, 준·부사관 26.1%, 병 62.1%, 군무원 1.9%, 민간인 0.2%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14년 이후 장교사건 소폭 증가/병 사건 소폭 감소
- 2016년 접수 중 장교 **10%**, 준·부사관 26.5%, 병 61%, 군무원 2.2%, 민간인 0.3% 차지

4. 2016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1,155	100	200	833	15	7
비율	100	8.7	17.3	72.1	1.3	0.6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	합계	5,722	404	928	4,299	70	21
	비율	100	7.1	16.2	75.1	1.2	0.3
2012년	계	891	43	137	698	9	4
	비율	100	4.8	15.4	78.3	1	0.4
2013년	계	1,004	53	152	787	11	1
	비율	100	5.3	15.1	78.4	1.1	0.1
2014년	계	1,402	102	211	1,066	23	
	비율	100	7.3	15	76	1.6	
2015년	계	1,270	106	228	915	12	9
	비율	100	8.3	18	72	0.9	0.7
2016년	계	1,155	100	200	833	15	7
	비율	100	8.7	17.3	72.1	1.3	0.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75.1%, 장교 7.1%, 군무원 1.2%, 준·부사관 16.2%, 민간인 0.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14년 이후 시작된 간부사건 비율 증가 및 병사사건 비율 감소 둔화
- 2016년 접수 중 장교 8.7%, 준·부사관 17.3%, 병 72.1%, 군무원 1.3%, 민간인 0.6%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군무원 사건 증가, 장교, 준·부사관 및 병 사건 감소

5. 2016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2,506	1,155	100	200	833	15	7	1,351	152	464	695	39	1
비율	100	46.1	4	8	33.2	0.6	0.3	53.9	6.1	18.5	27.7	1.6	0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	합계	12,297	5,722	404	928	4,299	70	21	6,575	781	2,285	3,343	165	1
	비율	100	46.5	3.3	7.5	35	0.6	0.2	53.5	6.4	18.6	27.2	1.3	0
2012년	계	2,029	891	43	137	698	9	4	1,138	175	392	545	26	
	비율	100	43.9	2.1	6.8	34.4	0.4	0.2	56.1	8.6	19.3	26.9	1.3	
2013년	계	2,377	1,004	53	152	787	11	1	1,373	172	500	673	28	
	비율	100	42.2	2.2	6.4	33.1	0.5		57.8	7.2	21	28.3	1.2	
2014년	계	2,741	1,402	102	211	1,066	23		1,339	148	477	680	34	
	비율	100	51.1	3.7	7.7	38.9	0.8		48.9	5.4	17.4	24.8	1.2	
2015년	계	2,644	1,270	106	228	915	12	9	1,374	134	452	750	38	
	비율	100	48	4	8.6	34.6	0.5	0.3	52	5.1	17.1	28.4	1.4	
2016년	계	2,506	1,155	100	200	833	15	7	1,351	152	464	695	39	1
	비율	100	46.1	4	8	33.2	0.6	0.3	53.9	6.1	18.5	27.7	1.6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접수 비율과 유사
- 연도별 분석결과 2014년 이후 전체사건 수 감소추세
- 2016년 처리 중 병 60.9%, 준·부사관 14.1%, 민간인 0.3%, 장교 10.1%, 군무원 2.2%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병 공판/약식 사건 감소, 장교 약식 사건 증가, 준·부사관 공판 사건 감소

6. 2016년 형사사건 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계	2,021	819		76	295	263	37	34	13	101		1,202	1,168	34
비율	100	40.5		3.8	14.6	13	1.8	1.7	0.6	5		59.5	57.8	1.7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	합계	10,188	4,408		582	1,790	1,065	433	100	85	344	5	5,780	5,627	153
	비율	100	43.3		5.7	17.6	10.5	4.3	1	0.8	3.4	0	56.7	55.2	1.5
2012년	계	1,724	731		115	343	130	87	4	17	34	1	993	967	26
	비율	100	42.4		6.7	19.9	7.5	5	0.2	1	2	0.1	57.6	56.1	1.5
2013년	계	1,986	794		148	305	172	83	11	19	49	4	1,192	1,162	30
	비율	100	40		7.5	15.4	8.7	4.2	0.6	1	2.5	0.2	60	58.5	1.5
2014년	계	2,265	1,086		143	474	227	127	23	22	69		1,179	1,144	35
	비율	100	47.9		6.3	20.9	10	5.6	1	1	3		52.1	50.5	1.5
2015년	계	2,192	978		100	373	273	99	28	14	91		1,214	1,186	28
	비율	100	44.6		4.6	17	12.5	4.5	1.3	0.6	4.2		55.4	54.1	1.3
2016년	계	2,021	819		76	295	263	37	34	13	101		1,202	1,168	34
	비율	100	40.5		3.8	14.6	13	1.8	1.7	0.6	5		59.5	57.8	1.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 처리 비율 4:6 정도로 유사,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 17.6%, 재산형 10.5%, 자유형 5.7%, 무죄 1%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의 처리 비율 및 처분 유형 비율 유사
- 2016년 공판 사건 중 자유형 3.8%, 집행유예 14.6%, 재산형 13%, 선고유예 1.8%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 중 재산형, 무죄 소폭 증가, 선고유예, 자유형, 집행유예 감소

7. 2016년 형사사건 죄명별·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계	2021	819		76	295	263	37	34	13	101		1,202	1,168	34
군형법범법	간접이적죄													
	군무이탈죄	60	60	15	34		11							
	상관에관한죄	30	30	2	19		5	1		3				
	군용물관련죄	13	12	2	6		1	1		2		1	1	
	초병에관한죄	25	23	1	16	2	2			2		2	2	
	성범죄(군인대상)	110	110	9	74		10	3	1	13				
	기타	23	17	1	10	3		1		2		6	6	
주요형법범법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11	7		3	2	1					4	4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4	3	1		1		1						
	절도강도의죄	71	36	1	17	9	1	2		6				
	사기횡령배임죄	157	69	6	17	34	1					88	86	2
중속에관한죄	3	1							1		2	2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128	26	5	2	12	1		3	2		102	100	2
	도교법위반	528	28		3	16		5		4		500	495	5
	특가법위반(도주)	31	24	3	2	17				2		7	7	
성범죄	형법위반	76	75	6	22	23	1	8		15		1	1	
	성폭법위반	65	57	8	15	24		3		7				
	아청법위반	21	20	4	5	6	1	2		2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4										4	4	
폭력범죄	상해폭행의죄	196	87	4	25	38	1	1	7	11		109	103	6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74	33	3	7	15				8		41	40	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1										
국가보안법위반	1	1							1					
기타	389	99	5	17	61	1	5	1	9		290	275	15	

○ 분석

- 교통범죄 34%, 주요형법범법 12.2%, 군형법범법 12.9%,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 8.2% 차지
- 군형법범법의 경우 군인 대상 성범죄 42.1% 차지
- 교통범죄의 경우 약식 사건 88.6%
- 군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67.3% 차지

8. 2016년 형사사건 신분별·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계	1,983	800		74	285	262	36	33	11	99		1,183	1,149	34
장 교	장성													
	영관	44	13		2	5	4	1	1			31	31	
	위관	143	42		4	10	20	3	2	1		101	98	3
준·부사관	556	140		13	48	58	7	8	2	4		416	410	6
병	1,189	588		54	214	177	25	18	6	94		601	576	25
군무원	45	12			5	3		3	1			33	33	
민간인	6	5		1	3			1				1	1	

○ 분석

- 장교 공판 사건의 경우 자유형 10.9%, 집행유예 27.2%, 재산형 43.6%, 무죄 5.4% 차지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34.2%, 재산형 41.4% 차지
- 병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33%, 선고유예 22%, 자유형 및 집행유예 각 11% 차지
- 군무원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41.6%, 재산형 25% 차지
- 민간인 공판 사건의 경우 자유형 20%, 집행유예 60% 차지

9. 2016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현황

구 분	사건처리 일수										
	계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계	894	456	184	127	71	27	14	9	4	2	
구 속	218	117	43	40	9	7	2				
불구속	676	339	141	87	62	20	12	9	4	2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24.4%, 불구속 사건 75.6%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91.7%, 121일 이상 210일 이내 8.3% 차지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83.9%, 121일 이상 210일 이내 13.9%, 211일 이상 2.2% 처리

10. 2016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 분		총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접 수	계	2,960	297	761	1,829	63	10
	이월	454	45	97	301	9	2
	금년	2,506	252	664	1,528	54	8
확 정	소계	1,946	178	566	1,156	42	4
	유죄	1,914	177	560	1,134	39	4
	무죄	16		3	12	1	
	면소						
	공소기각판결	7		3	2	2	
	공소기각결정	9	1		8		
상 소	소계	331	49	76	191	11	4
	쌍방향소	94	17	20	52	3	2
	피고인항소	150	15	33	95	6	1
	군검사항소	87	17	23	44	2	1
	즉시항고						
	비약상고						
이송		157	4	10	142	1	

○ 분석

- 공판 사건 재판결과 이월 사건 15.3%, 당해 사건 74.7%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65.7%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98.3%
- 유죄 확정 중 장교 9%, 준·부사관 29%, 병 59%, 군무원 2% 차지

11. 2016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처리 현황

구 분	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계	74			5	15	32	22
비율	100			6.8	20.3	43.2	29.7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처리 현황

구 분		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	합계	906			46	106	269	485
	비율	100			5.1	11.7	29.7	53.5
2012년	계	450			12	53	42	343
	비율	100			2.7	11.8	9.3	76.2
2013년	계	149			15	17	80	37
	비율	100			10.1	11.4	53.7	24.8
2014년	계	135			7	12	72	44
	비율	100			5.2	8.9	53.3	32.6
2015년	계	98			7	9	43	39
	비율	100			7.1	9.2	43.9	39.8
2016년	계	74			5	15	32	22
	비율	100			6.8	20.3	43.2	29.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16.8%, 1년 이상 3년 미만 29.7%, 1년 미만 53.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14년 이후 지속된 단기자유형 감소 및 집행유예 증가 경향 유지
- 2016년 3년 이상 27.1%, 1년 이상 3년 미만 43.2%, 1년 미만 29.7%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양형 엄정화 경향

12. 2016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민간변호사	군법무관	
계	678	530	73	457	148
비율	100	78.2	10.8	67.4	21.8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민간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	합계	3,961	3,258	445	2,813	703
	비율	100	82.3	11.2	71	17.7
2012년	계	689	591	98	493	98
	비율	100	85.8	14.2	71.6	14.2
2013년	계	739	637	92	545	102
	비율	100	86.2	12.4	73.7	13.8
2014년	계	984	798	95	703	186
	비율	100	81.1	9.7	71.4	18.9
2015년	계	871	702	87	615	169
	비율	100	80.6	10	70.6	19.4
2016년	계	678	530	73	457	148
	비율	100	78.2	10.8	67.4	21.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17.7%,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11.2%
- 연도별 분석결과 2013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소폭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 추세,
- 2016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21.8%, 국선변호인의 군법무관 선정률 67.4%
- 2016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및 민간 국선변호인 소폭 증가

14. 2016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구분	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계	5	1	3			1	
비율	100	20	60			20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구분		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	합계	14	2	10	1		1	
	비율	100	14.2	71.4	7.1		7.1	
2012년	계	2	1	1				
	비율	100	50	50				
2013년	계							
	비율							
2014년	계							
	비율							
2015년	계	7		6	1			
	비율	100		85.7	14.2			
2016년	계	5	1	3			1	
	비율	100	20	60			2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처리 중 집행유예 71.4%, 자유형 14.2% 차지
- 2016년 민간인 재판 5건(자유형 1, 집행유예 3, 무죄 1)

15. 2016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계	항소	확정	이송
계	800	323	378	99
비율	100	40.4	47.3	12.4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	합계	4,446	1,571	2,533	342
	비율	100	35.3	57	7.7
2012년	계	741	233	474	34
	비율	100	31.4	64	4.6
2013년	계	804	264	491	49
	비율	100	32.8	61.1	6.1
2014년	계	1,098	416	613	69
	비율	100	37.9	55.8	6.3
2015년	계	1,003	335	577	91
	비율	100	33.4	57.5	9.1
2016년	계	800	323	378	99
	비율	100	40.4	47.3	12.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항소 35.3%, 확정 57%, 이송 7.7%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및 이송 증가 추세
- 2016년 항소 40.4%, 확정 47.3%, 이송 12.4%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항소 및 이송 비율 증가, 확정 감소

16. 2016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계	331	150	87	94
비율	100	45.3	26.3	28.4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	합계	1,400	729	294	377
	비율	100	52.1	21	26.9
2012년	계	225	133	38	54
	비율	100	59.1	16.9	24
2013년	계	246	137	48	61
	비율	100	55.7	19.5	24.8
2014년	계	355	177	75	103
	비율	100	49.9	21.1	29
2015년	계	243	132	46	65
	비율	100	54.3	18.9	26.7
2016년	계	331	150	87	94
	비율	100	45.3	26.3	28.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79%, 군검사의 항소율 47.9%
- 연도별 분석결과 전체 항소율 증가 추세(2015년 일시 감소), 군검사 항소율 증가
- 2016년 피고인의 항소율 73.7%, 군검사의 항소율 54.7%
- 2016년 전년 대비 군검사 항소율 증가, 피고인 항소율 감소

17. 2016년 약식사건 처리 현황

구 분	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계	1,358	1,154	170	34
비율	100	85	12.5	2.5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처리 현황

구 분		계	약식명령	정식재판 실시	이송 등
5년 평균	합계	6,487	5,613	721	153
	비율	100	86.5	11.1	2.4
2012년	계	1,069	967	76	26
	비율	100	90.5	7.1	2.4
2013년	계	1,308	1,162	116	30
	비율	100	88.8	8.9	2.3
2014년	계	1,343	1,144	164	35
	비율	100	85.2	12.2	2.6
2015년	계	1,409	1,186	195	28
	비율	100	84.2	13.8	2
2016년	계	1,358	1,154	170	34
	비율	100	85	12.5	2.5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86.5%, 정식재판 실시 11.1%
- 연도별 분석결과 약식사건 증가추세
2016년 증가추세 둔화(전체 사건수 중 비율은 증가추세 유지)
- 2016년 약식명령 85%, 공판절차 회부 12.5%
전년 대비 정식재판 실시비율 소폭 감소

18. 2016년 영장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375	297	78	79.2
체포영장	64	57	7	89.1
압수·수색영장	432	397	35	91.9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	구속영장	3,355	2,757	598	82.2
	체포영장	743	667	76	89.8
	압수·수색영장	2,885	2,753	223	95.4
2012년	구속영장	732	613	119	83.7
	체포영장	226	207	19	91.6
	압수·수색영장	454	493	52	108.6
2013년	구속영장	807	679	128	84.1
	체포영장	191	166	25	86.9
	압수·수색영장	798	747	51	93.6
2014년	구속영장	926	756	170	81.6
	체포영장	153	138	15	90.2
	압수·수색영장	632	586	46	92.7
2015년	구속영장	515	412	103	80
	체포영장	109	99	10	90.8
	압수·수색영장	569	530	39	93.1
2016년	구속영장	375	297	78	79.2
	체포영장	64	57	7	89.1
	압수·수색영장	432	397	35	91.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79%, 체포영장 89%, 압수·수색영장 92%
- 연도별 분석결과 구속영장청구 건수 14년 이후 감소 추세
영장 발부율 압수·수색영장, 구속/체포영장(13년 이후) 감소 추세
- 2016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79.2%, 압수·수색영장 91.9%, 전년 대비 발부율 감소

19. 2016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계	388	315	37	36	297	78
장 교	38	32	3	3	31	6
부사관	61	49	9	3	43	16
병	287	234	24	29	221	56
군무원	2		1	1	2	
기 타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	합 계	3383	2872	337	174	2760	599
	장 교	148	122	22	4	116	31
	준·부사관	501	444	41	16	396	100
	병	2710	2292	267	151	2231	461
	군무원	16	8	5	3	12	4
	민간인	8	6	2		5	3
2012년	계	732	645	59	28	613	119
	장 교	18	15	3		15	3
	준·부사관	115	105	4	6	92	23
	병	598	524	52	22	505	93
	군무원	1	1			1	
	민간인						
2013년	계	808	678	80	50	679	128
	장 교	22	21	1		20	2
	준·부사관	112	101	10	1	89	22
	병	666	550	68	48	563	103
	군무원	5	4		1	4	1
	민간인	3	2	1		3	
2014년	계	933	790	118	25	759	171
	장 교	40	25	14	1	32	8
	준·부사관	137	124	12	1	116	20
	병	750	637	91	22	608	140
	군무원	4	2	1	1	2	2
	민간인	2	2			1	1
2015년	계	522	444	43	35	412	103
	장 교	30	29	1		18	12
	준·부사관	76	65	6	5	56	19
	병	409	347	32	30	334	69
	군무원	4	1	3		3	1
	민간인	3	2	1		1	2
2016년	계	388	315	37	36	297	78
	장 교	38	32	3	3	31	6
	준·부사관	61	49	9	3	43	16
	병	287	234	24	29	221	56
	군무원	2		1	1	2	
	민간인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장교 4.4%, 준·부사관 14.8%, 병 80.1% 차지,
발부율 장교 4.2%, 준·부사관 14.3%, 병 80.8%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구속영장 발부율 지속 감소, 민간법원보다 구속영장 엄격 심사

20. 2016년 신청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21	12	9	57.1
구속적부심	35	6	28	17.1
구속집행정지	2	1	1	50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4	1		25
기 타	44	26	12	59.1

※ 기타 :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등

※ 청구= 인용+기각-기타(이송 등)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현황

구 분	구 분	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	보석청구	158	76	81	48.1
	구속적부심	179	28	146	15.6
	구속집행정지	6	4	2	66.7
	구속취소	4	4		100
	형사보상청구	7	3		42.9
	기 타	150	75	51	50
2012년	보석청구	21	10	11	47.6
	구속적부심	18	2	16	11.1
	구속집행정지	1	1		100
	구속취소	2	2		100
	형사보상청구	1			
	기 타	17	7	8	41.2
2013년	보석청구	23	12	11	52.2
	구속적부심	32	3	28	9.4
	구속집행정지	1	1		100
	구속취소	1	1		100
	형사보상청구	2	2		100
	기 타	10	7	3	70
2014년	보석청구	52	30	22	57.7
	구속적부심	56	9	44	16.1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기 타	41	21	8	51.2
2015년	보석청구	41	12	28	29.3
	구속적부심	38	8	30	21.1
	구속집행정지	2	1	1	50
	구속취소	1	1		100
	형사보상청구				
	기 타	38	14	20	36.8
2016년	보석청구	21	12	9	57.1
	구속적부심	35	6	28	17.1
	구속집행정지	2	1	1	50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4	1		25
	기 타	44	26	12	59.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48.1%, 구속적부심 인용률 15.6%, 형사보상청구 기각 0건
- 연도별 분석결과 보석청구 및 구속적부심 2014년까지 증가 후 감소 추세
- 2016년 보석청구 허가율 57.1%, 전년 대비 보석청구 허가율 증가

21. 2016년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115	8	37	67	3	
원판결확인	115	8	37	67	3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	총계	746	82	249	402	13
	원판결확인	737	81	246	397	13
	원판결 확인율	98.8	98.8	98.8	98.8	100
	감경					
2012년	총계	131	16	49	63	3
	원판결확인	125	16	46	60	3
	원판결 확인율	95.4	100	93.9	95.2	100
	감경					
2013년	총계	149	19	49	80	1
	원판결확인	147	18	49	79	1
	원판결 확인율	98.7	94.7	100	98.8	100
	감경					
2014년	총계	157	15	51	89	2
	원판결확인	156	15	51	88	2
	원판결 확인율	99.4	100	100	98.9	100
	감경					
2015년	총계	194	24	63	103	4
	원판결확인	194	24	63	103	4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2016년	총계	115	8	37	67	3
	원판결확인	115	8	37	67	3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 분석

- 2015~2016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22. 2016년 무죄 선고 현황

구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34	4	8	18	3	1
군형법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1			1		
	군용물관련죄	1					1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대상)	3		2	1		
	기타	1			1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1			1		
	절도강도의죄	2			2		
	사기횡령배임죄						
	풍속에관한죄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1	1				
	도교법위반	5		2	1	2	
	특가법위반(도주)						
성범죄	형법위반	8	1	2	5		
	성폭법위반	3			3		
	아청법위반	2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폭력범죄	상해폭행의죄	1		1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5	1	1	2	1	

23. 2016년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2016-1	일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청구기각
2016-2	일병(상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00원
2016-1	상병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100,000원
2016-1	중사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50,000원
2016-1	병장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200,000원
2016-1	병장(상근)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200,000원
2016-1	상병(상근)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100,000원
2016-2	일병	점유이탈물횡령	벌금 50,000원
2016-1	일병(상근)	재물손괴	벌금 10,000원



□ 해군 군사법원

1. 2016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계	474	171	303
비율	100	36.1	63.9

1-1. 최근 3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3년 평균	합계	423	155	268
	비율	100	36.6	63.4
2014년	계	404	157	247
	비율	100	38.9	61.1
2015년	계	391	139	252
	비율	100	35.5	64.5
2016년	계	474	171	303
	비율	100	36.1	63.9

○ 분석

- 최근 3년 평균 공판 사건 37%, 약식 사건 6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전체 형사사건 접수 증가 추세
- 2016년 접수 중 공판 사건 36%, 전년 대비 공판 사건 비율 증가

2. 2016년 형사사건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총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474		49		245		163		17			
총계	171	303	15	34	68	177	82	81	6	11		
균형법범	군무이탈죄	11	2	1		4		5	2	1		
	상관예관한죄	5				3		1		1		
	군용물관련죄	1						1				
	초병예관한죄	7						7				
	성범죄(군인 대상)	5		1		1		3				
	기타	12	11	1	2	3	3	8	6			
주요형법범	뇌물예관한죄											
	문서인장죄											
	풍속예관한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2		1		1						
	주요형법범기타	11	14	2	1	4	8	5	5			
재산범죄	절도강도죄	4	2	1		1	1	2	1			
	사기공갈죄	7	3			6		1	3			
	횡령배임죄	1	1				1			1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7	27	1	6	3	13	3	6		2	
	도교법위반	2	11		2	1	8	1	1			
	도교법위반(음주)	8	162		22	5	116	3	15		9	
	특가법위반(도주)	1	2			1	2					
성범죄	형법위반	23	1	2		7		14	1			
	성폭법위반	16	1	3		9		3	1	1		
	아청법위반	2				2						
폭력범죄	형법위반	29	32	2	1	7	7	19	24	1		
	폭처법위반	7	9			5	1	2	8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10	25			5	17	4	8	1			

○ 분석

- 2016년 접수 중 교통범죄 46%, 폭력범죄 16%, 균형법범(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 10%,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포함) 10%, 주요형법범 6%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92%

3. 2016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474	49	245	163	17	0
비율	100	10.3	51.7	34.4	3.6	0

3-1. 최근 3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3년 평균	합계	423	43	198	168	13	1
	비율	100	10.2	46.8	40	3	0.3
2014년	계	404	46	168	180	10	
	비율	100	11.4	41.6	44.6	2.4	
2015년	계	391	34	180	162	14	1
	비율	100	8.7	46	41.4	3.6	0.3
2016년	계	474	49	245	163	17	
	비율	100	10.3	51.7	34.4	3.6	

○ 분석

- 최근 3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준·부사관 47%, 병 40%, 장교 10%, 군무원 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준·부사관 증가, 병 사건 감소 추세
- 2016년 접수 중 준·부사관 52%, 병 34%, 장교 10%, 군무원 4%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장교 및 준·부사관 사건 증가, 병 사건 감소

4. 2016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171	15	68	82	6	
비율	100	8.8	39.8	48	3.4	

4-1. 최근 3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3년 평균	합계	156	15	51	86	3	1
	비율	100	9.6	32.8	55	1.9	0.7
2014년	계	157	20	45	91	1	
	비율	100	12.7	28.7	58	0.6	
2015년	계	139	10	41	85	2	1
	비율	100	7.3	29.5	61.1	1.4	0.7
2016년	계	171	15	68	82	6	
	비율	100	8.8	39.8	48	3.4	

○ 분석

- 최근 3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55%, 준·부사관 33%, 장교 10%, 군무원 2%, 민간인 1%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병 사건 감소, 준·부사관 및 군무원 증가 추세
- 2016년 접수 중 병 48%, 준·부사관 40%, 장교 9%, 군무원 3%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사건 증가, 병 사건 감소

5. 2016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현황

구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472	168	14	64	84	6		304	34	178	79	13	
비율	100	35.6	3	13.5	17.8	1.3		64.4	7.2	37.7	16.7	2.8	

5-1. 최근 3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현황

구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3년평균	합계	457	230	110	27	55	32	6	227	88	56	31	52	
	비율	100	50.3	24	5.9	12	7	1.3	49.6	19.2	12.2	6.7	11.3	
2014년	계	397	159	16	44	97	2		238	25	118	87	8	
	비율	100	40.1	4.1	11.1	24.4	0.5		59.9	6.3	29.7	21.9	2	
2015년	계	391	136	12	44	77	2	1	255	25	139	80	11	
	비율	100	34.8	3.1	11.2	19.7	0.5	0.3	65.2	6.4	35.5	20.5	2.8	
2016년	계	472	168	14	64	84	6		304	34	178	79	13	
	비율	100	35.6	3	13.5	17.8	1.3		64.4	7.2	37.7	16.7	2.8	

○ 분석

- 연도별 분석결과 병 사건 공판 및 약식 모두 감소, 준·부사관 약식 사건 증가 추세
- 2016년 처리 중 준·부사관 51%, 병 35%, 장교 21%, 군무원 4%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사건 증가, 병 사건 감소

6. 2016년 형사사건 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계	472	168		18	23	73	28	9	6	11		304	298	6
비율	100	35.6		3.8	4.9	15.5	5.9	1.9	1.3	2.3		64.4	63.1	1.3

6-1. 최근 3년간 형사사건 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3년 평균	합계	420	154		12	38	53	31	7	3	10		266	262	4
	비율	100	37		2.9	9.1	12.7	7.4	1.7	0.8	2.4		63	62	1
2014년	계	397	159		10	46	48	37	4	3	11		238	236	2
	비율	100	40.1		2.5	11.6	12.1	9.3	1	0.8	2.8		59.9	59.4	0.5
2015년	계	391	136		9	46	37	27	9	1	7		255	252	3
	비율	100	34.8		2.3	11.8	9.5	6.9	2.3	0.2	1.8		65.2	64.5	0.7
2016년	계	472	168		18	23	73	28	9	6	11		304	298	6
	비율	100	35.6		3.8	4.9	15.5	5.9	1.9	1.3	2.3		64.4	63.1	1.3

○ 분석

- 최근 3년 평균 공판 사건 37%, 약식 사건 63% 처리,
공판 사건 중 재산형 34%, 집행유예 25%, 자유형 8%, 무죄 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의 처리 비율 계속 변동,
공판 사건 중 자유형, 재산형 증가, 집행유예, 선고유예 감소 추세
- 2016년 공판 사건 중 재산형 16%, 선고유예 6%, 집행유예 5%, 자유형 4%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 중 자유형, 선고유예, 재산형 증가, 집행유예, 무죄 감소

7. 2016년 형사사건 죄명별·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계	472	168		18	23	73	28	9	6	11		304	298	6
군형법범법	군무이탈죄	12	10		1	2	1	6				2	2	
	상관에관한죄	5	5			2		3						
	군용물관련죄	1	1		1									
	초병에관한죄	6	6			2		4						
	성범죄(군인대상)	5	5			3	1			1				
	기타	20	9			1	1	4			3		11	11
주요형법범법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풍속에관한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주요형법범기타	21	11		1		4	1	4	1		10	9	1
재산범죄	절도강도의죄	7	5		2	1		2				2	1	1
	사기공갈죄	11	8		6	1	1					3	3	
	횡령배임죄	2	1			1						1	1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36	7		2		3			2		29	29	
	도교법위반	13	1				1					12	12	
	도교법위반(음주)	172	8				7			1		164	164	
	특가법위반(도주)	4	2				2					2	2	
성범죄	형법위반	21	21		2	4	11	1	1		2			
	성폭법위반	17	16			2	11	1	2			1	1	
	아청법위반	4	4				3			1				
폭력범죄	형법위반	60	27			1	15	5	1	5		33	29	4
	폭처법위반	15	6		2	1	2			1		9	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40	14		1	2	9	1	1			26	26	

○ 분석

- 교통범죄 48%, 군형법범 10%,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 9%, 주요형법범 4% 차지
- 군형법범의 경우 군무이탈 24% 차지
- 교통범죄의 경우 약식 사건 92%
-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의 경우 재산형 60%, 자유형 14% 차지
- 군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60%, 재산형 20% 차지

8. 2016년 형사사건 신분별·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계	472	168		18	23	73	28	9	6	11		304	298	6
장 교	장성													
	영관	9	5		2			2		1		4	4	
	위관	39	9		1		2	4	1	1		30	30	
준·부사관	242	64		8	9	35	6	4		2		178	178	
병	163	84		9	9	34	18	2	4	8		79	73	6
군무원	19	6			3	2			1			13	13	
민간인														

○ 분석

- 장교 공판 사건의 경우 선고유예 29%, 무죄 21%, 집행유예 및 재산형 각 14%, 자유형 7% 차지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55%, 집행유예 14% 차지
- 병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40%, 선고유예 21%, 자유형 및 집행유예 각 11% 차지
- 군무원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50%, 재산형 33% 차지

9. 2016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현황

구 분	사건처리 일수										
	계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계	178	97	33	19	10	8	3	7			1
구 속	35	22	8	2	2	1					
불구속	143	75	25	17	8	7	3	7			1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20%, 불구속 사건 80% 차지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91%, 121일 이상 210일 이내 9% 차지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82%, 121일 이상 210일 이내 13%, 211일 이상 5% 처리

10. 2016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 분		총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접 수	계	188	17	72	93	6	
	이월	34	5	8	21		
	금년	154	12	67	72	6	
확 정	소계	112					
	유죄	106	5	35	62	4	
	무죄						
	면소						
	공소기각판결	4			3	1	
	공소기각결정	2	1		1		
상 소	소계	63					
	쌍방향소	22	4	14	3	1	
	피고인항소	27	4	15	8		
	군검사항소	14	2	5	7		
	즉시항고						
	비약상고						
이송		13	1	3	9		

○ 분석

- 공판 사건 재판결과 이월 사건 18%, 당해 사건 82%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60%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95%
- 유죄 확정 중 장교 5%, 준·부사관 33%, 병 58%, 군무원 4% 차지

11. 2016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처리 현황

구 분	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계	18				2	10	6
비율	100				15	55	30

11-1. 최근 3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처리 현황

구 분		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3년 평균	합계	12			1	1	6	4
	비율	100			8.5	8.5	50	33
2014년	계	11				1	7	3
	비율	100				10	63	27
2015년	계	9			1	4	1	3
	비율	100			11	45	11	33
2016년	계	18				2	10	6
	비율	100				15	55	30

○ 분석

- 최근 3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17%, 1년 이상 3년 미만 50%, 1년 미만 3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3년 이상 감소, 3년 미만 증가 추세
- 2016년 3년 이상 15%, 1년 이상 3년 미만 55%, 1년 미만 30% 차지

12. 2016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민간변호사	군법무관	
계	169	111	25	86	58
비율	100	65.7	14.8	50.9	34.3

※ 이송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2-1. 최근 3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민간변호사	군법무관	
3년 평균	합계	158	110	26	84	48
	비율	100	70	17	53	30
2014년	계	162	120	33	87	42
	비율	100	74	20	54	26
2015년	계	144	100	20	80	44
	비율	100	69	14	55	31
2016년	계	169	111	25	86	58
	비율	100	65.7	14.8	50.9	34.3

○ 분석

- 최근 3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30%,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24%
- 연도별 분석결과 사선변호인 선임률 증가 추세,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감소 추세
- 2016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34%, 국선변호인의 군법무관 선정률 77%
- 2016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률 및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증가

13. 2016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현황

구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계	52																												
군형법위반	5		1						1							1	1											1	
형법위반	25	1				1			3	2	1		1	1	1	2	11											2	
성폭법위반	18		1	2						8		1				1	2	1	1					1					
아청법위반	4									3																		1	
기타																													

13-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현황

구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2014년	계	33	1	3	1	1	2	1	4	1	1	2	1		7	3	2		3												
	군형법위반	12					1			1		1				7		1		1											
	형법위반	8					1	1			1		2					1	1									1			
	성폭법위반	13	1	3	1	1				3				1			2											1			
	아청법위반																														
	기타																														
2015년	계	34		2	1	1	2		1	3	5	1			2	8	3	3		2											
	군형법위반	10		1			1			1		1				4		1		1								1			
	형법위반	11					1			1		2				1	3	2	1												
	성폭법위반	11		1	1	1					2	2				1	1	1	1												
	아청법위반	2									1										1										
	기타																														
2016년	계	52	1	2	2		1		4	13	1	1		1	1	4	14	1	1		4				1						
	군형법위반	5		1						1						1	1				1										
	형법위반	25	1				1			3	2	1		1	1	1	2	11			2										
	성폭법위반	18		1	2						8		1				1	2	1	1					1						
	아청법위반	4									3											1									
	기타																														

○ 분석

- 연도별 분석결과
 - 아청법위반 증가, 군형법위반 감소 추세
 - 준·부사관 및 병 사건 증가 추세
 - 재산형 증가, 자유형 및 집행유예 감소 추세
- 2016년 군형법위반 10%, 아청법위반 8% 차지, 전년 대비 군형법위반 감소, 아청법위반 증가
- 2016년 병 48%, 준·부사관 38%, 장교 12% 차지, 전년 대비 준·부사관 및 병 증가
- 2016년 재산형 58%, 집행유예 19%, 무죄 6%, 자유형 4% 차지, 전년 대비 재산형 증가, 자유형 및 집행유예 감소

14. 2016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구분	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계	-						
비율	-						

14-1. 최근 3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구분		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3년 평균	합계	1		1				
	비율	100		100				
2014년	계	-						
	비율	-						
2015년	계	1		1				
	비율	100		100				
2016년	계	-						
	비율	-						

○ 분석

- 최근 3년 민간인 처리 1건(군용물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 2년)

15. 2016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계	항소	확정	이송
계	188	63	112	13
비율	100	33.5	59.6	6.9

15-1. 최근 3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계	항소	확정	이송
3년 평균	합계	172	46	115	11
	비율	100	26.7	66.9	6.4
2014년	계	174	33	130	11
	비율	100	19	74.7	6.3
2015년	계	153	41	104	8
	비율	100	26.8	68	5.2
2016년	계	188	63	112	13
	비율	100	33.5	59.6	6.9

○ 분석

- 최근 3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항소 27%, 확정 67%, 이송 6%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증가
- 2016년 항소 33%, 확정 60%, 이송 7%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항소 및 이송 증가

16. 2016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계	63	27	14	22
비율	100	42.9	22.2	34.9

16-1. 최근 3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3년 평균	합계	46	24	11	11
	비율	100	52	24	24
2014년	계	33	17	10	6
	비율	100	52	30	18
2015년	계	41	26	9	6
	비율	100	63	22	15
2016년	계	63	27	14	22
	비율	100	42.9	22.2	34.9

○ 분석

- 최근 3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76%, 군검사의 항소율 48%
- 연도별 분석결과 피고인의 항소율 감소, 군검사의 항소율 증가
- 2016년 피고인의 항소율 78%, 군검사의 항소율 57%
- 2016년 전년 대비 피고인의 항소율 유사, 군검사의 항소율 증가

17. 2016년 약식사건 처리 현황

구 분	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계	362	314	29	19
비율	100	86.75	8	5.25

17-1. 최근 3년간 약식사건 처리 현황

구 분		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3년 평균	합계	301	278	15	8
	비율	100	92.3	5	2.7
2014년	계	271	259	10	2
	비율	100	95	3.7	1.3
2015년	계	271	260	7	4
	비율	100	96	2.5	1.5
2016년	계	362	314	29	19
	비율	100	86.75	8	5.25

○ 분석

- 최근 3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92%, 공판절차 회부 5%
- 연도별 분석결과 약식명령 감소, 공판절차 회부 증가 추세
- 2016년 약식명령 87%, 공판절차 회부 8%, 전년 대비 약식명령 감소, 공판절차 회부 증가

18. 2016년 영장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46	38	8	83
체포영장	10	7	3	70
압수·수색영장	64	54	10	84

18-1. 최근 3년간 영장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2014년	구속영장	84	68	16	81
	체포영장	6	6		100
	압수·수색영장	58	53	5	90
2015년	구속영장	64	58	6	91
	체포영장	14	11	3	79
	압수·수색영장	63	63		100
2016년	구속영장	46	38	8	83
	체포영장	10	7	3	70
	압수·수색영장	64	54	10	84

○ 분석

- 연도별 분석결과 영장청구 건수 계속 감소,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감소 추세
- 2016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83%, 압수·수색영장 84%, 전년 대비 발부율 감소

19. 2016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계	46	38	8
장 교	4	3	1
부사관	13	10	3
병	26	22	4
군무원	3	3	
기 타			

19-1. 최근 3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3년 평균	합 계	65	55	10
	장 교	5	4	1
	준·부사관	21	18	3
	병	38	31	7
	군무원	1	1	
	민간인			
2014년	계	84	68	16
	장 교	7	7	
	준·부사관	23	20	3
	병	54	41	13
	군무원			
	민간인			
2015년	계	64	58	6
	장 교	4	2	2
	준·부사관	27	25	2
	병	33	31	2
	군무원			
	민간인			
2016년	계	46	38	8
	장 교	4	3	1
	준·부사관	13	10	3
	병	26	22	4
	군무원	3	3	
	민간인			

○ 분석

- 최근 3년 평균 청구율 장교 8%, 준·부사관 32%, 병 58%, 군무원 2% 차지, 발부율 장교 7%, 준·부사관 33%, 병 56%, 군무원 2%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청구율 준·부사관 감소, 군무원 증가 추세, 발부율 준·부사관 감소, 병 및 군무원 증가 추세

20. 2016년 신청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5	5		100
구속적부심	1		1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 기타 :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등

20-1. 최근 3년간 신청사건 처리 현황

구 분	구 분	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2014년	보석청구	3		3	0
	구속적부심	4	2	2	5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2015년	보석청구	2	1	1	50
	구속적부심	1		1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기 타				
2016년	보석청구	5	5		100
	구속적부심	1		1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 분석

- 연도별 분석결과 보석청가 허가율 증가, 구속적부심 2014년 2건 인용, 그 외 기각
- 2016년 보석청구 허가율 100%, 전년 대비 보석청구 허가율 증가

21. 2016년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390	38	221	118	13	
원판결확인	390	38	221	118	13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3년 평균	총계	337	34	176	114	32	
	원판결확인	335	34	175	113	32	
	원판결 확인율	99	100	99	99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4년	총계	321	35	148	127	11	
	원판결확인	318	35	148	124	11	
	원판결 확인율	99	100	100	97	100	
	감경	1/2미만	3		3		
		1/2이상					
2015년	총계	300	28	160	99	13	
	원판결확인	297	28	159	97	13	
	원판결 확인율	99	100	99	99	100	
	감경	1/2미만	2		2		
		1/2이상	0				
2016년	총계	390	38	221	118	13	
	원판결확인	390	38	221	118	13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분석

- 최근 3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99%

22. 2016년 무죄 선고 현황

구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9	3	4	2		
관련법 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대상)						
	기타						
주요 형법 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1	1				
	절도강도의죄						
	사기횡령배임죄						
	풍속에관한죄						
교통 법 죄	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특가법위반(도주)						
성 법 죄	형법위반	1	1				
	성폭법위반	2		1	1		
	아청법위반						
	성매매특별법위반						
폭 력 범 죄	상해폭행의죄	1		1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4	1	2	1		

23.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 명	결 과
		- 해당사항 없음 -	



□ 공군 군사법원

1. 2016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계	238	92	146
비율	100	39	61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	합계	823	385	438
	비율	100	47	53
2012년	계	130	81	49
	비율	100	62	38
2013년	계	138	68	70
	비율	100	49	51
2014년	계	151	69	82
	비율	100	46	54
2015년	계	166	75	91
	비율	100	45	55
2016년	계	238	92	146
	비율	100	39	6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47%, 약식 사건 5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전체 형사사건 접수 및 약식 사건 비율 증가 추세
- 2016년 접수 중 약식 사건 61%, 전년 대비 약식 사건 비율 증가

2. 2016년 형사사건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총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232		37		112		67		15		1	
총계	101	131	19	18	37	75	41	26	4	11	0	1
군형법 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10		1		2		7				
	상관에관한죄	3		2				1				
	군용물관련죄	1	1				1		1			
	초병에관한죄	2		1		1						
	성범죄(군인 대상)	26		2		14		9		1		
	기타	2						2				
주요형법 범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4		3		1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죄	2	4	1			1	1	3			
	사기공갈죄	1	1						1	1		
	횡령배임죄	3	1	1	1	1		1				
	풍속에관한죄											
기타	3	10			2	6	1	3			1	
교통 범죄	교통법위반	2	11		2	2	6			3		
	도교법위반		3		1		1		1			
	도교법위반(음주)	8	65	2	10	4	45	2	4		6	
	특가법위반(도주)	1				1						
성 범죄	형법위반	5	1	2		2		1	1			
	성폭법위반	7	8		1	1	4	6	3			
	아청법위반	5	1	1			1	4				
	성매매특별법위반											
폭 력 범죄	상해폭행의죄	11	13	3	1	3	5	5	6		1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3	5		2	3	2		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국가보안법위반	1						1					
기타		7				3		3		1		

※ 기타는 사관생도

○ 분석

- 2016년 접수 중 교통범죄 39%,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포함) 23%, 폭력범죄 14%, 주요형법범 13%, 군형법범(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 8%
- 전체 사건 중 뇌물범죄 0%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88%

3. 2016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계	232	37	112	67	15	1
비율	100	16	48	29	6	1

※ 기타는 사관생도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5년 평균	합계	802	135	366	253	44	4
	비율	100	17	45.6	32	5	0.4
2012년	계	126	32	62	31	1	
	비율	100	25	49	25	1	
2013년	계	135	21	54	47	12	1
	비율	100	15	40	35	9	1
2014년	계	146	16	70	51	7	2
	비율	100	11	48	35	5	1
2015년	계	163	29	68	57	9	
	비율	100	18	42	35	5	
2016년	계	232	37	112	67	15	1
	비율	100	16	48	29	6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준·부사관 45.6%, 병 32%, 장교 17%, 군무원 5%
- 연도별 분석결과 병 사건 증가 추세, 그 외 신분 계속 변동
- 2016년 접수 중 준·부사관 48%, 병 29%, 장교 16%, 군무원 6%
- 2016년도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사건 증가 추세

4. 2016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101	19	37	41	4	
비율	100	18.8	36.6	40.6	4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	합계	415	69	167	159	17	3
	비율	100	17	40	38	4	1
2012년	계	82	18	45	19		
	비율	100	23	54	23		
2013년	계	73	7	24	34	7	1
	비율	100	10	33	46	10	1
2014년	계	77	10	29	34	2	2
	비율	100	13	37	44	3	3
2015년	계	82	15	32	31	4	
	비율	100	18	39	38	5	
2016년	계	101	19	37	41	4	
	비율	100	19	37	40	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준·부사관 40%, 병 38%, 장교 17%, 군무원 4%, 민간인 1%
- 연도별 분석결과 병 사건 증가 추세, 그 외 신분 계속 변동
- 2016년 접수 중 병 40%, 준·부사관 37%, 장교 19%, 군무원 4% 차지
- 2016년도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사건 증가 추세

5. 2016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232	101	19	37	41	4		131	18	75	26	11	1
비율	100	43.6	8	16	17.6	2		56.4	8	32	11	5	0.4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5년 평균	합계	802	414	69	167	158	17	3	388	66	199	95	27	1
	비율	100	51.9	8.5	21	20	2	0.4	48.1	8	25	12	3	0.1
2012년	계	126	82	18	45	19			44	14	17	12	1	
	비율	100	64	14	35	15			36	12	13	10	1	
2013년	계	135	73	7	24	34	7	1	62	14	30	13	5	
	비율	100	54	5	18	25	5	1	46	10	22	10	4	
2014년	계	146	77	10	29	34	2	2	69	6	41	17	5	
	비율	100	53	7	20	24	1	1	47	4	28	12	3	
2015년	계	163	81	15	32	30	4		82	14	36	27	5	
	비율	100	49	9	20	18	2		51	9	22	17	3	
2016년	계	232	101	19	37	41	4		131	18	75	26	11	1
	비율	100	43.6	8	16	17.6	2		56.4	8	32	11	5	0.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준·부사관 46%, 병 32%, 장교 17%, 군무원 5%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및 약식 모두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
- 2016년 접수 중 준·부사관 48%, 병 29%, 장교 16%, 군무원 7%
- 2016년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신분별 사건 증가 추세

6. 2016년 형사사건 형기별 처리 현황

구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계	232	101	0	6	35	24	14	7	3	6	6	131	128	3
비율	100	44	0	3	15	10	6	3	1	3	3	56	55	1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형기별 처리 현황

구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평균	합계	796	408	0	20	111	150	65	23	11	18	10	388	385	3
	비율	100	51		3	14	19	8	3	1	2	1	49	48	1
2012년	계	127	83		5	14	39	13	6	4	1	1	44	44	
	비율	100	66		4	11	31	10	5	3	1	1	34	34	
2013년	계	135	73		3	14	27	19	4	2	2	2	62	62	
	비율	100	54		2	10	22	14	3	1	1	1	46	46	
2014년	계	139	70			28	27	8	3		4		69	69	
	비율	100	50			20	19	6	2		3		50	50	
2015년	계	163	81		6	20	33	11	3	2	5	1	82	82	
	비율	100	50		4	12	20	7	2	1	3	1	50	50	
2016년	계	232	101	0	6	35	24	14	7	3	6	6	131	128	3
	비율	100	44	0	3	15	10	6	3	1	3	3	56	55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51%, 약식 사건 49%로 처리 비율 유사,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 27%, 재산형 37%, 자유형 5%, 무죄 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의 처리 비율 계속 변동
- 2016년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 34%, 재산형 23%, 선고유예 13%, 자유형 6%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무죄는 증가, 재산형 감소

7. 2016년 형사사건 죄명별·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계	232	101	0	6	35	24	14	7	3	6	6	131	128	3	
구형법 범법	간첩이적죄	0	0									0			
	군무이탈죄	10	10		6		4					0			
	상관에관한죄	3	3		1		1				1	0			
	군용물관련죄	2	1	1								1	1		
	초병에관한죄	2	2				2					0			
	성범죄(군인대상)	26	26		1	16		4	1		1	3	0		
	기타	2	2				1	1				0			
주요형 범법	내란소요죄	0	0									0			
	뇌물에관한죄	0	0									0			
	문서인장죄	4	4		1	3						0			
	살인의죄	0	0									0			
	과실치사상죄	0	0									0			
	절도강도도의죄	6	2			1	1					4	4		
	사기공갈죄	2	1	1								1	1		
	횡령배임죄	4	3		1	2						1	1		
	기타	13	3			3						10	8	2	
교통 범죄	교통법위반	13	2			2						11	11		
	도교법위반	3	0									3	3		
	도교법위반(음주)	73	8			6		1		1		65	65		
	특가법위반(도주)	1	1			1						0			
성 범죄	형법위반	6	5	2	1	1		1				1	1		
	성폭법위반	15	7		3	2			1	1		8	7	1	
	아청법위반	6	5	1	2			1			1	1	1		
	성매매특별법위 반	0	0									0			
폭 력 범죄	상해폭행의죄	24	11		1	2	1	3	2	2		13	13		
	상해등치사	0	0									0			
	폭처법위반	8	3		3							5	5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1	0				
국가보안법위반	1	1							1		0				
기타	7	0									7	7			

○ 분석

- 교통범죄 39%, 군형법범 19%, 주요형법범 13%,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 12% 차지
- 군형법범의 경우 군인 대상 성범죄 58% 차지
- 교통범죄의 경우 약식 사건 88%
- 군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62%, 선고유예 15% 차지

8. 2016년 형사사건 신분별·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계	232	101	0	6	35	24	14	7	3	6	6	131	128	3
장교	장성	0	0									0		
	영관	12	8		1	3	2		1	1		4	4	
	위관	25	11			1	4	2	3		1	14	14	
준·부사관	112	37		1	16	10	4	2		1	3	75	73	2
병	67	41		2	14	8	8	1	2	5	1	26	26	
군무원	15	4		2	1						1	11	11	
기타	1	0										1		1

○ 분석

- 장교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32%, 집행유예 및 무죄 각 21%, 선고유예 11%, 자유형 5%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43%, 재산형 27%, 선고유예 11%, 무죄 5%
- 병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34%, 선고유예 및 재산형 각 20%, 자유형 5%
- 군무원 공판 사건의 경우 자유형 50%, 집행유예 25% 차지

9. 2016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현황

구 분	사건처리 일수										
	계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계	96	49	22	13	5	2	1	1	3		
구 속	17	11	2	2	1	1					
불구속	79	38	20	11	4	1	1	1	3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18%, 불구속 사건 82%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88%, 121일 이상 12% 차지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87%, 121일 이상 210일 이내 8%, 211일 이상 5% 처리

10. 2016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 분		총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접 수	계	93	20	31	37	5	0
	이월	15	4	5	4	2	
	금년	78	16	26	33	3	
확 정	소계	87	20	30	32	5	0
	유죄	78	16	28	29	5	
	무죄	6	3	2	1		
	면소	0					
	공소기각판결	3	1		2		
	공소기각결정	0					
상 소	소계	30	8	17	2	3	0
	쌍방향소	15	5	6	1	3	
	피고인항소	8	1	6	1		
	군검사항소	7	2	5			
	즉시항고	0					
	비약상고	0					
이송		6		1	5		

※ 2016년도에 선고된 현황임.

○ 분석

- 공판 사건 재판결과 이월 사건 16%, 당해 사건 84%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94%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84%
- 유죄 확정 중 장교 21%, 준·부사관 36%, 병 37%, 군무원 6% 차지

11. 2016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처리 현황

구 분	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계	6			1		3	2
비율	100			17		50	33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처리 현황

구 분		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	합계	27	0	0	2	3	13	9
	비율	100			8	11	48	33
2012년	계	5				2	1	2
	비율	100				40	20	40
2013년	계	3					1	2
	비율	100					33	67
2014년	계	7			1		6	
	비율	100			14		86	
2015년	계	6				1	2	3
	비율	100				17	33	50
2016년	계	6			1		3	2
	비율	100			17		50	3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19%, 1년 이상 3년 미만 48%, 1년 미만 3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계속 변동
- 2016년 3년 이상 17%, 1년 이상 3년 미만 50%, 1년 미만 33% 차지

12. 2016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민간변호사	군법무관	
계	108	53	11	42	55
비율	100	49	10	39	51

※ 이송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민간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	합계	420	269	69	200	151
	비율	100	64	16	48	36
2012년	계	80	60	13	47	20
	비율	100	75	16	59	25
2013년	계	74	56	15	41	18
	비율	100	76	20	56	24
2014년	계	76	47	10	37	29
	비율	100	62	13	49	38
2015년	계	82	53	20	33	29
	비율	100	64	24	40	36
2016년	계	108	53	11	42	55
	비율	100	49	10	39	5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36%,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16%
- 연도별 분석결과 2012년 이후 사선변호인 선임률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계속 변동
- 2016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51%, 국선변호인의 군법무관 선정률 39%
- 2016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률 증가,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감소

14. 2016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구분	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계	0						
비율	100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구분		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	합계	3	0	1	2	0	0	0
	비율	100	0	33	67	0	0	0
2012년	계	0						
	비율	100						
2013년	계	1			1			
	비율	100			100			
2014년	계	2		1	1			
	비율	100		50	50			
2015년	계	0						
	비율	100						
2016년	계	0						
	비율	10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처리 중 집행유예 33%, 자유형 0%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사건이 거의 없음
- 2016년 민간인 재판 0건

15. 2016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계	항소	확정	이송
계	100	39	54	7
비율	100	39	54	7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	합계	416	123	273	20
	비율	100	29	66	5
2012년	계	83	22	60	1
	비율	100	27	72	1
2013년	계	74	11	60	3
	비율	100	15	81	4
2014년	계	77	24	49	4
	비율	100	31	64	5
2015년	계	82	27	50	5
	비율	100	33	61	6
2016년	계	100	39	54	7
	비율	100	39	54	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항소 29%, 확정 66%, 이송 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및 이송 계속 변동
- 2016년 항소 39%, 확정 54%, 이송 7% 차지
- 2016년 전년 대비 항소 및 확정, 이송 각 증가

16. 2016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계	39	9	10	20
비율	100	23	26	51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	합계	123	41	33	49
	비율	100	33	27	40
2012년	계	22	8	9	5
	비율	100	36	41	23
2013년	계	11	4	5	2
	비율	100	36	46	18
2014년	계	24	15	2	7
	비율	100	63	8	29
2015년	계	27	5	7	15
	비율	100	18	26	56
2016년	계	39	9	10	20
	비율	100	23	26	5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33%, 군검사의 항소율 27%
- 연도별 분석결과 피고인 및 군검사의 항소율 계속 변동
- 2016년 피고인의 항소율 23%, 군검사의 항소율 26%
- 2016년 전년 대비 피고인의 항소율 증가, 군검사의 항소율 유사

17. 2016년 약식사건 처리 현황

구 분	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계	150	130	20	
비율	100	87	13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처리 현황

구 분		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5년 평균	합계	444	385	59	0
	비율	100	87	13	
2012년	계	49	44	5	
	비율	100	90	10	
2013년	계	70	62	8	
	비율	100	89	11	
2014년	계	82	69	13	
	비율	100	84	16	
2015년	계	93	80	13	
	비율	100	86	14	
2016년	계	150	130	20	
	비율	100	87	13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87%, 공판절차 회부 13%
- 연도별 분석결과 약식명령 증가, 공판절차 회부 증가 추세
- 2016년 약식명령 87%, 공판절차 회부 13%, 전년 대비 약식명령 증가, 공판절차 회부 증가

18. 2016년 영장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23	19	4	83
체포영장	6	4	2	67
압수·수색영장	55	51	4	93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	구속영장	122	98	24	80
	체포영장	21	18	3	86
	압수·수색영장	225	196	29	87
2012년	구속영장	32	25	7	78
	체포영장	1	1		100
	압수·수색영장	63	52	11	83
2013년	구속영장	29	23	6	79
	체포영장	5	4	1	80
	압수·수색영장	41	31	10	76
2014년	구속영장	21	17	4	81
	체포영장	2	2		100
	압수·수색영장	39	37	2	95
2015년	구속영장	17	14	3	82
	체포영장	7	7		100
	압수·수색영장	27	25	2	93
2016년	구속영장	23	19	4	83
	체포영장	6	4	2	67
	압수·수색영장	55	51	4	9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80%, 체포영장 86%, 압수·수색영장 87%
- 연도별 분석결과 영장청구 건수 계속 변동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계속 변동
- 2016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83%, 압수·수색영장 93%, 전년 대비 비슷한 추세

19. 2016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계	26	22	1	3	22	4
장 교	4	3		1	3	1
부사관	7	5		2	7	
병	13	12	1		10	3
군무원	2	2			2	
기 타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	합 계	127	110	10	7	103	24
	장 교	20	15	2	3	12	8
	준·부사관	35	28	3	4	30	5
	병	69	65	4	0	59	10
	군무원	3	2	1	0	2	1
2012년	민간인	0	0	0	0	0	0
	계	34	31	1	2	27	7
	장 교	4	3		1	2	2
	준·부사관	11	10		1	9	2
	병	19	18	1		16	3
2013년	군무원						
	민간인						
	계	29	22	7	0	23	6
	장 교	2		2		1	1
	준·부사관	6	4	2		3	3
2014년	병	20	18	2		19	1
	군무원	1		1			1
	민간인						
	계	21	20	1	0	17	4
	장 교	5	5			2	3
2015년	준·부사관	7	6	1		7	
	병	9	9			8	1
	군무원						
	민간인						
	계	17	15	0	2	14	3
2016년	장 교	5	4		1	4	1
	준·부사관	4	3		1	4	
	병	8	8			6	2
	군무원						
	민간인						
2016년	계	26	22	1	3	22	4
	장 교	4	3		1	3	1
	준·부사관	7	5		2	7	
	병	13	12	1		10	3
	군무원	2	2			2	
민간인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병 54%, 준·부사관 28%, 장교 16%, 군무원 2%
발부율 준·부사관 및 병 각 86%, 군무원 67%, 장교 60%
- 연도별 분석결과 청구율 및 발부율은 전체적으로 계속 변동

20. 2016년 신청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3	1	2	33
구속적부심	4		4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1		1	0
형사보상청구				
기 타				

※ 기타 :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등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현황

구 분	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	보석청구	10	3	7	30
	구속적부심	10	0	10	0
	구속집행정지	0	0	0	
	구속취소	1	0	1	0
	형사보상청구	0	0	0	
	기 타	0	0	0	
2012년	보석청구	4	1	3	25
	구속적부심	2		2	0
	구속집행정지	0			
	구속취소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2013년	보석청구	1	1		100
	구속적부심	2		2	0
	구속집행정지	0			
	구속취소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2014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2		2	0
	구속집행정지	0			
	구속취소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2015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0			
	구속집행정지	0			
	구속취소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2016년	보석청구	3	1	2	33
	구속적부심	4		4	0
	구속집행정지	0			
	구속취소	1		1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30%, 구속적부심 인용률 0%,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0%

21. 2016년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162	25	85	39	13	
원판결확인	162	25	85	39	13	
원판결 확인율	100	15	53	24	8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	총계	562	104	275	144	39	0	
	원판결확인	558	103	273	143	39	0	
	원판결 확인율	99	18	49	25	7	0	
	감경	1/2미만	2	0	2	0	0	0
		1/2이상	2	1	0	1	0	0
2012년	총계	90	26	44	19	1		
	원판결확인	86	25	42	18	1		
	원판결 확인율	96	28	47	20	1		
	감경	1/2미만	2		2			
		1/2이상	2	1		1		
2013년	총계	94	18	43	23	10		
	원판결확인	94	18	43	23	10		
	원판결 확인율	100	19	46	24	11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4년	총계	98	12	54	26	6		
	원판결확인	98	12	54	26	6		
	원판결 확인율	100	12	55	27	6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5년	총계	118	23	49	37	9		
	원판결확인	118	23	49	37	9		
	원판결 확인율	100	19	42	31	8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6년	총계	162	25	85	39	13		
	원판결확인	162	25	85	39	13		
	원판결 확인율	100	15	53	24	8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99%

22. 2016년 무죄 선고 현황

구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7	4	2	1		
관련법 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대상)	1		1			
	기타						
주요 형법 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의죄						
	사기횡령배임죄						
	풍속에관한죄						
교통 법 죄	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1	1				
	특가법위반(도주)						
성 법 죄	형법위반	1	1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폭 력 범 죄	상해폭행의죄	1		1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2	1		1		

23.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유도탄사 2016조1	공군 하사	절도	벌금 10만원
군수사 2016조1	9급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만원
방관사 2016조1	공군 상병	폭행	공소기각
16비 2016조1	공군 원사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20만원
전투사 2016조1	공군 일병	건조물침입	벌금 10만원

2016년 주요 판례



고등군사법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군사법원
해군 군사법원
공군 군사법원

2016년 주요 판례

□ 고등군사법원

○ 2015노266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예비적 죄명 :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공소사실의 요지

육군 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 근무했던 피고인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차례 뇌물수수, 아들의 취업부탁, 부하로부터 돈을 받아 그 부하의 전역을 단장에게 건의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징역 2년, 벌금 20,000,000원, 추징금 13,48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검찰관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A의 일부 대여금 부분)에 대한 항소를, 피고인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없고, 아들 취업 시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부하로부터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양측 모두 양형부당도 아울러 주장함.

● 2심의 판단: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부정한 청탁·알선수재 긍정

항소심은 ① 대부분 뇌물수수의 점은 방산업체에 원자재·부자재 등을 납품하는 회사 1이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을 통해 군내 인맥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회사 2가 군내 시스템 사업 등을 할 때 피고인의 조언 내지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는 의도로 교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② A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피고인과 A와의 20년 이상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변호사 선임비를 받았던 당시에는 피고인이 전역을 목전에 앞둔 구체적인 직책을 다시 맡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무죄 판단을, ③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아들의 취업 요구라는 대가와 결부된 이상, 회사 3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아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은 유죄 판단을, ④ 피고인이 부하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후 그

전역을 반대하던 단장에게 우호적인 말이나 전역 건의를 한 알선수재 부분은 유죄 판단을 함으로써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 추징금 7,480,000원을 선고함(상고기각).

○ 2015노330, 2015전노5(병합)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 군무이탈, 사체은닉미수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이 휴가 중 집에서 모친을 살해한 다음, 사체에 불을 붙이고 군무이탈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징역 40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및 검찰관 모두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심 도중 검찰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도 심신미약을 추가로 주장하였음.

● 2심의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부정, 양형을 감경판단하여 1심 파기, 부착명령 인정**

항소심은 ① 대법원 판례가 피고인과 같이 인격장애 등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단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②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당시 자고 있는 모친을 살해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어흔도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가족은 피고인 외에 아무도 없어 합의하거나 공탁하지 못한 점, 직계존속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국가의 본질적 구성부분인 가족 제도를 이루는 가치이자 면면히 이어져야 할 전통문화의 이념인 점 등에 비추어 존속살해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 등을, ③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불우한 환경을 잊으려는 방편으로 게임이나 인터넷 세상에 자신을

가둔 잘못된 생활습관과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스트레스까지 부가됨으로써, 휴가를 끝내고 복귀해야 할 당일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병 등의 진단명으로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④ 그 밖에 이 사건의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하는 한편, ⑤ 부착명령 청구 부분은 피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함(상고기각).

○ 2015노331 모욕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대장, 중령)은 체력검정 면제 소견서와 관련하여 지휘관의 결재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상사) 및 목격자 ○○○(원사)에게 “제대하셔야지, 제대하라니까 왜 자꾸 남아있냐”, “자꾸 못한다고 다들 어디 아프네 하면 그럼 왜 군인을 하나 이거지 빨리 나가야지”, “군 생활 몇 년 했어, 20년 한 게 그래?”라고 말하여 모욕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찰관은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 및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함.

● 2심의 판단: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무죄 유지)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관계에 비추어 목격자가 그 발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발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로 판단하였지만, 항소심은 모욕죄의 공연성과 관련하여 목격자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거나 피고인의 법적 책임을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비밀로 지켜줄 만한 일정한

친분관계나 직무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심과 달리 공연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지휘관으로서 부대원들의 체력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체력검정 면제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설득 내지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1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함.

○ 2015노333 업무상과실치상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원사, 수송관)이 2012. 10.경 부대에서 피해자(일병)에게 이발을 해준 후 공업용 에어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털어주다가 위 에어건의 공기가 피해자의 우측 귀 속에 주입되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측 외림프 누공 등 상해를 입힘.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에어건 사용과 피해자의 상해 간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감정서의 증거 채택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항소함.

● 2심의 판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간 인과관계 긍정

항소심은 ① 이 사건 에어건은 사람의 신체, 특히 귀나 눈 등 신체의 약한 부위에 사용하기에는 위험한 장비로, 피해자 귀 안쪽에 상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공기 압력이 사용되었다는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는 에어건 사용이 사람의 고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외림프 누공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귀 안팎을 둘러싼 공기 압력의 차이를 어느 정도 가늠케 하는 간접적인 증거로는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부대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단체 줄넘기 연습을 하였지만, 군 입대 이후 비교적 건강이 양호했고, 줄넘기 연습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

○ 2015노354 뇌물수수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중령): 육군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건축시공부분 평가위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 피고인 B(중령):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운영계획부문 평가위원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건설업체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 피고인 C(중령):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건축계획부문 평가위원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건설업체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 1심의 판단 및 쟁점

- 피고인 A: 징역 1년6월,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 선고, 피고인 A는 증거의 신빙성을 다툼
- 피고인 B: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 선고, 피고인 B는 공무원 직위, 양형을 다툼
- 피고인 C: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 선고, 피고인 C는 뇌물죄의 고의를 다툼

● 2심의 판단: 피고인 A·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무죄 선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은 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공여자의 진술이 현금의 제공 시기, 포장형태, 금액과 방법 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②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품을 수수할 당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의 지위는 종료하였지만 BTL 평가위원의 임기가 1년이어서 그 임기 중 금품을 수수했으므로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금원 수령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1심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③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공여자가 빵봉투에 금품을 넣어 전달하였으나 당시 체육복 차림, 제3자와 함께 식사한 정황,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빵봉투를 두고 내렸을 가능성, 이후 피고인이

신고하거나 찾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가 당시 빵봉투에 금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C에게는 뇌물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함(상고심 계류 중).

○ 2015노359 주거침입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은 피해자(중사)가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의 배우자와 성교하기 위해 야간에 군인아파트인 피해자의 주거에 총 3회에 걸쳐 들어감.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미혼이라거나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에 들어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현장사진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촬영된 것이어서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과 검찰관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2심의 판단: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인정, 간통죄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고 보아 주거침입죄 긍정

항소심은 ① 주거침입의 고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전부터 자동차 동호회에서 피해자 부부를 함께 알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집에 널리 비치된 피해자의 기념패 등의 물건들과 군인아파트인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이 부분 고의가 인정되고,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며, ③ 거주지 현장사진의 증명력과 관련하여서는 사진 상으로 보더라도 군인아파트 내 '탄피회수함'은 아파트 입구에 들어설 때 명백히 보이고, 외관에 녹이 슬어 여러 군데 칠이 벗겨져 있는 등 촬영일로부터 6개월 전인 이 사건 발생 시점에도 여전히 부착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아파트 내부 사진의 경우에도 경찰관과 함께 불륜현장에 직접 갔던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사진상과 당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거주지의 현장사진들은 모두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④ 결국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09헌바17 결정)으로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상 소추할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간통 등 부정행위가 여전히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므로 **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

○ 2015노393 강제추행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사)은 피해자(민간인 여성, 26세)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면서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지인으로 착각한 채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행위 정도도 추행이 아닐 뿐더러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함.

• **2심의 판단:** 당시 상황, 주취 정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1심과 달리 강제추행 부정**

항소심은 ① CCTV 영상에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약 2초간 감싼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인으로 착각하여 어깨동무를 하기 위해 한 행위로 보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② CCTV 영상에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가슴까지 닿았는지 명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잘 모르겠다고 증언한 점, ③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약 2초이고, 오른팔이 풀어질 때의 각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까지 닿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2015노394 군인등강간미수, 명예훼손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결코 없고, 명예훼손 모두 피고인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거나 절친한 후배들에게 말하여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검찰관 모두 양형 부당을 항소함.

- 2심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 모두 인정**
항소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정황 및 피고인의 행위나 피해자의 대응 방법 등 주요 범행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는 점, ② 피고인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구체화되고 상세한 점, ③ 이 사건 명예훼손은 군인등강간미수 건과 관련이 있고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 경위를 충분히 수궁할 수 있는 점, ④ 명예훼손죄에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넉넉히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였음(상고기각).

○ 2015노403, 2016노44(병합) 살인(예비적 죄명 : 상해치사) 등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찹찹거리면서 먹으며 질문에 대답이 늦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면서도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사망케 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1심은 피고인 A. 징역 45년, 피고인 B. 징역 30년, 피고인 C.D. 각 징역 25년, 피고인 E. 징역 15년을 선고하였고(살인죄를 무죄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 파기환송 전 항소심(2014노315)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를 징역 35년, 피고인 B, C, D를 징역 12년,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 B, C, D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A와 공동정범으로 본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 **2심의 판단: 피고인 B, C, D에게 살인의 공동가공의사 부정, 피고인 A에게만 살인죄 인정**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① 피고인 A보다 폭행의 그 정도 및 횡수가 훨씬 적은 점, ②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가슴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진료를 받게 하려고 한 점, ③ 피고인 B, C, D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줌을 싸자 폭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속옷을 갈아 입히거나 물을 먹이려 하였고, 피고인 A가 피병이라며 재차 발로 차자, 피고인 A를 말리기도 한 점, ④ 피고인 B, C, D는 피해자가 쓰러지자 산소포화도측정기로 산소와 맥박 수치를 측정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심장박동이 떨어지자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 D에게 살인의 공동가공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만 살인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는 징역 40년, 피고인 B, C, D는 각 징역 7년, 피고인 E는 징역 5년을 선고함(상고기각).

○ 2015노437 업무상횡령교사, 뇌물수수, 뇌물요구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대장, 중령)은 병사들의 남은 군생활을 편하게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병사와 그 부모들에게 수차례 뇌물을 수수하거나 뇌물을 요구하였고, 독신자 숙소 운영비 등으로 몽블랑 만년필 및 잉크를 사올 것을 지시하여 업무상횡령을 교사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000,000원, 추징금 13,2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뇌물요구·뇌물수수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과 검찰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2심의 판단:** 피고인이 금원의 대여를 요구한 자체로 위 금원을 차용하는 금융이익을 뇌물로 인정, 골프채 세트 역시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인정

항소심은 ① 공소장 변경 및 벌금액·추징금 산정의 위법이 있어 1심 판결을 파기하되, ② 피고인과 병사 A의 아버지 간 친분관계가 없던 점, 병사 A에게도 3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휴가를 갈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실제 4박 5일간 휴가를 나갈 수 있게 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3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는 뇌물요구로 판단하고, ③ 피고인이 병사들의 보직을 관리한 점, 병사 B는 골프채를 주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어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초 골프채를 받은 이유였던 대대 골프동아리의 창설이 무산되었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뇌물로 판단하며, ④ 양형 요소로는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병사들의 부모들에게 수수한 수뢰액을 전부 돌려주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0,000원, 추징금 11,700,000원을 선고함.

○ **2015노441 강간,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이 피해자(여, 19세)를 강간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그동안의 상호 관계,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무죄라고 항소함.

● **2심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당시 상황,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강간죄 부정**

항소심은 ① **강간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동안 교제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던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모텔에 들어간 경위, 한 달 뒤에야 남자친구의 추궁으로 고소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② 나머지 공소사실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③ 결국 1심을 파기한 다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2015노44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하여 영업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초 공범과 범행을 공모한 적 없어 중범에 불과하고, 영업범이 결코 아니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성매수 남성을 구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항소함.

● **2심의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알선영업행위의 공동정범 인정**

항소심은 ① 공동정범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대법원 2008. 4. 10.선고 2008도1274 판결), 영업범의 해당 여부도 그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대법원 2012. 7. 12.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1989. 1. 10.선고 88도1896 판결 등) 기록상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알선영업행위의 중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②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만 인식하면 되지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당시 피고인이 공범의 범행 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만류하는 것 없이 공범과 함께 스마트폰 즐톡어플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을 잡아주고 범행현장에 동행하거나 도망친 피해자들을 다시 데려와 24시간 같이 모텔에 거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심의 판단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

○ 2016노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 입대 전)은 미술과의 중이던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회 추행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1회의 추행만 있을 뿐 나머지 추행 등을 부인하고 양형부당을, 검찰관은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에 대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2심의 판단:** **아동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1심의 유죄 결론 유지**
 항소심은 ①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동의 나이, 피해 진술이 사건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살펴 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범행 당시나 수사가 개시된 당시에도 여전히 나이 어린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피해사실들을 피해 그림들과 연관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사실의 특징을 인정하고, ②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의 나이와 초범인 점, 이 사건 이외에 별도로 미술 방문 과외를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 지도하지 않은 점,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한 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 결국 **쌍방의 항소를 기각함**(상고기각).

○ 2016노4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은 2012. 8.경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적 성향의 트윗 및 리트윗 글을 1,020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새누리당 및 그 후보인 ○를 반대하고 민주통합당 및 그 후보인 △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새누리당과 그 후보인 ○에 대한 반대 및 민주통합당과 그 후보인 △의 지지를 위하여 투표를 하도록 권유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파기환송 전 항소심(2013노70)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유지하였으나, 대법원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각의 트윗 및 리트윗글 게시 행위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세밀하게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파기환송하였음.

- **2심의 판단: 공직선거법과 구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이나 '투표권유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파기환송 후 항소심(검찰관은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최초 약 1,000여개의 트윗 및 리트윗글 중 선거 관련성이 없는 글을 삭제하고 총 206개의 글만 공소를 유지함)은 ① 통상적인 선거운동의 경우 정당별로 후보자가 확정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트위터에 글을 게시한 횟수는 당시 ○ 후보가 후보자로 확정된 2012년 8월에는 48건에서,

△ 후보가 후보자로 확정된 9월에는 106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후 10월은 10건, 11월은 21건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특히 선거일 직전인 같은 해 12월에는 9건에 불과한 양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계획성'을 요소로 하는 '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 트위터를 사용하는 경우 트위터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글을 대량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다수의 계정을 개설하여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팔로워 숫자를 의도적으로 늘리려는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하나의 트위터 계정만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약 200여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사용하던 계정 외에 다른 계정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팔로워 숫자를 늘리는 등의 정황이나 증거는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능동성'을 요소로 하는 '선거운동'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③ 트위터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그 글들이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서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을 권유하는 의미로까지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글들은 대부분 통상적인 문체를 사용하였고, 그 내용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선거에 관한 자신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글들을 통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④ 한편, 구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투표권유운동'도 전형적인 '선거운동'의 하나인데,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투표권유운동'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트윗 및 리트윗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무원인 군인으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 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직선거법과 구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나 '투표권유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상고기각).**

○ 2016노3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령)이 다기능 방탄복 부대운용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망인과 공모하여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관은 피고인이 ○여단의 결과보고서가 허위임을 알면서 이 사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대대 결과보고서의 부적합 의견을 고의로 누락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라고 항소함.

● 2심의 판단: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부족하여 무죄 유지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부대운용시험 지시를 받은 2개 부대 중 1개 부대만 결과보고한 상황에서 나머지 1개 부대의 결과를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처장과 실무자 사이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에 불과한 점, ② 그 밖에 피고인이 ○여단의 결과보고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여단의 결과보고서는 양식도 상이하고, 기재된 점수도 평가결과표와 일치되지 않는데 만약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사령관에게까지 보고 되는 이 문서를 허위라는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 생기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④ △대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망인의 건의를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인데 기록상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⑤ 검찰관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를 일으킬만한 동기를 발견하기에 부족한 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1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함(상고기각).

○ 2016노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은 낮에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여, 33세)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수매트 호스로 5초간 목을 졸랐으나 주민들이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겁을 먹고 도망쳐 미수에 그침.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각 10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및 검찰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2심의 판단: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축소사실인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죄만 인정

항소심은 ① 피해자가 입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직후 강간할 목적으로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② 온수매트 호스의 형태와 굵기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붉게 충혈된 상처만으로는 살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일 16시 정도의 오후인 시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후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 은폐를 살해의 동기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 가능성이 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축소사실인 상해의 고의만 인정함으로써 공소장변경 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각 8년을 선고함(상고기각).

○ 2016노131 군인등강제추행[일부 인정된 죄명 및 예비적 죄명: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소령)은 자신의 차량 등지에서 피해자(여, 하사)를 양팔로 껴안고 뺨에 입술을 갖다 댄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행위에 대하여는 여성의 볼이 특별히 성적으로 민감하거나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부위가 아니고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3회 꼬집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며, 검찰관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2심의 판단: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행위도 1심과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인정 항소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휘관과 부하의 관계에 있었던 점, ② 범행 장소는 피고인이 혼자 근무하는 사무실 또는 부대 건물 앞 버스정류장으로 당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인적이 비교적 드문 장소라는 점, ③ 피고인은 이미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감정과 관심을 드러내 온 점, ④ 비록 피해자가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지만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는 “이 때까지 피고인이 볼을 꼬집는 행동 등 그 모든 행동과 말에 성적인 혐오감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행위는 20대 중반의 미혼 여군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의 형량은 유지함.

○ 2016노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매매알선 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피해자(여)와 성매매를 하고, 성관계 후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 하자 다시 한 번 성교행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반항을 억압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반항하여 알몸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침.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2회 검찰관 조사에서 자백한 것은 회유와 협박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이며, 가방끈을 조절하기 위해 커터칼을 꺼내든 것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 강간의 고의와 특수강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검찰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2심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자백의 임의성 인정, 특수강간죄 인정

항소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성, 일관성이 있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상세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검찰관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정황증거,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임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커터칼을 꺼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이 인정되고, 특수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됨으로써 1심의 판단이 정당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상고기각).

○ 2016노152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준장)은 ○부대 부대장으로서 ○부대 △진 파병간 급량비를 과다 책정하여 양주, 와인, 대추야자, 꿀, 커피 등을 구매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양주'를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와인, 대추야자, 꿀, 커피 등'을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찰관 모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2심의 판단:** 구매 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따져 유죄 판단하되, 횡령금액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1심 파기

항소심은 ①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인 '업무상 보관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대 부대장이자 ◇합의 합장으로 소속 부대 예산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를 통할 및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업무상 보관자**로 판단되는 점, ② 당시 군수참모와 부장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급량비를 이용하여 개인 양주 구매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량비를 과다 책정하는 방법을 감행하면서까지 양주를 구매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개인용 양주 구매를 위해 급량비를 횡령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는 점, ④ 구체적인 횡령 금액의 특정과 관련하여, 증거관계상 양주 구매금액은 1심이 인정한 약 48,000달러가 아니라 약 28,000달러로 인정되는 점, ⑤ '와인, 대추야자, 꿀, 커피 등'은 구매 논의 단계부터 참모들과 논의하였고, 구매 후 실제 이를 모든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횡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하면 '양주'와 '와인, 대추야자, 꿀, 커피 등'을 나누어 유·무죄를 판단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구체적인 횡령금액의 산정에는 일부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상고심 계류 중).

○ 2016노167 직무유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現. 소령)은 중대장으로서 2015. 9. 하순경 소초장으로부터 영내 구타 사고 발생을 보고받았음에도 위 사실을 상급 부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방임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선고유예(징역 4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유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인과 검찰관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2심의 판단:** **구 부대관리훈령의 내용과 취지, 근신 조치 등을 고려하여 1심과 달리 직무유기 부정**

항소심은 ① '상급부대장에 대한 미보고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대관리 훈령**이 '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를 구타나 가혹행위가 발생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사고'로 한정하고 있었던 이상, **이러한 상해 등의 결과를 초래하지 이 사건에게까지 피고인에게 보고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수사 미의뢰의 점'에 관하여, 당시 훈령은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위반한 구타 및 가혹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선언적 규정'**이지 지휘관이 반드시 구타 및 가혹행위자를 수사 의뢰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의무적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할 수 없는 점, ③ '징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명백히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징계절차로 나아가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을 보고받은 직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한 후 2~3주 정도 중대본부에 근신하면서 대기**를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지시가 비록 법령상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서의 근신은 아니더라도 향후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훈계 내지 지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가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지휘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상고심 계류 중).**

○ 2016노213 강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초소침범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이 야간에 출입증 제시를 요구하는 초병에게 근무불량을 이유로 얼차려를 부과하는 등으로 강요하고, 초병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초소를 침입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1심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파기환송 전 항소심(2015노298)은 1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강요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초소침범죄에 대하여는 단지 초병이 출입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그대로 통과한 것만으로는 '초병 제지 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음.

● 2심의 판단: 강요죄에 대하여 신법에 따라 벌금형 적용, 초소침범죄 부정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① 강요죄에 대해 신법을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② 초소침범의 점에 관하여는 출입증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컴퓨터 조회를 하여 출입을 시키는 등 다른 방법으로 부대출입 자격의 확인이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 초병이 출입증 제시요구 외에 다른 어떠한 대응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피고인이 부대 간부임을 알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취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초병들이 피고인의 정문 통과를 금지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초소침범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2015고39,45(병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령)은 방위사업청 ○사업팀에서 팀장으로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이하 'GTG'라 한다) 구매사업'의 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근무하면서, GTG는 일반경쟁 품목임에도 중소기업청장이 성능인증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이라는 사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팀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7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2회에 걸친 향응을 수수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GTG 구매사업 관련,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수뢰 인정**

1심은 ① 당시 위 업체에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과제로 개발하고 있던 것은 항공기시동장비[통합형 에어컨-가스터빈 발전기세트(GTGA)]이고, 군에서 구매 예정인 물품은 GTG임에도 중소기업청에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항공기시동장비) 사업 업무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은, 위 업체가 신속한 성능인증을 받아 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위 문서에 “00에서 개발 중인 GTGA에 대해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단을, ② 위 업체가 개발한 물품이 GTGA이고, 해당물품은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항공기 시동장비) 성능규격 검토결과 통보」에 '적합'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단을, ③ 실제로 어떠한 심사나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미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항공기 시동 장비) 성능규격 검토결과 통보」의 내용을 그대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제품 성능규격 검토결과 통보」에 첨부하거나, 소요군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구매 사양서를 업체에 유리하도록 변경하고 그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검토하여 허위의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단을,

④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후 중소기업청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단을, ⑤ 피고인의 담당 직무 및 금품과 향응 수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뇌물수수에 대하여 유죄 판단을 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원, 추징금 4,480,000원을 선고함.

(항소심, 이유무죄 및 뇌물수수액 산정의 위법으로 인해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 추징금 3,890,000원 선고, 상고기각)

○ 2016고8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4급, 군무원)은 국군복지단을 지원하는 기무부대원으로서 국군복지단 군마트에 물품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약 25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향응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13년 마트위탁물품 입찰 결과서를 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긍정, 공무상비밀누설은 실질비(實質秘) 관점에서 부정

1심은 ① 뇌물수수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국군복지단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식사와 술을 접대하였으며, 비록 국군복지단의 납품계약에 관한 사항이 피고인이 직접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복지단을 담당하는 기무부대 정보수집관으로서 적격심사와 입찰과정에 참관인(입회관)으로 참석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필요시에는 결정권자인 복지단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② 비밀누설과 관련, '13년 마트 위탁물품 입찰결과서의 내용이 복지단에서 내부자료로 관리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기관(국군복지단)의 기능에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위험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판단을 함으로써 징역 6월, 집행

유예 1년 및 벌금 5,000,000만 원, 추징금 2,447,106원을 선고함.

(항소심, 추가로 뇌물수수죄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00,000원, 추징금 2,602,606원 선고, 상고심 계류 중)

○ 2016고1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이 전역한 군 동기로부터 군 관련 정보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11.경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위 동기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군사 III급 비밀인 「'15-6차 방위력개선사업 실무회의록」에 포함된 일부 무기체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후 보관하여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동 군사기밀을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동기에게 전송하여 군사기밀 누설 하였으며,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군사 II급 비밀인 「'18~'32 합동무기체계 기획서」에 포함된 일부 문건을 위 사무실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군사기밀을 수집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군사 III급 비밀 수집 및 업무상비밀누설 인정, 군사 II급 비밀 수집 인정

1심은 ① 회의록에 포함된 군사 III급 비밀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저장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② 죄수관계에 있어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에 앞서 위 수집이 행해진 경우라 할지라도,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가 '수집'과 '누설'을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각각의 행위태양, 법익침해의 정도가 구별되며, ③ 군사기밀 불법 수집행위가 누설행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을 동법 제11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금지행위를 부당히 축소 해석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아, 군사기밀의 '누설'에 앞서 '수집'이 행해진 경우 그러한 '수집'행위를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의한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 없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결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항소심, 감경 양형요소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선고, 상고기각)

○ 2016고16 군용물절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現 예비역 대령)이 ○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9. 10.경~11.경 특정업체의 사업 및 연구개발에 사용되게 할 의도로, 3차례에 걸쳐 7.62mm 탄약 290발 및 44매그넘 탄약 200발을 절취한 사안임.

● 1심의 판단 및 쟁점: 사관학교 교수의 탄약 반출에 대하여 절도죄의 불법 영득의사 인정

1심은 ① 탄약의 반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군수품 대여 및 양도규정에 따른 권한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탄약을 외부 업체에 반출한 목적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용역계약과 관련 없이 업체의 자체 품질개발이나 시험평가에 사용되게 하거나 또는 본인이 전역 후 업체의 연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방탄시험 등에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② 피고인의 행위는 외부업체에 대한 탄약의 '양도'에 해당되어 단순한 '소모'로 볼 수 없으며, 양도 과정에서 군수품의 양도와 대여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이상 피고인에게 탄약 등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항소심 계류 중)

○ 2016고21, 2016고28(병합) 업무상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교사, 입찰방해, 뇌물수수, 성매매알성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성매매) 등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령)은 방위사업청 ○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 제안요청서에 특정업체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사업팀 실무자로 하여금 위 업체에 사업진행 현황을 알려 주도록 한 후,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회에 걸쳐 약 9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 **1심의 판단 및 쟁점: 감리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입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교사,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인정**

1심은 ① 피고인이 업체에게 유리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해당 업체가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되도록 할 목적으로, 제안요청서 작성과정에서 정확한 출처를 속인 채 실무자들에게 업체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안)를 참고하도록 지시하여 실제로 상당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② 그러한 과정을 최종 승인권자인 함정사업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함정사업부장으로 하여금 제안요청서가 마치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결재·승인하도록 만든 점이 인정되어, 함정사업부장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를 유죄 판단하고, ③ 피고인의 직책 및 공여자들의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금품수수 행위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 판단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 추징금 14,525,000원을 선고함(항소심 계류 중).

□ 육군 군사법원

○ 제50사단 2016고14 공갈, 상해, 강요, 상습도박, 상습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이자 선후임 관계로, 중학교 시절 이른바 ‘일진’ 무리에 있었다는 점 및 군대 선후임이라는 특수관계 등으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① 후임인 피해자가 업무를 미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총 82회에 걸쳐 상습으로 폭행하고, ② 군화를 신은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차 찰과상을 가하고, ③ 피해자에게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부터 피고인의 집까지 약 15.6km의 거리를 자전거로 1시간 30분 이상 걸리도록 왕복하게 하고, 6회에 걸쳐 총 120회의 팔굽혀 펴기, 총 25회의 기마자세를 시키는 등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하고, ④ 한글 프로그램을 가르쳐줄테니 준비물 값으로 70,000원을 달라고 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4,738,000원을 교부받아 공갈하고, ⑤ 더 큰 돈을 교부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총 4회에 걸쳐 강요하고, ⑥ 총 31회에 걸쳐 5,105,000원을 사이버머니로 교환하여 속칭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상습 도박을 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① 상습폭행 및 상습도박 상습성, ② 상해죄에서의 상해의 정도, ③ 공갈·강요의 수단인 협박의 존재 모두 인정하여 전부 유죄 판단

① 이 사건 폭행 및 도박범행의 수법과 횡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동종 전과가 없었더라도 습벽이 인정되므로 상습성을 인정하고 ② 피고인은 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5회 차 단순한 명이 아니라 찰과상을 입게 하였고 이를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③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약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족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약의 고지를 할 수도 있으며,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취한 일련의 거동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가한 폭행 등에 기한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해악의 고지이므로 이 사건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육군본부 2016고5 군무이탈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병사단 ○○○장교로 근무하던 중 2016. 0.00. 오전 휴가를 허락 받아 2016. 0. 00. 13:00까지 소속대로 출근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업무상 실수에 대한 상관인 중령 ○○○의 잦은 질책으로 인하여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군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016. 0. 0. 13:00까지 출근하지 아니하고 모텔 및 찜질방 등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2016. 0. 0. 16:41 ○보병사단 헌병대 군무이탈 체포조 상사 ○○○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6일 동안 부대를 이탈한 사안임.

● 1심의 판단 및 쟁점: **군무이탈 동기, 기간 동안의 행적, 주위의 평판 등을 양형요소로 참작**

1심은 ①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사단장 및 상관들도 피고인이 충성심이 강하고 업무적으로 유능한 초급장교였다고 하면서 업무의욕이나 열정이 높은 장교로 평가한 점, ② 피고인이 본 사건인 군무이탈에 이르게 된 것은 ○사단에 전입한 2015년 0월 0일부터 2016년 0월 0일까지 피고인의 주위에서 발생한 상황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 점, ③ 피고인의 직속상관이었던 중령 ○○○이 전입초기부터 여군 비하적인 표현을 자주 하였으며, 마치 피고인이 머리가 나빠 군에 입대한 것이 아니냐는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온 점, ④ 피고인은 ○사단에 전입한 이래 직속상관인 중령 ○○○의 여군 비하적인 발언과 부하를 힘들게 하는 업무 수행 방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다가 이 사건 군무이탈을 결심

하게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점, ⑤ 부대를 이탈한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OO사단 근처를 배회하고 모교인 OO대 근처에서 지내고 장교로서 다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행동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를 선택했을 경우 불명예스럽게 전역을 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군무이탈에 이르게 된 경위, 군무이탈 중의 행적, 탄원 내용 등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 제2사단 2016고3 군인등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상해, 강요, 협박, 폭행, 모욕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2명)과 피해자들(2명)은 신병교육대에서 같은 분대에 소속되었던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비해 나이가 많은 지위 및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모욕, 협박당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총 3회에 걸쳐 빨래를 대신하도록 하고, 피해자1의 관물대에 쓰레기를 넣어놓고 대신 버리도록 하고, 피해자1에게 “너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다, 휘파람을 불면 내 앞으로 와야 하고 안오면 맞는다. 손 달라고 하면 쥐야 한다”라는 등 협박하여 휘파람을 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 근처로 오게 하고, 피고인1은 피해자1에게 다 쓴 핫팩을 공중에 던지며 4회에 걸쳐 “물어와”라고 시키는 등 강요하고, “재는 딱봐도 정신병이 있다”, “빵셔틀이었냐”, “내 강아지, 훈련 잘 시켰지”, “내 장난감 어디 갔냐, 이새끼 여기있네”라고 공연히 말하여 모욕하고, 피고인2는 손등으로 피해자1의 성기 부위를 툭툭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피고인2가 자는 동안 피해자1에게 분대장이 오는지 망을 보도록 시키고, “중대장에게 찢러봐, 죽여버린다”라는 등 협박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고, “돼지새끼”, “내가 시킨 빨래하고 있다. *테렐라다”, “왜 자살 안하냐”고 하는 등 모욕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공동가공의사 및 실행행위 분담, 공소사실 특정 인정하여 공동상해 등 긍정**

① 피고인들은 같은 분대 소속으로 나이가 비슷한 또래로서 대다수 훈련병들에

비해 나이가 많았고, 뛰어난 신체능력과 훈련성적으로 전체 생활관 분위기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강요 등 행위에 있어 동일한 목적과 행위 태양을 보였고 대부분 행동을 함께 한 사정, 피해자들 및 다른 전우들은 피고인들을 “분대 형들”이라고 칭하며 하나의 존재처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강요행위에 대해 상호 의사를 교환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함께 혹은 각자가 실행한 각 강요 등 행위는 이 사건 강요죄 실현에 모두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공동가공의사 및 실행행위 분담 인정, ② 공소범죄 성격에 비추어 범죄 일시, 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1의 관물대에 쓰레기를 넣어놓고 대신 버리게 한 강요죄 부분은 거의 매일 수차례 동일한 행위 태양으로 쓰레기를 버린 것인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각 행위는 경합범관계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쓰레기를 버리게 한 하나의 강요행위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공판절차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특별한 지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불특정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③ 다만 피고인들이 휘파람을 불어 피해자1을 불렀으나 늦게 왔다는 이유로 “씨발 왜 늦게 왔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부분은 피해자1을 휘파람을 불면 오도록 강요했다는 범죄사실 부분과 기간 및 내용이 중첩되어 강요의 수단인 폭행으로 보이고, 피고인2가 피해자1의 관물대에 쓰레기를 넣은 후 피해자가 “왜 쓰레기가 제 자리에 있습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가격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쓰레기를 버리게 하기 위한 폭행이었다는 점에서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각 강요죄와 범조경합 관계에 있어 각 공소 기각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제28사단 2016고4 강제추행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내 복도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여, 28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짐.

• 1심의 판단 및 쟁점: 강제추행 인정(범인식별 절차상 하자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범인식별 절차 관련 ① 피해자는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20대 초반의 남자가 다가와 함께 기다리다가, 피해자는 3호기를, 위 남자는 5호기를 타고 따로 올라간 사실, ②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던 중 범인이 복도를 달려왔고 이때 범인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마주쳤던 남자와 동일인이었던 사실, ③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던 순간 범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도주한 사실, ④ 피해자는 사건 발생 5분 후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의 인상착의 및 외모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경찰관이 제시한 아파트 CCTV 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이 범인이 맞다고 확인을 해준 사실, ⑤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이 피고인을 위 영상 속 인물로 특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사건 당일 입고 있던 옷과 모자 등이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됨. 한편 ① 피해자는 1층에서 범인을 처음 마주쳤을 때 심야시간에 낯선 남자를 마주친 것이라 당시 경계를 하고 쳐다봤으며, 사건 당시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본 것이기 때문에 범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사건 당시 현관에 불이 켜져 있어 밝은 상태였으며, ③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아파트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전히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범인의 외양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후 확인한 CCTV 영상 속 인물의 외양이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묘사와 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범인식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진술의 신빙성 관련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본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굳이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이유가 없는 점, ③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는바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 반하여, 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위 아파트의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은 층에서 내렸다가 계단을 이용해 집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고, ② 헌병 조사 시 변명하기를 무의식적으로 층을 잘못 눌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계속하여 집 앞으로 갔다가 번호키 모양이 달라 집을 잘못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진술하였고, 본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오인하였다고 하는 집은 열쇠키를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함. 결국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특수전사령부 2016고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정지한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리게 하여 K7 승용차의 앞에 정지하고 있던 말리부 승용차를 K7 승용차가 들이받게 함으로써 K7 승용차 및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있던 총 7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1심의 판단 및 쟁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

1심은 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① 초동조치 경찰관이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가 나오자 피고인을 훈방 조치하였고, 그 후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는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워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052%를 기입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② 그런데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얻어진 음주측정결과가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바, 이 사건에서는 입안을 행구는 조치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초동조치 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가 음주운전 한계수치에 미달하자 훈방 조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그 증명력을 긍정할 수 없고, ③ 사고가 난 시점에 혈중 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인 바,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은 ④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함.

○ 제1사단 2016고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2015. 12. 15. 제0보병사단에 입대하여, 2016. 1. 25. 소속대로 전입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입대한 것이 주소 또는 거주지 변경인지 여부, 기대가능성의 유무

1심은 현역병이 특정한 부대에서 생활하게 된 것은 그 특정한 지역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배치명령에 따른 것이며, 현역병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함으로써 영내에 기거하게

되고, 병영을 중심으로 집단적 병영생활을 하게 되므로 현역병의 영내에서의 생활은 국가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이를 독립적인 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입대하여 영내에서 복무하는 순간부터 병역법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는 이와 같은 상태는 제대할 때까지 계속되게 된다는 점에서 현역병의 영내 '기거' 또는 영내 '복무'는 일반인의 '거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게 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대 전입을 거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역병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할 것을 피고인에게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함.

□ 해군 군사법원

○ 해군 작전사 2016고6 공갈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평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절함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 받은 후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내가 언제 돈 빌렸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세를 행사하고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공갈하고, 피해자에게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사오라고 하고 한 후 피해자가 담뱃값을 달라고 하자 미쳤냐고 말하여 공갈하고, 피해자에게 위세를 행사하고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브라이틀링 시계(가품)을 달라고 하여 공갈하였음.

● 1심의 판단 및 쟁점: 피고인의 위협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은 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판결)하다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급자로서 위세를 행사하고, 근무 평정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는바 이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에 해당 한다고 보아 벌금 70만원을 선고함, ②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사오라고 한 뒤 위세를 행사하고 근무 평정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 상당의 채무 청구를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하악을 고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 또는 공여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갑을 사오라고 시킨 후 돈을 주지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행해진 폭행·협박과 피해자의

채무의 청구를 못하게 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 2해병사단 2016고10 성폭범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의 4개 용변칸 중 한 용변칸에 그 옆 칸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쳐다보기 위하여 들어갔고, 다시 같은 장소 4개의 용변칸 중 그 옆칸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쳐다보기 위하여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음.

- 1심의 판단 및 쟁점: 피고인이 출입한 화장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화장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심은 먼저 이 사건 화장실이 위치한 건물은 은행, 사진관, 미용실, 식당 등이 설치된 상가 건물이고 관리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사실, 위 건물의 1층에는 상가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남자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별개의 공간으로 구별되어 설치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옆 용변칸 칸막이 위로 머리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훑쳐본 사실은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화장실이 위치한 건물에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 관리인은 CCTV 영상, 순찰 등을 통하여 내부의 사용 실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장실은 여성만이 이용하도록 구획되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여성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사건 화장실이 위치한 상가의 매출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 ②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이하 위 법을 ‘공중화장실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화장실이 아니라면 설령 성적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한편, 공중화장실법 제 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1. 공중화장실(제1호,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2. 개방화장실(제2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3. 이동화장실(제3호,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4. 간이화장실(제4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5. 유료화장실(제5호,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위 법은 위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같은 법 제4조), 면적에 따른 대·소변기수 등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같은 법 제8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이 사건 화장실은 상가에 설치된 여자화장실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가사 이 사건 화장실의 관리자가 이 사건 화장실을 외부인들에 의하여 이용되는 것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결국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 등’에 해당하려면, 이 점에 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공중화장실 등’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장실은 상가건물의 1층에 설치되어 건물 이용자들이 유료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방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가 이 사건 화장실을 설치한 목적은 위 건물을 이용하는 손님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화장실은 상당 기간 상가건물의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결과, 현실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을 그 건물의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중화장실'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를 부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추어볼 때,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상 '화장실 설치 후의 이용 현황'이 아니라 '당초의 설치 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관한 것임을 요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당초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또한 위와 같은 해석의 논거는 공중화장실법이 정의 규정에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 정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 화장실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개방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 위 법 제9조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제1항),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이 아는 사인이 설치한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개방화장실'은 '설치 당시에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닌 화장실'('공중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중에서 일정한 요건(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하였거나 사인이 설치한 화장실 중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 해당하여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 화장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결국 공중화장실법은 설치 당시에 공중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따로 규정했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장실이 아니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개방화장실'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중화장실'에 해당할 수는 없다.

3. 공중화장실법이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이상, ‘공중화장실’의 일반적 용례(통상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와 달리, 위 법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3조에 열거된 자연공원, 관광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대규모점포, 도시공원, 도로휴게소 등에 직접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설치를 명한 공중화장실 외에는 위 ‘공중화장실’의 개념에 포섭도리 수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나, 공중화장실법이 ‘공중화장실 등’의 개념을 위와 같이 엄격하게 설정한 것은 1) 공중화장실법이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광지·교통요지·도심지 등에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는 점, 2)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화장실의 관리자에게 그 화장실을 공중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 법에 따른 화장실의 설치 면적,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결과 ‘공중화장실’의 일반적 용례와 괴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법의 특수한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와 입법목적 및 배경이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성요건요소에 공중화장실법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위에서 본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규정, 구체적 내용, 체계, 입법의 배경 등을 종합하면, 당초 설치 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화장실과 같이 상가건물의 관리인이 외부인의 사용을 막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화장실과 같이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가 비난가능성이 높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확정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590 판결 참조. ④결국 검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가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공소 제기된 각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제1해병사단 2016고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A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고,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 복부, 둔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

● 1심의 판단 및 쟁점: 피고인과 A의 공동폭행 여부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②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공범인 A는 이를 피고인의 주변에서 지켜 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기회로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공범 A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 붙었던 것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지 불과 2~3분 정도 후에 공범 A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을 폭행하였다고 봄에 부족함이 없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

□ 공군 군사법원

○ 제11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 2016고8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인 여군에게 '장기복무를 하려면 남자친구를 만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져 추행
- 피고인은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고,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수회 추행

● 주요 쟁점 사항

- 공소사실 중 범행일자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
- 단순히 좁은 복도를 피해자와 걷다가 생긴 신체접촉을 피해자가 오해
- 유형력행사가 없어 군인등강제추행죄 해당하지 않음

● 판결 이유

-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므로 이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음[97도1211]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장소는 피해자의 일상적인 근무장소이므로 피해자로서는 개별적인 추행행위를 기억하기 어려움이 있음
- 일부 공소사실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이른바 '기습추행')라고 인정되지 않아 일부무죄

● 선고 결과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6고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00시외버스터미널 내 통로에서 피해자 여성 2명의 의사에 반하여 10회 가량 촬영을 하였고 그 때부터 또 다른 성명불상 여성 16명의 하체 등을 의사에 반하여 166회 촬영함

● 주요 쟁점 사항

- 사진촬영 분 중 일부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

● 판결 이유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평균인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고 피해자의 노출정도, 촬영장소, 신체부위 부각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일부 사진의 경우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기 보다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사진에 가깝고 특정 성적의미를 부여할 만한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 아님(이 부분에 한하여 일부무죄 인정)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이 사안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한 사안임)

군사법 관련 법령 현황





군사법 관련 법령 현황

□ 법률

- 군사법원법(2016. 1. 6. 타법개정)
- 군형법(2014. 1. 14. 타법개정)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6. 1. 6. 타법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1. 6. 타법개정)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2011. 10. 10. 일부개정)
-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2000. 6. 27. 제정)
- 군검찰사무 운영 규정(2012. 3. 30. 일부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0. 28. 일부개정)
- 군법무관 임용법 시행령(2014. 11. 19. 타법개정)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2014. 11. 19. 타법개정)
- 군인 징계령(2014. 12. 9.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군사법원 사무규칙(2013. 12. 10. 전부개정)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2013. 12. 10. 일부개정)
-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2014. 9. 1. 제정)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2014. 9. 1. 개정)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2010. 6. 30. 제정)

□ 국방부령

-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2012. 11. 9. 일부개정)
- 군검찰 사건사무 규칙(2013. 4. 4. 타법개정)
- 군검찰 보존사무 규칙(2009. 10. 5. 제정)
- 군검찰 압수물사무 규칙(2014. 11. 19. 타법개정)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 규칙(2010. 2. 17. 제정)
-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2016. 4. 11. 타법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4. 11. 타법개정)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2016. 4. 11. 타법개정)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6. 4. 11. 타법개정)
-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2016. 11. 29. 타법개정)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2016. 11. 29. 타법개정)

□ 국방부 훈령(법원)

- 군사법원 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훈령(2008. 10. 22. 제정)
-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2009. 8. 14. 제정)
-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2011. 8. 26. 제정)
- 군판사·검찰관·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2011. 11. 7. 제정)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검찰단의 조직 및 관할에 관한 훈령(2015. 6. 5. 일부개정)
- 법원정보체계 운영에 관한 훈령(2016. 3. 4. 제정)

□ 고등군사법원 예규

- 고등군사법원 업무분장 예규(2016. 3. 11.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군사보안업무 예규(2015. 4. 16.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2015. 10. 14.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행정사무 예규(2016. 3. 11.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예규(2012. 5. 7.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위기조치 예규(2014. 6. 1. 제정)
- 군판사의 면담 등에 관한 예규(2014. 6. 1. 제정)
- 고등군사법원 공보업무 예규(2014. 6. 1. 제정)
- 고등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2014. 7. 8. 제정)
- 고등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2014. 7. 8. 제정)
- 고등군사법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2016. 12. 2. 제정)
- 고등군사법원 동원소요 심의위원회 운영 예규(2016. 12. 2. 제정)

□ 육군 규정 등

- 규정: 육규181 재판사무 규정(2016. 8. 31. 전면개정)
- 예규
 - 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2015. 12. 17.)
 - 군사법원 업무분장 예규(2015. 12. 17.)
- 지침·지침서: 국선변호인 선정 및 감독에 관한 지침(2008년)

□ 해군 규정 등

- 규정: 해규15-0-1-01 해군 군사법원 규정(2014. 7. 9. 개정)
- 지침·지침서
 - 군사법원실무
 - 군사법원 업무처리 지시서

□ 공군 규정 등

- 규정: 공규10-02 군사법원 운영규정(2010. 7. 1. 개정)
- 예규
 - 재판진행절차에 관한 예규(2012. 4. 20.)
 - 국선변호업무에 관한 예규(2009. 2. 16.)
 - 군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예규(2009. 3. 13.)
 - 의견서 등 제출에 관한 예규(2013. 2. 18.)
 -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2012. 5. 2.)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 사건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예규(2010. 11. 26.)
 - 공군 심판관 풀(pool)제 운영 예규(2012. 5. 25.)
 - 관할관 확인조치 업무절차에 관한 예규(2012. 4. 20.)
 - 즉결심판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2012. 5. 25.)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2010. 9. 7.)
 - 군판사의 윤리에 관한 예규(2012. 4. 16.)
 - 판결공시절차에 관한 예규(2012. 8. 29.)
 - 재판서 정본 등의 간인에 관한 예규(2012. 8. 31.)
 - 재판서에 기재할 성범죄 피해자 성명의 익명처리에 관한 예규(2013. 8. 22.)
 - 구속의 통지에 관한 예규(2013. 9. 17.)
 -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2016. 6. 8.)
 -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예규(2014. 10. 22.)
 - 공군 군사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예규(2014. 10. 29.)
 - 공군 군사법원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에 관한 예규(2015. 6. 1.)
 - 공판절차에서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사에 관한 예규(2015. 6. 15.)

2016년 주요 개정 형사 관계법령



2016년 주요 개정 형사 관계법령

법률호수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제13714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16. 1. 6. (2016. 1. 6.)
제13716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 가운데 하나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016. 1. 6. (2016. 1. 6.)
제13717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정비하고, 유기형의 상한을 규정함(제5조의 2 제1항, 제2항, 제7항 및 제8항) 상습절도, 상습강도, 상습장물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반복 범죄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5조의 4 제1항, 제3항, 제4항 삭제, 제5조의 4 제5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위반행위 중 채종림산물 절취죄 등은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고, 채종림·자기소유산림 등 방화범죄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제9조) 통화위조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0조 삭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위반죄 등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을 가중적 구성요건 표시로 하여 가중처벌함(제11조 제1항 각 호 신설, 제11조 제2항 제1호) 	2016. 1. 6. (2016. 1. 6.)
제13718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조 제1항 삭제) 흥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및 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삭제) 상습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 상습특수폭력범죄 규정 삭제에 따른 공동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함(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 제4항) 	2016. 1. 6. (2016. 1. 6.)
제13719호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는 제43조 제2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함(제43조 제2항 단서 신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함(제62조 제1항) 간통죄를 삭제함(현행 제241조 삭제) 존속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정비하고(제258조 제3항), 특수상해죄를 신설하며(제258조의 2 신설), 이에 대한 상습범과 자격정지의 병과 규정을 정비하고(제264조 및 제265조), 특수강요죄 및 특수공갈죄를 신설하는(제324조 제2항 및 제350조의 2 신설) 등 정비함 	2016. 1. 6.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률호수	법률명	주요 내용	공포일 (시행일)
제13720호	형사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77조 제6항 신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62조 제4항 전단)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결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제262조의 4 제1항) 	<p>2016. 1. 6.</p> <p>(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7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p>
제1372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한 징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두 위원회 모두 심사·결정상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두 위원회 모두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처벌이 공무원인 위원보다 가벼워 공정성·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 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징벌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p>2016. 1. 6.</p> <p>(2016. 1. 6.)</p>
제13722호	군사법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제6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은 사단급 이상, 해군은 함대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던 보통군사법원을 원칙적으로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함 •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제26조 제1항, 제27조의 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동일하게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되,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하며,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을 「군형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 정함 •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함(제36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관급 장교를 임명하도록 하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부 관할 이전을 허용함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71조 삭제) • 「형사소송법」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95조의 2 신설, 제304조 제4항 및 제305조 제1항) •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제379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관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고,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작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고, 형의 감경비율도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여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p>2016. 1. 6.</p> <p>(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95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p>

법률호수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시행일)
제13766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형법」이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성충동 약물치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유사강간죄가 대상이 되지 않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경우에도 부녀로만 그 객체를 한정하고 있음 • 이에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016. 1. 19. (2016. 1. 19.)
제1417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이하 “신고자 등”이라 함)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제10조의 2),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제66조의 2)하는 한편,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신설(제10조의 3)하여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 •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이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16. 5. 29.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14179호	형사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 • 제313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함(제313조 및 제314조) •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40조) 	2016. 5. 29.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5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14181호	군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군형법은 상관, 초병(哨兵)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밖에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형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처벌이 불가능함 • 이에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사기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 내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16. 5. 29.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률호수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제14277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에서 운전 중 자동차의 화물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낙화물 발생건수는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20만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러한 낙화물은 다수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이에 따라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2016. 12. 2.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14279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 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2016. 12. 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14280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납부업무 수행에 있어 혼선이 있음 •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시 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의 생계 곤란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에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며,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016. 12. 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14281호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임을 명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 변경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정비함(제2조 및 제35조) •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도 수사, 재판 등에 참석 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제88조) • 금지처분을 받은 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제112조) 	2016. 12. 2. (2016. 12. 2.)

법률호수	법 률 명	주 요 내 용	공포일 (시행일)
제14410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형법」이 적용되는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서 죄질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범죄피해 재산에 추가하려는 것임 	2016. 12. 20. (2016. 12. 20.)
제14411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원자력 안전 등 관련 행정사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 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2016. 12. 20. (2017. 6. 19.)
제1441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도강간미수범을 성폭력범죄에 추가(제2조 제1항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강도 강간미수죄를 추가함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제42조 제1항 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등록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43조의 2 및 제52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출입국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제45조 제1항 및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개 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등으로 정하되, 법원이 경합범의 경우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한 경우 판결로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신상정보 확인주기 차등화(제45조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진위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재범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 주기를 차등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 도입(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도록 하고, 선고받은 형의 유형별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후 잔여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함 	2016. 12. 20.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3조의 2, 제44조, 제45조의 2, 제45조의 3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률호수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제14413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특정범죄'의 적용범위는 강력,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전통형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뇌물죄 등 부패범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기업범죄 등 이른바 '현대형 범죄'의 경우, 내부신고자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특정범죄'의 적용범위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및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제289조(인신매매죄)를 추가하는 한편, • 현행법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면서도 불이익처우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범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안 제17조 제2항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2016. 12. 20. (2016. 12. 20.)
제14414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부처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하거나 준수사항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16. 12. 20. (2016. 12. 20.)
제14415호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에 대해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현행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2016.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7.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을 하였음 •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2016. 12. 20. (2016. 12. 20.)

주요 집필진	고등군사법원	재판사무과장	5급 이도선
		행정과장	6급 김진영
		재판사무담당	6급 양홍승
	육군군사법원	군판사	소령 박수정
		주임법원서기	준위 오은화
	해군군사법원	군판사	중령(전) 김성준
		주임법원서기	상사 김찬형
	공군군사법원	군판사	소령 손미희
		재판사무담당	5급 김종만

감 수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중령 안지영
		재판연구관	대위 이재도

2016 군사법원 연감

발행일 2017년 11월 22일
발행처 고등군사법원 | 육·해·공군 군사법원
인 쇄 국군인쇄창 재경지원대 M17118185



간첩, 방산스파이, 기밀누설, 테러범 등 우리나라의 숨은 위험들을 신고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 신고유형

간첩·방산스파이
공작기밀 유출 및 방산스파이
테러(위협)·군관행 제재

☎ 응급내역

암살·인질·희고, 20명
대의 구명 신고 : 희고 1명
군 중 방 제포 : 희고 1명

☎ 신고방법

전화 : 1337
온라인 신고 : www.dsc.mil.kr
방안통신망 : 2차, 3차, 4차, 5차

병영생활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인터넷, 인터넷, 모바일 신고/상담시 검색창에서 “국방헬프콜” 입력】

국군인쇄창 홈페이지 www.mnd.mil/user/afp 전화번호 일반 042) 553-4504~8 군 910-4504~8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